



최신 Issue Brief on Foreign Laws

외국법제정보

별책부록 2012년 1월~5월 주요 국가 법령 제·개정 목록

모니터링 국가 미국 / 유럽연합 /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일본 / 중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2년 1월~5월 주요 국가 법령제·개정 목록

C·O·N·T·E·N·T·S

모니터링 국가

004 미국

021 유럽연합

024 영국

029 프랑스

053 독일

068 일본

083 중국

112 남아프리카공화국

※ 모니터링 국가는 추후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 게재된 내용은 모니터링 담당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법제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미국 -

교육

- H.R.3237
Latest Title: SOAR Technical Corrections Act
Latest Major Action: Became Public Law No: 112-92
• SOAR(장학금사업) 개정법(SOAR Technical Corrections Act)

장학금사업 및 결과법(Scholarships for Opportunity and Results Act)을 개정하여 장학금 사업 제도에 대한 형식적 부분의 개정을 함. 본 장학금 제도는 워싱턴 D.C. 지역 내 사립학교에서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에게 선택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장학금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의 핵심과목 교사는 학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를 가져야 한다는 요구를 수정하여, 장학금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을 가르치는 핵심과목 교사만 해당 요구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정함.

교육과학기구(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시험을 관련 평가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실시하여야 함. 단, 해당 학생이 출석하는 학교가 직접 해당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학생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장학금사업 참여학교는 교육부장관(Secretary of Education)에게 참여학생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H.R.473

Latest Title: HALE(Help to Access Land for the Education) Scouts Act

Latest Major Action: Became Public Law No: 112-103

- 보이스카웃 교육을 위한 토지접근지원법

본 법은 미국 보이스카웃(Boy Scouts of America)의 ‘미대륙선주민 위원회 단체(Indian Nations Council, Inc.)’에게 오클라호마 주의 ‘우치타국립공원(Ouachita National Forest)’안에 위치한 특정 ‘국립산림 부지(National Forest System land)’를 양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위 양도대상에서 ‘원딩스테어 국립레크레이션 및 야생지역법(Winding Stair Mountain National Recreation and Wilderness Area Act)’상 지정된 ‘미대륙선주민 국립경관 및 야생생물 지역(Indian Nations National Scenic and Wildlife Area)’내부에 위치한 토지는 제외된다.

그러나, ‘미대륙선주민 위원회 단체(Indian Nations Council, Inc.)’는 ‘미연방농무부장관(Secretary of Agriculture)’에게 양도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 공정시장가는 미연방농업부장관이 승인한 감정평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감정평가는 ‘연방토지획득을 위한 통일감정평가기준(Uniform Appraisal Standards for Federal Land Acquisitions)’ 및 ‘1976년 연방토지정책및관리법(Federal Land Policy and Management Act of 1976)’상 ‘국립산림체제(National Forest System)’의 내부에 위치한 공공토지및부속권리의 거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본 법은 또한 양수된 토지에 대한 접근은 미국 보이스카웃(Boy Scouts of America)의 ‘미대륙선주민 위원회 단체(Indian Nations Council, Inc.)’ 또는 그 승계인의 인접토지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미연방농무부장관(Secretary of Agriculture)은 양도에 관한 계약내용 및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권한을 가지며, 그 계약내용 및 조건은 행정상의 목적에 기한 양수토지에 대한 접근권 확보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반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공공정책 / 행정

■ H.R.3630

Latest Title: 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Creation Act of 2012

Latest Major Action: Became Public Law No: 112-96

• 2012년 중산층 세금경감 및 직업창출법

고용주가 종업원을 위해 원천징수하게 되는 '지불 급여세(payroll tax)' 감면 및 긴급 실업수당(jobless benefits)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함.

본 법은 '2010년 세금감면, 실업보험 재승인 및 직업창출법(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을 개정하여 종업원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지불급여세'의 세율을 2% 감면하는 것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함. 이러한 감면혜택의 적용대상으로서 임금수준을 제한하는 부분은 삭제하였음.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제3편(Title III)을 수정하여 주정부의 실업보상법상 정기적인 보상 수혜의 자격조건으로서 수혜청구자가 노동할 수 있거나, 노동제공이 가능한 상태에 있거나, 적극적으로 취업을 시도할 것을 규정하도록 하였음.

연방세법과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제3편(Title III)을 수정하여 주정부로 하여금 현재의 실업수당을 축소하여 이전의 실업수당 초과지급상태를 복구하도록 하였음.

연방세법을 수정하여 단시간 근로 보상제에 관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 대신에 근로주일(work-week) 단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단시간 보상제실시를 재정지원함을 규정함.

주정부가 개인사업(self-employment)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함.

비상실업보상(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을 받는 특정 수혜자에게 주정부가 재고용 서비스 및 재고용 자격 평가 활동을 제공/수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조항을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계약에 포함시킬 것.

■ H.R.1162

Latest Title: To provide the Quileute Indian Tribe Tsunami and Flood Protection, and for other purposes.

Latest Major Action: Became Public Law No: 112-97

- ‘퀵루트(Quileute) 미대륙원주민 부족에게 쓰나미 및 홍수 보호책을 제공 등’

워싱턴의 주(州) Olympic National Park(올림픽 국립공원) 안에 있는 특정 연방토지를 ‘전미 야생지역 보존제도(National Wilderness Preservation System)’ 대상범위에서 삭제함. 본 토지는 ‘Olympic Wilderness (올림픽 야생지역)’의 일부로 지정된 곳이지만, 이를 ‘전미 야생지역 보존제도(National Wilderness Preservation System)’에 포함시키지 않고 배제함.

국립공원내의 특정 연방토지를 퀵루트(Quileute) 미대륙원주민 부족을 위한 신탁(Trust)에 제공한다는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또한 내무부장관(Secretary of the Interior)은 퀵루트(Quileute) 미대륙원주민 부족이 소유한 비연방 부지를 그 부족을 위한 신탁에 제공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단, 이때 환경위해평가의 완료 및 승인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한편, 부족에게 양도된 연방토지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일정 지역권(easement)을 향유하며, 양도된 토지의 자연상태를 보존하고 일반 공중에게 레크레이션 등 관광을 위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화 하고 있음.

그러나, 부족에게 양도된 토지 중 보존지역(Reservation)의 남쪽 경계선 부분은 위의 지역권과 조건이 면제되며, 이 부분의 토지는 쓰나미와 홍수 구역 밖으로 부족민의 이주와 건축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부족을 위한 신탁으로 토지를 제공하고 공식적인 부족회의 결의가 있는 즉시, 해당 부족의 미연방정부에 대한 공원의 과거 및 현재의 소유권, 진입, 사용, 조사 기타 활동 등에 관한 청구권은 소멸됨.

본 법률에 따라 부족신탁에 제공된 토지에서는 사냥이 금지됨.

■ H.R.347

Latest Title: Federal Restricted Buildings and Grounds Improvement Act of 2011

Latest Major Action: Became Public Law No: 112-98

- ‘2011년 연방 제한 건물 및 제한 지역 증진법(Federal Restricted Buildings and Grounds Improvement Act of 2011)’

‘2011년 연방 제한 건물 및 제한 구역 개선법(Federal Restricted Buildings and Grounds Improvement Act of 2011)’은 연방형법전(FEDERAL CRIMINAL CODE)을 개정하여, 합법적 권한없이 연방 제한건물이나 제한구역에 고의로 들어간 자에게 형사처벌(criminal penalty)을 부과하도록 관련규정을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제한건물이나 구역의 정의는 표지가 부착되거나 접근금지선이 있는 등의 제한지역으로서 (1) White House 또는 그 구역 또는 부통령 직무실 또는 그 구역, (2) 대통령 또는 기타 ‘비밀서비스국(Secret Service)’에 의해 보호되는 자가 머물거나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건물 또는 구역, 또는 (3)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특별 행사로 인하여 제한되는 건물이나 부지를 의미한다.

■ S.2038

Latest Title: STOCK(Stop Trading on Congressional Knowledge) Act

Latest Major Action: Became Public Law No: 112-105

• 의회 지식정보에 대한 거래금지법

본 법은 미연방의회 상하원의원 및 의회근로자(입법부 공무원 및 관련 근로자 포함)가 자신의 신분, 위치 또는 공적 임무의 수행과정 등으로부터 획득한 비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다.

본 법에 따라 미연방의회의 윤리위원회는 본 법상의 금지내용에 관하여 이익상충 및 금품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각 기관 단위의 규칙에 대한 해석지침(interpretive guidance)을 제정하여야 한다. (section 3)

특히, 본 법은 미연방의회 상하원의원 및 의회근로자(입법부 공무원 및 관련 근로자 포함)가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및 Rule 10b-5 을 포함한 증권관련법령상의 내부자 거래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선언하였다. (section 4)

또한,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을 개정하여 미연방의회 상하원의원 및 의회근로자(입법부 공무원 및 관련 근로자 포함)가 미연방의회, 미연방정부, 그리고 미국시민에게 ‘신뢰와 신임관계(a relationship of trust and confidence)’에 기한 의무를 부담함을 선언하였다. (section 4)

그리고,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을 개정하여 미연방의회 상하원의원 및 의회근로자(입법부 공무원 및 관련 근로자 포함) 또는 사법부 공무원 및 관련근로자 등이 사이의 상품매매, 선물거래 또는 상품교환 등과 관련된 특정거래의 금지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Section 5)

뿐만 아니라, ‘1978년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을 개정하여 특정 개인(specified individuals)은 1000달러를 초과하는 주식, 채권, 상품선물, 기타 형태의 주식의 매매 또는 교환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후 30-45일이 내에 신고할 것을 강제하였다. 특정 개인(specified individuals)은 1) 대통령, 2) 부통령, 3) 행정부 공무원 또는 관련 근로자 (특정 정부 근로자 등 포함), 4) 정부에 의해 임명된 행정판사, 5) 직책의 비밀 또는 정책적 성격으로 인하여 시장경쟁적 서비스와 관련없는 위치에 있는 행정부 근로자, 6) 체신부 장관(Postmaster General) 및 차관, 미연방 체신부 이사회 이사(each Governor of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U.S. Postal Service), 특정 체신부 공무원 또는 근로자, 7) 정부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 국장 및 각 지정된 윤리국 공무원, 8) 대통령의 집행실에 근무하는 민간인 근로자, 9) 연방의회 의원, 10) 의회 공무원 및 근로자 등을 가리킨다. (section 6)

연방형법전(federal criminal code)을 개정하여 15년이하의 금고나 벌금 또는 양벌 뿐만 아니라 직위파면을 이하의 경우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연방의회 의원, 의회 근로자 및 특정 행정부 관련자가 당파적 정치관계에 기초하여 민간업체의 채용 결정이나 채용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1) 공식적인 조치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그에 대한 제안이나 협박, 2) 다른 공식적인 조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제안하거나 영향력행사 협박을 하는 경우. (section 18)

■ H.R.1892

Latest Title: 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2

Latest Major Action: Became Public Law No: 112-87

• 회계연도 2012년 정보수권법

정보수집 행위 및 이하의 기관들의 정보관련 행위에 대한 2012년 예산을 허가함: (1) 국가정보국장실(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NI)); (2)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3)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 (4) 국방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 (DIA)); (5) 국가보안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 (6) 육해공군(Departments of the Army, Navy, and Air Force); (7) 해안경비대(Coast Guard); (8) 국무부(Departments of State), 재무부(Departments of the Treasury), 에너지부(Departments Energy (DOE)) 및 사법부(Departments Justice (DOJ)); (9) 연방조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10) 마약퇴치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 (11) 국가정찰국(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 (12) 국립지리정보국(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and (13)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본 법 Section 101)

본 법은 국가정보국장(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NI))이 중요한 정보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2012년도에 허가된 수치를 초과하여 민간인을 고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 법 Section 102)

국토안보부장관은 미연방의회에 정보위원회/국토안보위원회에 항공제한이 국토안보부의 무인항행장치의 미국-멕시코 경계선지역에서 운행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하여야 한다. (본 법 Section 501)

본 법은 특히 의회의 의지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공격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미국토안보부장관은 계속하여 모든 미연방 정보, 법집행, 그리고 국토보안역량을 정리하는 융합센터(fusion center)를 통합시키고 이용함으로써 테러리스트의 미국에 대한 행위를 예방해야 한다. (본 법 Section 502)

국가정보국장(DNI)과 국방부장관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즉석폭발장치(improvised explosive devices)의 개발 및 사용과 관련된 활동을 확인하고 대처활동을 위한 합동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법 Section 504)

■ H.R.4967

Latest Title: Temporary Bankruptcy Judgeships Extension Act of 2012

Latest Major Action: Became Public Law No: 112-121

• 2012년 임시 파산 재판관직 연장법

본 법은 California, Delaware, Florida, Georgia, Maryland, Michigan, New Jersey, New York, North Carolina, Pennsylvania, Puerto Rico, South Carolina, Tennessee, Virginia, Nevada 등 의 특정 지역의 파산판사직에 공석이 발생할 때까지 ‘1992년 파산법 재판관직 법(Bankruptcy Judgeship Act of 1992)’ 및 ‘2005년 파산법 재판관직 법(Bankruptcy Judgeship Act of 2005)’하에서 승인되거나 연장된 일부 임시 파산법 재판관직(the temporary office of certain bankruptcy judgeships)을 연장하는 것으로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Section 2)

한편, 본 법 제정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고 파산법 판사의 사망, 은퇴, 사임 또는 해고로부터 발생하는 특정 파산법 재판관직의 공석은 보임을 금지한다. (Section 2)

철도와 관련되지 않는 미연방파산법 Chapter 11(회사갱생절차)하에서 개시된 사건의 파산 신청 수수료를 일정액만큼 증액한다. 또한 (1) 이러한 증액된 수수료는 미연방 재무부의 특별펀드(special fund)에 예치되어야 하고, (2) 본 예치금은 미연방법원의 운용과 유지를 위해 예산배정되는 금액과 상계(본 법률의 제정이후 입법되는 법률에 의해 특별히 예산배정되는 정도만큼)되도록 이용되어야 한다. (Section 3)

미연방 신탁제도펀드(U.S. Trustee System Fund; 미 연방 수탁인의 운용을 위한 법무부장관 이용가능 금액)에 대한 상계목적으로 예치되는 수수료의 비율은 낮추되, 미연방파산법상 Chapter 7(파산) 및 Chapter 13(정기적인 수입원이 있는 개인의 채무조정)의 수수료 비율은 증가시켜 미연방사법부가 미연방법원의 각종 비용, 서비스 및 행정을 위해 이용가능한 상계수입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Section 3)

미하원 및 상원의 사법위원회는 본 법률에 의해 승인된 판사직의 재승인이전에 이하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각 판사직의 재승인 필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본 법률에 의해 승인된 파산법 판사직에 대한 검토 수행, (2) 모든 파산사건 신청의 변동사항 및 신청수수료 수입의 영향 평가, (3) 법원의 행정직공무원은 파산사건의 업무량, 파산판사직 운용비용, 파산신청 수수료 수익에 대한 보고서 제출하여야 함. (Section 4)

■ H.R.5740

Latest Title: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Extension Act

Latest Major Action: Became Public Law No: 112-123

• 연방 홍수보험 프로그램 연장법

본 법은 '1968년 연방홍수보험법(National Flood Insurance Act of 1968; NFIA)'을 개정하여 '연방홍수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을 위한 재원공급을 201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다.

구체적으로 '1973년 홍수재난보호법(Flood Disaster Protection Act of 1973; FDPA)'을 개정하여 각 연방대출기관이 모기지론과 관련하여,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민간홍수보험(private flood insurance)을 연방홍수보험 한도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승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방비상관리행정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의 책임자(Administrator)와 연방정부 회계검사관(Comptroller General)은 각각 연방 홍수보험 프로그램을 민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연방비상관리행정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의 책임자(Administrator)는 홍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범위의 금융위험을 관리함에 있어서 자발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민간 보험사, 재보험사, 금융시장의 (지원)역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방 홍수보험 프로그램에서의 민간위험관리사업을 추진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연방비상관리행정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의 책임자(Administrator)는 또한 연방 홍수보험 프로그램의 보험위험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안을 모색함으로써 민간 재보험사, 자본 및 금융시장의 (지원)역량을 평가하여야 한다.

연방비상관리행정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의 책임자(Administrator)는 연방 홍수보험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부보한도액의 재보험 부보를 민간 시장의 보험, 재보험 및 자본시장으로부터 확보할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연방 홍수보험 프로그램의 보험클레임 지급능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금액만큼 재보험 부보를 민간재원으로부터 확보하여 본 프로그램이 특정 법령상의 자금 대차권한을 이용할 가능성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연방비상관리행정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의 책임자(Administrator)는 민간부문 재보험 및 그에 상응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특정 법령상의 자금 대차권한에 의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한 연방 홍수보험 프로그램의 클레임지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연방비상관리행정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의 책임자(Administrator)와 연방정부 회계검사관(Comptroller General)은 각각 이하의 사항을 연구하여야 한다: (1) '자발적인 지역공동체 기반 홍수보험상품'의 종류를 제공하고 그러한 상품들을 연방 홍수보험 프로그램 안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선택안, 방법 및 전략 그리고 (2) 지역공동체로 하여금 홍수방지활동을 수행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실천전략 등.

경제 / 산업 / 통상

■ H.R.2845

Latest Title: Pipeline Safety, Regulatory Certainty, and Job Creation Act of 2011

Latest Major Action: Became Public Law No: 112-90

• 2011년 파이프라인 안전, 규제 확실성 및 직업 창출법

석유, 천연가스 기타 위험한 액체물질의 파이프 라인 시설 운영자가 이하의 행위를 한 경우 민사벌금형을 증액하여 부과하도록 하였다: (1) 파이프라인 시설의 위치를 파괴, 발굴, 터널작업 또는 건축의 인접지역에 잡는 경우, (2) 상기 지역에서 지하 시설의 위치 수립 관련 원콜(one-call)전화통화 시스템 구축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3) 검사, 유지, 위험분석, 및 건전성관리 프로그램 등의 안전기준 및 관련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 법 Section 2)

특히, 교통부장관(Secretary of Transportation, DOT)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검사행위 또는 조사행위를 방해하거나 차단한 경우 민사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법 Section 2)

또한, 이하의 사항은 기존 법률에서 삭제를 하였다 : (1) 파이프라인 안전에 관한 행정관청의 강제집행을 위한 민사벌금형의 최고액 한도, 및 (2) 특정 안전기준의 면제 요청에 대한 행정관청의 거부에 관한 사법 심사(judicial review). (본 법 Section 2)

한편, 교통부장관은 파이프라인 안전에 대한 발굴행위 손해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하고, 행정규칙을 통하여 자동 또는 원격조정 잠금밸브 또는 상응하는 기술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교체된 전송 파이프라인 시설에 적용하여야 한다. (본 법 Section 3 and 4)

교통부장관은 (1) 건전성관리시스템 요구조건들이 중요도 높은 지역(high-consequence areas)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여부, (2) 가스 전송 파이프라인 시설에 대한 건전성 관리 프로그램의 적용을 기타 지역에까지 확장하는 것이 등급지역(class location)의 요구조건 필요를 경감하는가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본 법 Section 5)

■ H.R.2056

Latest Title: To instruct the Inspector General of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to study the impact of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failures, and for other purposes.

Latest Major Action: Became Public Law No: 112-88

-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감찰관(Inspector General)에게 피부보예금기관 파산의 영향을 조사하도록 함

본 법에 의하여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감찰관(Inspector General)은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부보된 예금기관의 파산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내용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1) 살아남은 피부보예금기관과 파산한 피부보예금기관의 차입자에 대한 손실분담약정의 영향(impact of loss-sharing agreements), (2) 손실분담약정을 점검하기 위한 연방예금보험공사 정책 및 그 절차 (예금기관이 비합리적으로 저가로 자산을 매각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절차 포함), (3) 손실분담약정을 종료시키는 연방예금보험공사 정책 및 그 절차, 그리고 손실분담약정이 만료되는 때에 상당한 잔여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인수위험을 경감시키는 연방예금보험공사 정책 및 그 절차, (5) 손실의 상당성, 그리고 (6) 대출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여 재산관리 또는 법정관리하에 들어간 피부보예금기관의 숫자. (본 법 Section 1)

조사는 (1) 추가적인 자금동원을 위한 피부보예금기관의 능력에 대하여 대출손실이 미치는 영향, (2) 공정가치회계규칙 및 기타 회계기준이 은행에 대한 규제적 조치를 발생시킨 정도, 그리고 (3) 현장 조사관들이 대출손실에 관하여 적합한 평가절차를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본 법 Section 1)

연방정부 회계검사관(Comptroller General)은 (1) 2008년 이후 10회 이상의 은행파산(bank failure)을 발생시킨 주(州)에서의 은행파산의 원인, (2) 공정가치회계기준의 경기순응적 영향, (3) 대출상각, 자본증액 및 은행파산의 악순환에 대한 원인과 잠재적 해결책, 그리고 (4) 손실분담약정의 성공가능성과 일반적 영향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본 법 Section 3)

■ H.R.3801

Latest Title: Ultralight Aircraft Smuggling Prevention Act of 2012

Latest Major Action: Became Public Law No: 112-93

- 2012년 초경량 항공기 밀수 방지법

초경량 항공기 밀수방지법은 1930년 관세법을 개정하여, 항공밀수에 관하여 본 법의 항공기 적용범위를 공중에서 항행하거나 비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거나, 사용되거나, 설계된 모든 장치물 및 초경량 기계장치까지 확대하였음.

항공밀수에 관한 미수 또는 공모를 특정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였음.

국방부장관(Secretary of Defense)은 국토안보부장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과 넓은 범위의 협조 프로그램 지속함으로써 국토안보부가 이용할 수 있는 국방부 장비, 기술 및 전문기술을 식별하여 본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 미연방의회의 의사임.

국방부 자원의 활용은 국토안보부 뿐만 아니라 관세및국경보호부(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도 필요사항으로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의 국경지대에서 불법적인 밀수행위를 퇴치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지원이 필요함.

■ H.R.658

Latest Title: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Latest Major Action: Became Public Law No: 112-95

• 2012년 FAA 현대화 및 개혁법

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의 예산을 승인함. 본 법은 미전역의 항공시스템을 현대화 하기 위하여 4년간 \$63.4 billion 달러를 연방항공국(FAA)에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 중 \$11 billion 달러는 항공교통통제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임.

본 법은 연방항공국(FAA)이 현재의 항공교통통제시스템에 차세대기술을 적용시켜 레이더에서 GPS 시스템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 9월까지 무인항공기의 운행을 허가하고 있음.

연방항공국(FAA)은 학부 및 기술전문대학(역사적으로 흑인 대학, 히스패닉 대학, 미대륙원주민 부족 대학, 알래스카 및 하와이 원주민 대학 등)을 활용하여 관련 주제 리서치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함.

연방항공국(FAA)이 작성한 항공투자계획(Airway Capital Investment Plan)이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Next Generation (NextGen) Air Transportation System) 사업의 목록을 포함하도록 함.

연방항공국(FAA)은 1만명에서 1만5천명의 비행기탑승인원을 최근 2년간 매년 보고한 각 미국 내 공항에 대해서 의회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1만명 탑승인원수에 도달한 각 공항이 사용한 집계방법, 그리고 해당 공항이 1만명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항공사에 자금지원을 했는지 여부까지 보고하여야 함.

그 밖에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본 법은 EU의 배출권 교환 시스템을 국제 민간항공운영에까지 확대적용 시키는 것은 반대.
- 자발적인 항공 안전관련 데이터 보호 시스템을 강화
- 항공기에 대한 레이저 공격은 연방범죄로 분명히 함
- 활주로 안전대책을 강화함
- 항공교통에 의한 리튬 배터리(Lithium Battery) 운송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술지침 보다 리튬 배터리 운송을 엄격하게 규제함
- 태평양을 통항하는 항공기를 위한 대체적 공항의 오픈을 계속하여 허가함(Midway Island, the Marshall Islands, Micronesia, and Palau)

■ H.R.4105

Latest Title: To apply the countervailing duty provisions of the Tariff Act of 1930 to nonmarket economy countries, and for other purposes.

Latest Major Action: Became Public Law No: 112-99

- 1930년 관세법의 상계관세규정을 비시장경제국가에 적용함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을 개정하여 미국의 연관산업에 중대하게 해를 주는 제조, 생산, 수출에 대한 직·간접의 보조행위를 하는 국가로부터 미국으로의 수입에 대해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상계관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물품은 비시장경제국가(a nonmarket country)로부터의 물품도 포함한다. 단, 미 행정당국이 비시장경제국가에 의해 제공된 보조금을 확인하고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 행정당국은 비시장경제국가로부터의 물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이하의 경우에는 축소하여야 한다: (1) 그 해당국가가 특정 물품에 상계가능한 보조금(countervailable subsidy)을 지급한 경우 (단 수출보조금은 제외한다), (2) 관련기간 동안 그 보조금이 해당 물품의 수입 평균가격을 감소시킨 경우, (3) 평균가치의 이용과 결합하여 그 보조금이 가중평균덤핑 이윤(margin)을 증가시킨 정도가 합리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경우

미 행정당국은 위의 경우 추정된 가중평균덤핑 이윤의 증가액만큼 반덤핑관세를 축소시켜야 한다.

■ H.R.4281

Latest Title: Surface Transportation Extension Act of 2012

Latest Major Action: Became Public Law No: 112-102

• 2012년 육상교통연장법

특정 연방정부지원 고속도로 사업을 위하여 2011년 육상교통연장법의 파트 II를 개정하여 해당 법령이 2012년 6월 30일 까지 지속되도록 하고, 예산을 승인함. 그 특정 연방정부지원 고속도로 사업은 이하의 법령에 근거한 것이다: ‘안전하고 책임감있으며 유연하고 효과적인 교통 형평법: 사용자를 위한 유산(Safe, Accountable, Flexible, Efficient Transportation Equity Act: A Legacy for Users (SAFETEA-LU)’, ‘2008년 SAFETEA-LU 기술적 사항 일부수정법(SAFETEA-LU Technical Corrections Act of 2008)’, ‘1991년 인터모달 육상교통효율법(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 of 1991 (ISTEA))’, 21세기를 위한 교통형평법(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the 21st Century) 등. (본 법 Section 101)

또한 본 법은 이하를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1) 육상교통리서치, 개발, 및 배치 사업, (2) 훈련 및 교육, (3) 교통 통계국, (4) 대학 교통 리서치, (5) 지능적 교통시스템 연구(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TS) research) (본 법 Section 101)

특정 교통사업 펀드의 할당을 이하로까지 확장한다: (1) 주정부의 간 및 연방 고속도로 시스템 사업, 교통집중 해소 및 공기질 향상 사업, 고속도로 안전증진사업, 육상교통사업, 및 고속도로 교량 사업 등을 포함한 사업들, (2) 기타 미국가의 부속령 및 푸에르토리코 등. (본 법 Section 101)

한편, 본 법상 펀드의 이용은 네바다 주의 라스베가스 및 캘리포니아의 애너하임을 잇는 고속 MAGLEV 시스템을 위해서는 금지된다. (본 법 Section 101)

‘안전하고 책임감있으며 유연하고 효과적인 교통 형평법: 사용자를 위한 유산(SAFETEA-LU)’을 개정하여 2011년 10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행정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의 안전사업을 위한 예산승인을 연장하였다. 안전사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고속도로 안전 리서치 및 개발, (2) 점유자 보고 인센티브 부여 프로그램, (3) 안전벨트 성과 보조금 사업, (4) 주정부 교통안전정보시스템 향상, (5) 알코올 운전 대응조치 인센티브 부여 사업, (6) 연방운전자등록, (7) 시야확보 강화 프로그램, (8) 모터사이클 안전성, (9) 자녀 안전 및 좌석 안전 인센티브 보조금 사업, (10) 교통안전행정국(NHTSA)의 행정적 비용 등. (본 법 Section 201)

본 법은 또한 2011년 10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연방통행도로사업(federal transit programs)을 위한 자본 투자 펀드의 할당을 연장시켰다. 연방통행사업은 메트로폴리탄 계획사업 및 주정부의 계획 및 리서치 사업까지 포함한다. (본 법 Section 301)

연방세법 규정을 개정하여 (1) ‘회계연도 2011년 고속도로 신탁펀드(Highway Trust Fund (HTF) for FY2011)’의 고속도로 및 대량통행도로 계좌, (2) 스포츠 피쉬 복구 및 보트 신탁펀드(Sport Fish Restoration and Boating Trust Fund), (3) 누수 지하저장탱크 신탁 펀드 등으로부터의 지출에 대한 권한을 201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다. (본 법 Section 401)

본 법은 미국의 고속도로 및 통행도로 인프라 건설을 위한 예산을 연장 승인함으로써 직업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H.R.3606

Latest Title: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Latest Major Action: Became Public Law No: 112-105

• 사업 창업 지원법

‘신성장 회사에 대한 미자본시장 재공개법(Reopening American Capital Markets to Emerging Growth Companies Act of 2012)’으로서,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및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을 개정하여 “신성장회사(emerging growth company)”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직전 회계연도 기준 10억 달러(USD 1 Billion)미만의 총연간매출을 기록한 자” (section 2).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유효한 유가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에 따라 보통주 주식의 최초 매매가 이루어진 회사는 위의 “신성장회사(emerging growth company)”로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2)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및 ‘2010년 투자자 보호 및 증권개혁법(Investor Protection and Securities Reform Act of 2010 (title IX of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개정하여 본 법상의 신성장회사는 고액퇴직금 등의 ‘황금낙하산 보상(golden parachute compensation)’을 포함한 임원 보상체계에 대한 주주승인 요건을 면제받게 된다. (section 3)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및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을 개정하여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되어야 하는 유가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상에서 신성장회사는 주식공개(initial public offering)와 관련되어 최초감사기간 이전의 기간동안 제출된 특정 선별 재무데이터는 제출할 것이 요구되지 않도록 하였다. (section 3)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을 개정하여 신성장회사는 자신의 유가증권신고서가 보통주 주식공개에 관하여 발표되도록 하기 위하여 2년이상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이 요구되지 않도록 하였다. (section 3)

본 법은 또한 신성장회사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재무회계기준을 따를 것이 요구되지 않음을 선언하였다. 단, 만일 그 재무회계기준이 주식발행자가 아닌 신성장회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주식발행자가 아닌 신성장회사도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ection 3)

신성장회사는 7천5백만달러(\$75 million)이하의 비관련자가 보유한 투표권있는 보통주 및 투표권없는 보통주를 가진 주식 발행자와 동일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특정 임원보상 정보공개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section 3)

‘2002년 사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02)’을 개정하여 등록된 일반회계법인으로서 신성장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회계법인은 그 신성장회사의 경영층이 하였던 내부통제(internal controls)에 대한 평가 보고 또는 증명을 면제받는다. (section 4)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을 개정하여 신성장회사는 증권거래위원회 직원의 비공개 검토목적으로, 주식 공개일 이전에 증권거래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 초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최초비공개제출서 및 모든 그에 대한 수정본은 발행자가 설명회(road show)를 개시하기 21일 전 증권거래위원회에 공개적으로 신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할 의무는 없다. (section 7)

한편, 본 법은 신성장회사가 본 법상 부여된 각종 면제혜택을 스스로 포기하고 신성장회사가 아닌 주식발행자에게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section 8)

본 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는 Regulation S-K (유가증권신고서상 비재무적 신고부문에 관한)의 현재 요구조건들이 어떻게 하면 신고절차를 현대화하고 단순화하여 신성장회사의 관련비용 및 기타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section 9)

■ H.R.2072

Latest Title: Export-Import Bank Reauthorization Act of 2012

Latest Major Action: Became Public Law No: 112-122

• 2012년 수출입은행 재승인법

본 법은 '1945년 수출입은행법(Export-Import Bank Act of 1945)'을 개정하여 미연방 수출입은행의 기능종료일(Termination of functions date)을 2014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Section 2).

회계연도 2012년 및 이후 회계연도에 대한 대출, 보증 및 보험의 연간한도액을 \$120 billion 달러로 설정하였다. 한편, 미연방 수출입은행이 (1) 본 법하에서 특정 보고서(a specified report)를 제출하고, (2) 회계연도 종료 분기 또는 회계연도의 각 분기가 본 법하에서 산정된 특정 비율(a specified rate calculated under this Act)이 2%미만인 경우에는 대출, 보증 및 보험의 연간한도액을 회계연도 2013 및 2014년 각각에 대해 \$130 billion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그러나, 회계연도 2014년에 대해서는 위 (1)과 (2)의 요건 충족과 동시에 미연방 재무부장관이 본 법에 의해 요구되는 특정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출, 보증 및 보험의 연간한도액을 \$140 billion까지 증액이 가능하다.(Section 3).

미연방 수출입은행은 본 법에 의하여 미연방의회와 연방정부 회계검사관(Comptroller General)에게 이하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business plan)를 제출하여야 한다: (1) 2012-2013년에 대한 적정 노출한도 추정치(appropriate exposure limits) 및 2012-2014년에 대한 기대성장 추정치; (2) 추정 노출한도(exposure limits)의 결과로서 증가 또는 감소 손실위험 가능성 분석, (3) 소상인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위임의무의 필요대응 능력 및 '제안 노출한도(proposed exposure limit)'하에서의 탄소정책 준수 능력, (4) 승인사항의 처리, 승인, 점검을 위한 미연방 수출입 은행의 자원 적합성(adequacy of Bank resources)에 대한 분석 등. (Section 4).

또한 미연방의회 소속의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위 사업보고서를 검토하여 미 연방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Section 4).

연방정부 회계검사관(Comptroller General)은 미연방 수출입은행과 미연방의회에 이하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미연방 수출입은행의 성장률 연혁, (2) 미연방 수출입은행의 위험관리의 효율성, (3) 미연방 수출입은행의 미래 사업비용 산정을 위한 역사적 채무불이행 및 회복율(historical default and recovery rates) 이용, (4) 미연방 수출입 은행 수수료 및 그 은행수수가 미국의 국제협약참여에 의해 받는 영향, 및 (5) 미연방 수출입은행의 대출 손실금 보유고 정책이 위험 및 잠재적 손실을 충당할 정도로 충분한지 여부 등. (Section 5). 본 법상 미연방 수출입 은행은 위 평가에 포함된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하여 미연방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Section 5)

미연방 수출입은행은 (1) 최소한 분기별로 단기, 중기 또는 장기 여신을 제공한 단체의 채무불이행율(default rates)을 점검하여, (2) 만약 그 채무불이행율이 2%이상인 경우에는 미연방의회에 월별 보고를 하여야 하며, 그 보고는 해당 채무 불이행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Section 6). 만약 채무불이행율이 6개월동안 2% 초과상태로 지속된 경우에는 미연방 재무부장관은 미연방 수출입 은행의 대출사업과 자금에 대한 제3자 평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Section 6).

미연방 수출입 은행은 (1) 자신의 대출 파트너 및 참여자를 위한 신의성실의 행위기준을 수립하고, (2) 여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모든 다른 채권자에게 후순위가 되지 않는 채권자 순위를 확보하여야 하며, (3) \$100 million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통지 및 의견제시 기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Section 7)

사법 / 경찰

■ H.R.1801

Latest Title: Risk-Based Security Screening for Members of the Armed Forces Act

Latest Major Action: Became Public Law No: 112-86

- 미국군 소속인원을 위한 위험기반 보안 점검 법

국토안보부의 차관보(Assistant Secretary)는 미국군 소속인원(Members of the Armed Forces Act)을 위한 신속 보안 점검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주된 공항으로부터 출발하는 항공교통에 대한 공식명령을 가리키는 문서를 특정 군인이 제출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반가족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차관보는 본 계획을 수립할 때 특정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관보는 정보국이나 사법기관정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미 군인에 대한 추가점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차관보는 기존의 보안모델을 사용하여 여행객의 시간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하고, 전투화를 포함한 군복 물품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법 Section 2)

국제 / 외교

■ H.R.515

Latest Title: Belarus Democracy and Human Rights Act of 2011

Latest Major Action: Became Public Law No: 112-82

- 2011년 벨라루스 민주주의 및 인권법

본 법은 벨라루스(국가명: 동유럽의 한 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법으로서 2004년 벨라루스 민주주의 법(Belarus Democracy Act of 2004)을 개정하여 미 연방의회의 의지를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매체(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the Voice of America, European Radio for Belarus, 그리고 Belsat)를 이용하여 벨라루스 언어로 벨라루스의 시민에게 라디오, 텔레비전 및 인터넷 방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미국의 제재를 종료시키기 위하여는 벨라루스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2010년 12월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던 자로서 억압과 관련하여 정치적 신념이나 표현 때문에 구금된 자들의 해방, (2)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인권 위반을 포함한 인권위반에 책임있는 벨라루스 정부의 고위급 인사에 대한 기소, (3) 야당 인사들 및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저널리스트에 대한 정치적 동기에 기한 법적 소추의 철회, 그리고 (4) 유럽 안보 및 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의 기준과 합치하고 그리고 그 기구의 감독하에 자유롭고 투명한 대통령선거 및 의회선거를 치를 것.

야당 지도자, 저널리스트 및 평화적 시위자에 대한 진압에 참여했거나 또는 종교적 그룹이나 인권 보호자들에 대한 탄압에 참여했던 안보 또는 사법기관 구성원들의 미국입국을 금지함.

— 유럽연합 —

재정 / 금융

■ 32012R0423

Regulation (EU) No 423/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12 amend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083/2006 as regards certain provisions relating to risk-sharing instruments for Member States experiencing or threatened with serious difficulties with respect to their financial stability

- 2012년 5월 22일 재정 안정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위협에 직면한 회원국을 위한 위험 분담 기구에 관한 특정 규정에 관한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C) No 1083/2006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U) No 423/2012

2011년 7월 21일 개최되었던 유럽존과 유럽 연합 기구 정상 회담 선언문은 유럽 연합의 모든 회원국의 대출 프로그램과 유럽 연합 기금 또는 국제 통화 기금 간의 공조 효과를 향상하기 위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 투자 은행 (EIB) 의 노력을 촉구했다. 유럽 연합 장관 회의,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및 유럽 투자 은행은 또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연합의 일반 예산에 유럽 투자 은행 그룹의 재정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유럽 투자 은행의 활동 향상 방법을 고려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최근 유로존 회원국에서 발생한 재정 위기에 직면한 유럽 연합 및 유로존 회원국은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성장 촉발에 절실하게 필요한 생산적인 투자 계획에 필요한 민간 금융 기관의 투자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경제 개발을 위한 투자 계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을 공공 및 민간 투자자와 분담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단독 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험 부담으로 인해 투자를 꺼려하는 민간 은행의 우려를 해소하는 결과를 기대한다. 유럽 연합 차원의 투자 위험 분담 기구의 창설은 재정 위기에 처한 회원국이 사회 투자 정책에 필요한 자본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규정 (EU) No 423/2012 의 제 1 조는 규정 1083/2006 의 제 36 조 a 항 을 개정해 투자 위험 분담 기구에 관한 조항을 첨가한다. 개정된 조항에 준거해 유럽 거시 경제 지원을 받는 회원국(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및 루마니아)은 유럽 지방 기금이 이행하는 배당액의 집행을 집행위원회로 신청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상기 회원국의 지방 투자 계획의 투자자와 은행에 대출을 원하는 유럽 투자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관과 위험 분담 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유럽 연합 회원국과 유럽 투자 은행간의 대출 위험 분담 원칙에 기초해 설립된 위험 분담 기구는 높은 투자 위험이 존재하는 투자 계획의 이익을 보장하고 대출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유럽 연합의 위험 분담 기구에 대한 출자액은 유럽 지방 개발 기금과 연대 기금이 2007~2013 년에 배당한 국내 분배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규정 (EU) No 423/2012 는 유럽 지역 개발 기금(ERDF), 유럽 사회 기금(ESF) 및 연대 기금에 관한 일반 규정을 명시한 규정 (EC) No 1083/2006 의 제 36 조 a 항에서 규정한 위험 분담 기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한다. 규정 (EU) No 423/2012 은 채택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환경

■ 32012D0249

2012/249/EU: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of 7 May 2012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f start-up and shut-down periods for the purposes of Directive 2010/7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industrial emissions (notified under document C(2012) 2948) Text with EEA relevance

- 2012/249/EU : 2012년 5월 7일 산업 가스 배출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지침 2010/75/EU 의 제정 목적을 위해 시작과 종료 결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

2010년 11월 24일 산업 가스 배출량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지침 2010/75/EU (통합 공해 예방 및 감독)은 대기 오염의 가능성을 내포한 산업 활동에 준수해야 하는 배출 가스 감소 의무를 규정했다. 지침은 산업 및 농업 시설로부터 배출된 폐기물처럼 대기, 하천 및 토양을 오염시키는 산업 가스량을 억제 또는 최소화해 최상의 환경 보호 및 공공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침은 기존의 2008년 1월 15일 통합 공해 예방 및 감독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지침 2008/1/EC (통합 공해 예방 및 감독 지침 - IPPC Directive)와 산업 배출 가스에 관한 기타 지침을 단일 지침으로 통합했다.

지침 2010/75/EU는 제10조에 준거한 부칙 I에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에너지, 금속 생산 및 가공, 광산업, 화학 및 무기 화학, 폐기물 처리, 목재 및 제지, 가죽 염색, 동물 시체 재생 및 동물 분비물 처리, 대규모 동물 사육, 석탄 생산, 오수 처리 등의 산업을 명시한다. 또한 부칙 V는 50 MW 또는 그 이상을 전력을 생산하는 연력 발전소, 폐기물 소각 처리 공장, 유기 용제를 사용하는 특정 공장, 타이타늄 디옥사이드 생산 공장의 배출 가스량을 규제하는 조항을 삽입한다. 반면, 연구, 개발 또는 신상품 시험 및 가공 분야에는 상기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침 2010/75/EU는 제11조에 상기 부칙 I에 열거된 산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배출 가스로 인한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기본적 의무로서 공해 예방 조치, 공해 억제를 위한 최선의 기술 적용, 심각한 오염 차단, 폐기물 감소 및 재생,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사고 예방 및 사고 영향 제한 및 사고 발생 시 사고 지역 복구 의무를 열거한다.

산업체의 상기 의무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지침 2010/75/EU 제12조 ~ 제27조에서 유럽 연합의 각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허가 조건을 규정한다. 해당 산업체의 산업 활동 허가 발급 시 회원국은 해당 산업체의 기본 의무와 환경 영향 기준 간의 부합성을 보장하는 필요 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해당 필요 조치는 공해 유발 물질 배출 제한 기준, 토양, 하천 및 공기 보호를 보장하는 규정, 폐기물 감시 및 관리, 배출 가스 측정 방식, 빈도 및 평가 절차 조건, 담당 기관에 대한 감시 결과의 연례 보고 의무, 누수, 시설 오작동, 일시적 또는 영구적 시설 작동 중지 등의 예외적 상황에 관한 긴급 조치, 광범위한 지역 또는 국경을 넘어서는 공해 발생 최소화 규정 및 배출 가스 제한 기준 부합 평가 조건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지침 2010/75/EU는 제3장, 제4장, 제5장 및 제6장에서 열연 발전소 폐기물 소각 시설, 유기 용제 사용 공장 및 타이타늄 디옥사이드 생산 공장에 관한 특별 조항을 규정한다. 상기 산업체 시설에 대한 배출 가스 제한 기준은 지침 2001/80/EC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구체화되어 기존 시설에 적용된다.

또한 지침 2010/75/EU 은 지침에서 열거된 산업 시설에 대한 환결 검사 시스템 설립을 규정한다. 모든 해당 산업 시설을 정기적인 환결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회원국의 환경 검사 담당 기관은 검사 일정에 관한 연간 프로그램 작성과 검사 대상 시설에 대한 환경 검사는 해당 시설의 환경 오염 위험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오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1년, 오염 위험도가 낮은 시설은 3년 이내에 검사를 받는다.

반면, 지침 2010/75/EU 은 제정 당시 연력 발전소의 연소 시작과 종료 기간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환경 보존 및 산업 가스 배출에 관한 강화된 규제 요구에 부응해 결정 2012/249/EU은 지침 2010/75/EU 의 부칙 V의 4파트의 1포인트와 제3조의 (27) 포인트에서 언급한 연소 시작과 종료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결정 2012/249/EU 는 발전소의 안정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최소 발전 시작과 종료 시점을 규정하며 상기 시점의 투명하고 외부 평가 가능성을 강조한다. 또한 상기 최소 발전 시작과 종료 시점은 발전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결정 2012/249/EU는 지침 2010/75/EU 제III장의 적용 대상인 연력 발전소 중 사용 연료의 성질에 관계없이 총 정격 열입력이 50MW 와 동량이거나 또는 이상인 발전소를 제외한 모든 발전소에 적용된다.

영국

사법정책

■ 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 2012 CHAPTER 10: 01/05/2012

• 2012 법률서비스 원조, 양형 및 처벌법

2012 법률서비스 원조 (legal aid), 양형 및 처벌법은 모두 네 개의 부 (part)와 27개의 세부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분별로 핵심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Part1: 법률서비스 원조 (legal aid)

1999 사법법 (Just Act 1999)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현재의 법률서비스 원조(legal aid)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99 사법법은 법률서비스위원회(LSC)를 설립하였는데 이 기관은 비정부적 성격의 공적기관이었으며 민사 및 형사 법률서비스 원조의 행정적 업무를 관할하였다. 1999 사법법은 동시에 대법관(Lord Chancellor)에게 LSC의 권한, 임무와 함께, 법률서비스 원조의 범위를 설정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2010년 Ian Magee경은 법률서비스 원조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주요한 권고사항은 기존의 민형사 법률서비스 원조의 관할업무를 법무부의 행정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으며 2010년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원조에 관한 개혁안을 공표하였다. 동 법은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서 LSC를 폐지하고 일상적인 법률서비스 원조의 행정업무를 대법관 산하로 이관하였다. 이는 형식적인 조직 차원의 변경이었고 실제 업무의 집행은 법무부 산하의 행정기관에서 집행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개개 사건에 대한 법률서비스 원조 업무는 대법관에 의해 지명된 관련 공무원이 담당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 대법관이 구체적인 개개 사건에 대한 법률서비스 원조에 대해 지침을 내리거나 명령을 발할 권한은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Part2: 소송비용 지원 (Litigation funding and costs)

2010년 11월 15일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의 민사소송상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개혁안(Proposals for reform of civil litigation funding and costs in England and Wales)이라는 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의 반응은 개혁안의 상당부분을 수용하는 것이었으며 동 법은 이 개혁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특히 이른바 referral fees라고 불리는 소송제기 비용을 개인 불법행위 손해사건(personal injury claims)의 경우 폐지하였으며 이는 동법의 Part2에 성문화되었다. 동시에 일정한 경우에, 법원은 소송에서 승소한 피고, 혹은 증인, 혹은 승소한 원고에게 소요된 비용을 이른바 소송관련 공적기금(central funds, 이는 의회가 마련한 기금으로 이 기금에서 법원이 명령한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미임)에 의해 지급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런데 동 법은 대법관이 대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행해지는 소송(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벌어지는 소송에 한함)과 관련하여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Part 3: 양형 및 처벌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이 부분은 종래 2003 형사사법에 의해 규율 받던 부분이었다. 2010년 법무부는 양형 및 처벌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여기에는 범죄의 발생을 줄이고 형사사법체계의 수정과 개혁을 통한 범죄의 재발생을 방지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었다. 특히 양형 기준 및 재범 발생 방지제도, 소년범 처리에 관한 개혁안 등이 있었다. 동 법은 위의 개혁안에서 특히 양형부분을 상당부분 수용하여 입법화하였다.

■ Protection of Freedoms Act 2012 CHAPTER 9: 01/05/2012

• 자유보장법

동 법은 모두 7부로 되어있는데 각각의 핵심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 기존의 1984 경찰 및 형사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의 일부를 폐지, 개정된 것이 반영되어 있다. 즉, 경미한 범죄(minor offence)로 인해 구속된 경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석방된 경우 형사피의자에게 확보한 '지문(fingerprints)'이나 'DNA 자료(DNA profiles)'를 폐기처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범죄로 기소되었으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확보한 '지문'과 'DNA 자료'는 원칙적으로 3년간 보유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장의 법원에 대한 신청에 따라 2년간 더 연장될 수 있다. 더불어서 학교나 대학당국이 18세 이하의 학생의 생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제2부: 이 부분은 형사기관이 사용하는 이른바 CCTV 및 그 밖의 감독카메라 사용에 관한 규제조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무 장관이 이러한 CCTV 및 그 밖의 감독카메라 사용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감독해야 하는 감독관이 이러한 규칙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감독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0 수사조사권 감독법(RIPA) 상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당국의 수사조사권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였는데, 예를 들면, 통신자료 확보 및 공표 및 민간인에 의한 제보 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관련 자료를 사용하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제3부: 제3부에서는 수사목적으로 타인이 토지에 침입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규정이 주를 이루는데 각부장관(Minister of Crown)에게 그러한 침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명령으로 이를 무효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동시에 불법적으로 또 위험하게 주차한 자동차를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추가 규정을 신설하였다. 동시에 특정한 경우에 운전자의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 자동차를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불법주차에 대한 벌금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제4부: 제4부는 테러리즘 방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테러혐의자에 대한 기소 전 구속기간을 최장 28일에서 14일로 감축하였다. 그러나 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장 28일까지 구속할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합리적 의심 없는(without reasonable suspicion) 정지 및 수색권(stop and search)을 보다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5부: 제5부에서는 특히 1997 경찰법(the Police Act 1997) 제5부를 개정하였는데 형사기록부서(CRB) 운용과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수형생활을 마치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제6부: 제6부는 2000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과 자료보호법 1998(the Data Protection Act 1998)을 개정한 부분이다. 즉, 공공기관에 의한 자료의 재사용이 일정 제한 하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른바 정보감독관(Information Commissioner)의 임명과 임기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주무장관의 역할의 변경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제7부: 제7부에서는 특히 인신매매에 관한 범죄에 대한 개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 즉, 현재의 인신매매 범죄(2003 성범죄법에서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영국 안으로, 또 영국 안에서 그리고 영국 밖으로의 인신매매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더불어서 영국 국민이 성적매매 그 밖의 노동착취(그 밖이 착취 포함) 등의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행할 경우, 그것이 어디서 발생했건, 또 어디서 발생하기를 의도했건, 또한 인신매매에 대한 조력행위가 어디에서 발생했건 상관 없이 모두 범죄가 되도록 하였다.

공공정책

■ Water Industry (Financial Assistance) Act 2012 CHAPTER 8: 01/05/2012

• 수자원 산업법 (재정보조)

동 법은 1991 수자원 산업법을 개정한 것으로서 기존 법에 두 개의 장을 추가 신설한 것이다. 동 법은 주무부처 장관으로 하여금 상하수 사업자 및 관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수자원 공급자에 대한 재정보조를 할 수 있게끔 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하수의 인프라 건설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주무부처 장관의 권한 하에 재정보조를 해줄 수 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동 법은 오로지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역에서 상하수와 관계된 사업에만 적용된다는 지역적 한계가 있다.

■ Scotland Act 2012 CHAPTER 11: 01/05/2012

• 2012 스코틀랜드법

동 법은 스코틀랜드에 대한 점진적인 자치권 이양협정(devolution settlement)에 관한 규정을 다소간 수정하고 이 문제에 관련한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동 법은 2010년에 발행된 연립정부 하의 Calman 위원회(Calman Commission)에서 채택된 제안을 따르고 있다.

동 법은 동시에 1998 스코틀랜드법에 대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개정을 하고 있다. 이는 자치권 이양을 보다 효율적으로 완결하기 위함이다.

헌법, 국방, 국가안보, 재정, 경제정책, 외교, 사회보장 등을 제외한 분야에서 현재 스코틀랜드의 자치권이 인정되고 있다. 동 법은 일부 행정적 기능으로서 스코틀랜드 의회선거 관리에 관한 임무를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스코틀랜드 행정장관 소관으로 이관하고 있다. 그 밖에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와 그 밖의 선거를 통합관리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The Wireless Telegraphy (Licence Charges) (Amendment) Regulations 2012 No. 1075: 03/05/2012

• 무선전신관리 시행규칙

동 규칙은 2011 무선전신 관리 시행규칙(이하 2011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항공용 지상통신과 관련하여 허가된 항공용 통신국(Aeronautical Station)에 수수료 부가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항공용 지상통신국(Aeronautical Ground Station)의 허가를 받은 곳에 대한 수수료 부가조항을 삭제하였다. 항공기를 통한 이동통신의 경우 허가받은 곳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였다.

동 규칙은 또한 방송부분과 관련하여 방송서비스 기관에 부과하는 수수료 부분을 감액 조정하였다. 예를 들면, BBC와 Independent Television Network에 대한 수수료 부분을 감액하였다.

교육정책

■ The Assembly Learning Grants and Loans (Higher Education) (Wales) (No.2) (Amendment) (No.2) Regulations 2012 No. 1156 (W.139) : 18/05/2012

• 장학지원금 규칙 (개정)

2011 장학지원금 규칙 (이하 '주요규칙')은 웨일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재정적 보조에 관한 규칙이며 그 대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고등교육기관의 학습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이 해당된다. 동 규칙은 2011 규칙, 즉 '주요규칙'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동 규칙은 '주요규칙'상에 규정되어 있는 '학습과정' 목록에 몇 가지를 새롭게 신설하였는데 그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이른바 '원거리학습과정(distance learning course)'이라는 것으로서 이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full time course이다. 그리고 동 규칙에서 말하는 '해당하는 수형자(eligible prisoner)'라는 의미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고등교육기관의 학습과정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수형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수형자'는 동시에 소년범 수용시설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영국 내에서 자유형(sentence of imprisonment)에 처해진 자를 말한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동 규칙 제4항은 '해당하는 수형자'에게만 '주요규칙'상의 재정적 원조, 즉 2012년 9월부터 시작되는 학습과정에서의 혜택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 규칙 제6항은 '해당하는 학생(eligible students)'에 관한 규정으로 '주요규칙'의 관련 부분을 개정한 것인데, 만일 문제의 학생이 특별한 개인적 이유(compelling personal reasons) 때문에 문제의 학습과정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한해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동 규칙의 제9항은 '장애인 학생'에 대한 지원 규정으로서 2012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학습과정에 적용된다고 하였다.

식품정책

■ The Food Additives (England) (Amendment) and the Extraction Solvents in Food (Amendment) (England) Regulations 2012 No. 1155: 23/05/2012

• 식품첨가물 및 식품 추출분 관리규칙 (개정) (잉글랜드)

동 규칙은 2009 식품첨가물 관리규칙(2009 Food Additives (England) Regulation)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유럽연합의 관련 규칙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동 규칙은 2009 관리규칙의 관련 규정에 나와 있는 "허용된 색상(permitted color)", "허용된 감미료(permitted sweetener)", "청결기준(purity criteria)"의 부분을 EU 지침에 231/2012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였다. 더불어서 식품 추출분에 관한 규정도 EU 개정 규칙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였다. 동시에 동 규칙은 이른바 식품기준관리기구(Food Standards Agency)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이 기구는 5년 기간 내의 간격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검사를 하게끔 하였다.

환경정책

■ The Environmental Offences (Fixed Penalties) (Miscellaneous Provisions) (Amendment) Regulations 2012 No. 1151: 30/05/2012

- 환경범죄 시행규칙 (기타조항) (개정)

동 규칙은 2007 환경범죄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2007 규칙 제2항2호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오염물질 투기범죄에 대한 벌칙규정을 변경하였다. 즉, 벌금의 액수를 조정하였다. 기존의 75 파운드보다 적지 않고 110 파운드 보다 많지 않았던 액수가 60 파운드 보다 적지 않고 80 파운드 보다 많지 않은 액수로 하향 조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0 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제46항 상의 환경범죄와 관련하여 관련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최저 60 파운드에서 최저 40파운드로 하향 조정하였다.

— 프랑스 —

건설 / 교통

■ Décret n° 2012-3 du 3 janvier 2012 portant diverses mesures de sécurité routière

- 도로안전조치를 규정하는 2012년 1월 3일제2012-3호 데크레

본 데크레의 목적은 도로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다. 도로의 안전과 위험한 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11일 도로안전에 관한 상호 부처 위원회(CISR)는 과속과 음주운전 방지에 대하여 그들의 활동을 집결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본 데크레는 이러한 결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주요한 행정 조치를 이행하고 2011년 3월 14일 국내 안전의 향상을 위한 지침 및 프로그램 법률에 의한 도로 안전에 관련된 여러 규정들을 고려한 도로법의 시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주된 시행 내용은 첫째, 운전면허에 대한 1,500유로 벌금이 처해지는 면허 정지와 6점 감점벌로서, “레이더 경보기”의 소지, 운송, 이용을 금지한다. 둘째, 운전도중 핸드폰 이용(35 ~ 135유로의 벌금과 2 ~ 3 감점벌), 텔레비전 보기(135 ~ 1,500유로의 벌금 및 2 ~ 3 감점벌) 그리고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 번호판의 소지(68 ~ 135유로 벌금)에 대하여 형벌을 가중한다. 셋째, 35 ~ 135유로의 긴급 정차선에서의 운행에 대한 벌금형의 신설과 긴급정차선의 통과에 대해서도 같은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의무적 음주 측정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경우, 음주측정에 사용되는 자동차 엔진 시동장치의 결여에 대한 처벌. 다섯째, 최대 125 cm³ 배기량의 2륜 자동차 이용자에 대하여, 자동차 백미러 장치를 갖춘 외관을 갖추어야 하고(그러나 최대 125 cm³ 배기량 또는 최대 15 kW/h 동력의 2륜 ~ 3륜 자동차 운전자에 부여된 자동차의 백미러 장치 부착 의무는 2013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특히 벌점에 관한 내용에서, 행정재판소에게 운전면허에 관한 국가정보 중 운전자 등록부의 개인 자료에 대한 직접적 접근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 Décret n° 2012-70 du 20 janvier 2012 relatif aux gares de voyageurs et aux autres infrastructures de services du réseau ferroviaire

- 철로망 서비스에 관한 승객 터미널과 그 이외 다른 시설에 관한 2012년 1월 20일 제2012-70호 데크레

본 데크레는 철로망 서비스에 관한 승객 터미널과 그 이외 다른 시설에 대한 철도회사의 접근 조건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철도 교통 경쟁이 개시됨으로써, 교통 서비스 담당 권한이 있는 모든 철도 기업은 승객의 터미널과 그 이외의 다른 철로망 서비스 시설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 없는 방법으로 사업에의 접근을 신청할 수 있다. 본 데크레는 이러한 접근은 부과세 징수의 원인이 됨을 밝히고 있다. 본 데크레는 또한 철도 기업의 업무와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및 서비스는 특히 승객의 수용과 정보, 연료 기화 또는 전기 공급 또는 역의 선로에의 접근 가능성과 관련된다. 동시에, SNCF 내에서 서비스 시설, 특히 승객의 터미널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자율 담당 지침을 제정한 SNCF의 “역과 연결”에 관한 조직의 개혁을 규정하고 있다.

■ Décret n° 2012-87 du 25 janvier 2012 relatif aux exonérations de la taxe d'aménagement prévues par l'article L. 331-7 du code de l'urbanisme

- 도시계획법 제L.331-7조가 규정하는 개발세의 면세에 관한 2012년 1월 25일 제2012-87호 데크레

본 데크레의 목적은 개발세와 저밀도에 대한 불입금의 면세를 정하는 데에 있다. 그 내용으로 본 데크레는 도시계획법 제 L.331-7조와 제L.331-41조에 규정된 특정 면세 대상을 정한다. 특히, 2012년 3월 1일부터, 현재 도시계획에 관한 세금과 분담금 전체를 대체하는 개발세 그리고 도시 분할 방지와 공간의 경제적 이용의 조장 목적에서 제정된 저밀도에 대한 불입금(이는 건설계획이 도시계획 지역의 계획도에 관한 점령 계획 중 U 또는 AU 지역에 놓이는 관련 구역 내에 규정된 건설 밀도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임)이다. 면세 대상은 개발세와 저밀도를 위한 불입금(공공업무 또는 공공의 이용을 위한 건설 및 개발이라는 조건 내에서)과 국가적 이익의 활동 내에서 행해지는 건설 및 개발, 그리고 관련 개발 지역에서 행해지는 건설 및 개발에 관한 개발세이다.

■ Décret n° 2012-88 du 25 janvier 2012 pris pour la mise en œuvre de la réforme de la fiscalité de l'aménagement

• 개발에 관한 세제 개혁의 시행을 위한 2012년 1월 25일 제2012-88호 데크레

본 데크레는 개발세 및 저밀도 불입금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발세와 관련하여, 2010년 수정 예산에 관한 2010년 12월 29일 제2010-1658호 법률 제28조는 현재 도시계획에 관한 세금과 분담금 전체를 대체하기 위한 개발세를 신설하였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 건설업자 계획이 도시계획의 지역 계획도에 관한 점령안 중 U 또는 AU 지역에 표시된 관련 구역에 시행되는 건설 밀도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지불되어야 하는 저밀도에 대한 불입금 역시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본 데크레는 개발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11월 30일 이후 도시계획 지역계획도를 승인한 꼬뮌 또는 일부 지역 점령 계획을 마련한 꼬뮌에 개발세 설정 요건에 관한 규정, 건설공사의 정의 그리고 과세 대상 면적 계산 방법을 규정, 다양한 세율을 포함하고 있는 구역에 행해지는 계획의 경우 계산 방법의 확정, 시설 분야 직원의 권한 규칙 및 세금에 관한 감독 규칙과 지역단체에 이월(移越) 방법을 규정, 국가가 매해 지역단체와 기관의 예산을 위한 꼬뮌 상호 협력 공공기관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열거 등. 또한 저밀도 불입금에 관해서는 불입금 계산 방법의 확정, 저밀도에 대한 불입금 실행을 위하여 토지의 시장 가치에 관한 감독 방법의 확정 그리고 지불명령 절차 시행에 관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Décret n° 2012-111 du 27 janvier 2012 relatif à l'obligation de réalisation d'un audit énergétique pour les bâtiments à usage principal d'habitation en copropriété de cinquante lots ou plus et à la réglementation thermique des bâtiments neufs

• 50명 또는 그 이상의 공동소유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감사 실행 의무 및 신축건물의 열에너지 규제에 관한 2012년 1월 27일 제2012-111호 데크레

본 데크레는 50명 또는 그 이상의 공동소유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감사의 실행 방법 및 신축건물의 열에너지 규제에 관한 규정의 수정을 목적으로 한다. 온·냉방 공동 시설이 갖춰져 있고, 건축허가신청서 제출 날짜가 2001년 6월 1일 이전인 50명 또는 그 이상의 공동소유 형태의 주거용 건물은 에너지 감사의 대상이 된다. 본 데크레는 이 감사의 방법을 정하고 있다. 공동소유자 총회의 의사일정에 등록된 공동소유조합에 이 감사의 시행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감사는 건물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킬 목적의 공사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본 데크레는 이러한 감사는 자격을 갖추고 독립적인 자에 의해 실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계획 정비 구역과 이 구역 영역에서 500미터 이하의 거리에 위치한 사회복지 목적 신축 주거 건물에 시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물의 열에너지 규제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고 있다.

■ Décret n° 2012-211 du 14 février 2012 portant création de l'autorité de la qualité de service dans les transports et du haut comité de la qualité de service dans les transports

- 교통서비스의 질에 관한 국가 기관 및 이 기관의 고등위원회 창설에 관한 2012년 2월 14일 제2012-211호 데크레

본 데크레는 교통을 조직하는 기관, 교통업자, 소비자 및 교통이용자 협회, 여행 교통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통 서비스의 질에 관한 당국 및 그 당국의 고등위원회 창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데크레는 환경·도시계획에 관한 상임이사회에 여행객이 공연하게 이용하는 육상·항공·해상 교통 서비스의 질 분야에서 행해지는 서비스 향상을 담당할 교통 서비스 질에 관한 국가 기관을 창설하고 있다. 본 기관은 특히 교통 시간의 엄수, 교통의 일정함, 제시되는 정보의 질 등 서비스 질의 개혁, 교통 이용자의 권리 및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교통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임무를 갖는다. 본 기관의 임무를 행사하기 위하여 기관은 관련 부처의 업무에 의거하고 통계학적 정보지를 출판할 수 있다. 또한 본 데크레는 국회의원, 교통 조직 당국의 성질을 갖는 공공단체의 대표, 관련 교통업자 및 소비자·교통 이용자의 대표 그리고 관련 분야의 능통한 자로 구성된 교통 서비스의 질에 관한 고등위원회를 두고 있다. 교통 서비스 질에 관한 기관에 설치되는 이 고등위원회는 서비스의 질 및 교통업자와 교통 이용자의 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를 표명할 수 있다.

■ Décret n° 2012-238 du 20 février 2012 relatif aux véhicules autorisés à circuler au sein des zones d'actions prioritaires pour l'air

- 대기질을 위하여 주요 지역에서 운행이 허가되는 자동차에 관한 2012년 2월 20일 제2012-238호 데크레

본 데크레는 지역단체, 국가 행정부, 공·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대기질을 위한 주요 지역 내에서의 운행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꼬뮌(시) 또는 100,000명 이상의 거주자가 있는 꼬뮌 단체는 대기오염 방지 실험을 위하여 대기에 대한 최고 오염 물질인 자동차의 접근이 금지되는 주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험 대상이 되는 주요 지역 신청은 해당 지역 도지사에게 하며, 도지사는 지역단체를 담당하는 장관과 도시개발담당 장관에 그 신청을 전달한다. 본 데크레는 이와 같은 실험 기간에 대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특정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역에 자동차 접근 금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데크레는 이러한 특정 자동차의 목록을 정하고 있다. 즉, 일반 공중 이익을 위한 자동차, 국방부 관련 자동차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허가카드가 부착된 자동차는 본 지역에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꼬뮌 등이 이러한 지역의 신청함에 앞서 지역적 환경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Décret n° 2012-615 du 2 mai 2012 relatif à la sécurité, l'autorisation et la déclaration d'utilité publique des canalisations de transport de gaz, d'hydrocarbures et de produits chimiques

- 가스, 탄화수소 및 화학제품 운송에 있어서 운화의 공적이용에 관한 안전, 허가 및 신고에 관한 2012년 5월 2일 제2012-615

본 데크레는 가스, 천연가스, 화학제품 운송을 위한 운화 건설 및 경영에 관한 허가 및 공적이용신고절차의 범위를 정하고, 이러한 공사에 적용될 수 있는 안전, 환경보호 및 감독에 관한 규율 및 에너지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운화에 대한 특별 규칙을 확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가스, 탄화수소, 화학제품 운송을 위한 운화건설을 계획하는 도급업자, '운송업자'로 지명된 이러한 공사의 도급자, 이러한 운화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본 데크레 시행부터 이전의 다양한 데크레에 규정된 천연가스, 탄화수소 및 화학제품을 위한 운화운송에 적용되는 규칙규정들을 환경법의 한 장으로서 간소화 한다. 환경법에 추가되는 새로운 장(章)에, 기존운화 또는 새로운 운화 구간의 허가 절차를 정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 첫째, 이 절차에는 관련 액체제품의 운화운송을 위한 水警(police de l'eau) 분야 규정들을 통합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 국방, 경제 개발 및 환경보호의 필요로서 운화이용을 신청하는 공적이용의 신고절차를 정하고 있다. 셋째, 계획, 건설, 설치, 운행, 경영, 감독, 유지, 임시적 또는 확정적 정지 기간 동안의 운화의 안전, 환경보호 및 운화 감독에 적용되는 일반규칙들을 정하고 있다. 넷째, 에너지 공공서비스 및 에너지 공급 제어로서 가스 운화운송 또는 탄화수소 운화 운송에 적용되는 특별규정을 정하고 있다. 다섯째, 도시개발 제어, 특히 공중이 접근 가능한 기관 또는 운화운송에 인접한 고층건물의 건축에 적용되는 규칙을 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운화에 의한 공적분야 작업을 위한 납부금제도를 정하고 있다.

■ LOI n° 2012-77 du 24 janvier 2012 relative à Voies navigables de France

- 프랑스 항행로에 관한 2012년 1월 24일 제2012-77호 법률

본 법률은 비도로·비항공 화물 부문에 관한 환경 그르넬의 목적들 중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로에 관한 공공 업무조직을 현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본 법률은 수로 교통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리 관리 분야에서 현재 프랑스 항행로 서비스에 더욱 강화된 임무가 부여된 항행로국(Agence nationale des voies navigables)을 창설하고 있다. 이 기관은 국가행정기관이다. 이 항행로국의 주요 임무는 첫째, 항행로의 이용, 보존, 유지, 개량, 확장, 증진 및 다른 교통수단을 보충할 수 있는 수로 교통 개발에 관한 의존 관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수상자원의 다양화된 이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항행로 수리 관리를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특히 늪지 지역의 보호와 생물 지속에 필요한 개발 등, 도시 개발과 영토 정비에 협력하고 홍수를 예방하는 업무 등이 부여되었다. 본 법률은 총 4개의 장, 구체적으로 제1장 국가 항행로국의 임무와 구성에 관하여, 제2장 국가 항행로국 직원에 관련된 규정, 제3장 지방분권, 국유재산 관리, 국내 항행로 경찰에 관한 규정, 제4장 기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LOI n° 2012-375 du 19 mars 2012 relative à l'organisation du service et à l'information des passagers dans les entreprises de transport aérien de passagers et à diverses dispositions dans le domaine des transports
 - 여객항공사에서 서비스 편성과 여객 정보 및 교통분야에서의 다양한 규정에 관한 2012년 3월 19일 제 2012-375호 법률

본 법률은 한편으로는 여객항공사에서 근로자들의 파업 권리에 관한 헌법원칙을, 다른 한편으로 공공질서의 보호에 관한 헌법적 가치의 대상, 특히 승객의 건강 보호 및 안전(공항에서 대기중인 여객)을 그리고 행정경찰의 임무에서 경찰력을 가지고 있는 자의 권한 하에서의 비행장 경영과 비행에 관련된 공항 서비스의 계속 원칙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법률은 특히 사회적 대화를 발전시키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객항공사에서 노사협정 체결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 그리고 파업 이전 늦어도 48시간 전에 여객항공사 고용주에 대하여 파업 가담 노동자 신고에 관한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파업 이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승객에게 정보 전달에 관한 여객항공사에 대한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다.

- LOI n° 2012-376 du 20 mars 2012 relative à la majoration des droits à construire
 - 건축권의 확대에 관한 2012년 3월 20일 제 2012-376호 법률

본 법률은 건축물의 규격, 높이, 토지 수용 및 지면점유율에 관련된 도시 계획도(plans d'occupation des sols : POS)와 지역 도시계획도(plans locaux d'urbanisme : PLU)의 규정 실행에 의한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30%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도시계획에 관한 서류는 현재 100개의 주택에 건축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에 130 주택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100 m² 주택 면적을 30 m² 확대시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본 법률은 오직 하나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정책 / 행정

- LOI n° 2012-260 du 22 février 2012 portant réforme des ports d'outre-mer relevant de l'Etat et diverses dispositions d'adaptation de la législation au droit de l'Union européenne dans le domaine des transports

- 프랑스 소속 해외영토의 항구 개혁과 교통영역에서의 유럽연합 수준의 법제 채택 규정에 관한 2012년 2월 22일 제2012-260호 법률

본 법률의 대상인 프랑스 소속 해외영토의 항구(port de la Guadeloupe, Fort de France, D grad-des-Cannes, Port-R union) 개혁은 해외영토의 경쟁력을 성장시키고, 그 지역의 지역단체에 대한 해외영토의 기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법률은 항만시설 경영활동과 관련기관의 이전을 제외하고, “주요 중심지의 대규모 해양 항구”를 마련하고 있는 항구 개혁에 관한 2008년 7월 4일 제2008-660호 법률 규정들과 본질적으로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의도는 프랑스에 속한 해외영토의 해양 항구를 현대화 거버넌스를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본 법률은 국가적 이익을 위한 본 법률 대상인 3개의 항구(D grad-des-Cannes, Port R union, Fort-de-France)의 항만시설경영관리는 현재까지 인가를 통한 방법으로 상공회의소에 위임되어 있었지만, 본 법률 이후부터는 항구의 전적인 책임에 속함을 규정한다. 또한 항구의 임무 역시 권한, 정비 및 개발 기능에 대해 수정하고 있다. 그리고 본 항구와 연결되는 육상 교통에 관련된 책임 역시 강화됨을 규정하고 있다.

- LOI n° 2012-273 du 28 février 2012 fixant au 11 novembre la commémoration de tous les morts pour la France

- 프랑스를 위하여 숨진 모든 자를 위한 추모식을 11월 11로 정하는 2012년 2월 28일 제2012-273호 법률

1922년 10월 24일 법률은 승리와 평화의 추모식 일을 11월 11일로 정하고 있다. 이 날은 프랑스가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용사들 및 다른 모든 전사한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날이다. 올해 90회인 개선문 하에서의 의식은 해가 감에 따라 무명 군인들의 희생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의식이 되고 있다(1918년 11월 11일 휴전기념일 이후 전장에서 숨진 군인 전체, 제2차 대전에서의 희생, 1978년 Kolwezi에 전개된 군대, 1982년 Liban에 연합군으로 임시 군대의 병사 및 낙하산 부대대원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고 있다). 2011년, 약 10,000명의 프랑스 군인은 아프리카,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유럽 등에서 대외 작전에 참여하였다. 이 대외 작전에서 전사한 군인들에 대한 특별 경의를 표시하기 위한 의지는 군인과 군인 단체의 목소리에 의하여, 그러한 작전으로 전사한 군인의 가족 및 측근들의 적극적 또는 묵시적인 요청에 의해, 그리고 현역 군인들의 기대에 의하여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본 법률은 프랑스가 정한 목적 내에서 분쟁 중 목숨을 잃어버린 모든 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11월 11일 국가 기념일은 20세기의 2개의 세계대전시에 숨진 전사들의 희생과 같은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하여 계속 행해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 LOI n° 2012-281 du 29 février 2012 visant à assouplir les règles relatives à la refonte de la carte intercommunale

- 꼬뮌그룹 구역도(cartre intercommunale) 개혁에 관한 규율을 완화하기 위한 2012년 2월 29일 제2012-281호 법률

2010년 12월 지역단체 개혁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이행에 있어서, 꼬뮌그룹협력에 관한 도(道) 계획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나타났기 때문에, 본 법률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지역단체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산더미 같은 지역행정구조에 답하는 데에 있는데, 프랑스의 지역단체개혁의 동기는 꼬뮌그룹의 발전, 도시와 도시 주변이라는 사실의 출현, 유럽 및 국제 수준의 도시들 간의 경쟁, 공공정책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있었다. 따라서 지역집단(꼬뮌 및 꼬뮌그룹)과 관련된 본 법률은 꼬뮌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권한 조항의 유지, 도시와 꼬뮌그룹 투표의 통합, 꼬뮌그룹 구역도의 목표 설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꼬뮌그룹 구역도의 작업에 관한 도(道)계획의 최종시한(2012년 3월 15일)을 연장하고 있다. 특히 꼬뮌그룹 구역도 개혁에 관한 조항은 미래를 위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5말에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꼬뮌들간의 이해충돌 등으로 인한 계획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꼬뮌협회창설을 제안하고 있다.

■ LOI n° 2012-301 du 5 mars 2012 relative au suivi des enfants en danger par la transmission des informations

- 위험상태에 있는 어린이에 대하여 정보전달에 의한 추적에 관한 2012년 3월 5일 제2012-301호 법률

프랑스는 2007년 3월 5일 법률에 의하여 위급한 정보 접수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위주로 강화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사회복지국은 위험한 상태로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러한 어린이에 대한 교육적 조치 및 기타 사회적 조사의 대상이 되는 가정)이 새로운 주소를 남겨두지 않고 이사를 하는 경우가 규칙적으로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아동 보호에 관한 프랑스의 시스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법률은 이와 같은 위험한 상태의 아동에 대한 자료에 대하여 상호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전달 방법으로 본 법률은 프랑스 사회복지장 기구를 이용한다. 즉, 사회조사 대상이 되는 위와 같은 가정 대부분은 사회분담금, 특히 사회복지장 가입으로 인한 가족보조금 등을 받고 있으며, 이들이 이사하는 경우 이와 같은 사회복지금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거주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장기구 등에 가입(주소이전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법률은 아동 보호의 계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가정이 새롭게 정착하도록 하고 아동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구 등에 이들 가정의 새로운 주소를 받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본 법률에 따라 사회활동과 가족법 제L.226-3조가 개정된다.

■ LOI n° 2012-339 du 9 mars 2012 modifiant la loi n° 99-418 du 26 mai 1999 créant le Conseil national des communes « Compagnon de la Libération »

- “해방훈장보유자(Compagnon de la Libération)” 꼬뮌 국가위원회 창설에 관한 1999년 5월 26일 제99-418호 법률을 개정하는 2012년 3월 9일 제2012-339호 법률

본 법률은 Legion d'Honneur 다음으로 2번째 국가 훈장인 Ordre de la Libération 위원회 다음으로 구성된 조직인 “해방훈장보유자(Compagnon de la Libération)” 꼬뮌 국가위원회 창설에 관한 1999년 5월 26일 법률 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Ordre de la Libération에 창설된 Ordre de la Libération 기념관은 Ordre de la Libération 전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해방훈장보유자(Compagnon de la Libération)에 관한 공공 기관에 통합시킨다. 둘째, 해방훈장보유자(Compagnon de la Libération) 꼬뮌 국가위원회에게 계약직원의 직접적 채용 권한을 인정한다. 셋째, 3개의 새로운 재정출처를 도입한다(기금 및 기록의 이용으로 인한 일반 수익, 사무실 또는 공간의 임대와 관련된 소득, 기금 투자). 넷째, Ordre de la Libération 위원회와 해방훈장보유자(Compagnon de la Libération) 꼬뮌 국가위원회 간의 완만한 전개를 규정하고 있다.

■ LOI n° 2012-387 du 22 mars 2012 relative à la simplification du droit et à l'allégement des démarches administratives

- 법의 간소화 및 행정 절차의 완화에 관한 2012년 3월 22일 제2012-387호 법률

본 법률은 프랑스 국가의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명확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복잡한 표준에 직면해 있는 기업에 원칙적으로 관련된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주식회사 경영자의 위임 제도를 개혁한다. 주식회사 정관에서의 중소기업(PME ;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경영자는 주식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둘째, 비상장 중소기업(PME non cotées)에서의 근로자와 수임자에게 무상주식 배부의 기회를 확대하고 그 요건을 완화한다. 셋째, 노동법에서 정한 유효성 한계와 조화시킨다. 넷째, 새로운 노동계약의 실행 없이 최단기의 노동 시간의 수를 조정한다. 즉, 1주일에 최대 노동시간의 분배 설정과 단체 협정으로 규정된 년 단위 이상으로 노동계약의 갱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급료 명세서의 간소화에 관하여 규정한다.

■ Décret n° 2012-59 du 18 janvier 2012 relatif à la délivrance au public de certaines informations cadastrales

• 국민에게 토지대장에 관한 정보 교부에 관한 2012년 1월 18일 제2012-59호 데크레

본 데크레의 목적은 국민에게 토지대장에 관한 정보 전달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데크레는 토지대장 정보의 열람신청에 관한 형식 및 수리(受理)가능성 요건을 정하며, 정보 교부 방법과 정보 열람에 관한 권한 업무를 규정한다. 토지대장 정보 열람신청은 세무행정 또는 꼬뮌(市의)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밝히고, 이용자가 정보를 신청한 경우, 이러한 정보들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열람된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대장 정보에 일시적 접근을 규정한 입법자는 본 데크레에 동일 이용자에게 유효화 될 수 있는 신청 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한은 자기 소유 재산에 관한 정보 열람 신청을 한 자 또는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Décret n° 2012-188 du 7 février 2012 relatif à la tenue de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à l'organisation d'opérations de vote hors de France

• 프랑스 영역 외에서의 선거에 관한 영사 선거인 명부 관리와 선거관리조직에 관한 2012년 2월 7일 제 2012-188호 데크레

본 데크레는 선거인, 선거 후보자, 프랑스 외에 주재하는 프랑스 국민이 선출한 하원의원, 프랑스 외에 주재하는 프랑스 국민을 대표하는 상원의원, 외국의 프랑스 의회에 선출된 의원,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프랑스 영역 외에서의 선거에 관한 영사 선거인 명부의 관리와 선거관리조직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데크레는 대사관과 명부 작성을 담당하는 영사관의 리스트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 구체화는 프랑스의 외교망에 관한 최근 개혁을 고려하여, 다른 영사 선거구를 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조직을 담당하는 대사관과 영사관의 리스트 또한 변경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트는 2012년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 선거와 프랑스 영역 외에 주재하는 프랑스 국민이 선출하는 11명의 하원의원 선거에 한정된다. 따라서 로마와 Saint-Si ge 2 대사관의 지리적 인접성 및 관련 선거인 수가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로마 주재 대사관만이 Saint-Si ge 주재 대사관을 대리하여 선거를 조직하는 권한을 갖는다.

■ Décret n° 2012-221 du 16 février 2012 instituant un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à la lutte contre le racisme et l'antisémitisme

- 인종차별 및 반유대인주의 금지에 관한 상호정부부처 대표를 임명하는 2012년 2월 16일 제2012-221호 데크레

본 데크레는 인종차별주의 및 반유대인주의 금지 분야의 담당 행정부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그 목적은 이 분야 상호정부부처의 대표를 구성하기 위함이다. 프랑스의 인종차별주의 및 반유대인주의 금지에 관한 정책 방향은 인종차별과 반유대인주의 금지 상호정부부처 위원회(CILRA ; comit interministriel de lutte contre le racisme et l'antisémitisme)에서 결정하고 있다. 본 법률안은 내무부 장관에 대하여, CILRA의 사무총장을 담당하는 인종차별주의 및 반유대인주의 금지에 관한 상호정부부처의 대표로서 임명하고 있다. 본 상호정부부처 대표는 CILRA가 결정하는 정책적 방향 내에서 인종차별주의 및 반유대인주의 금지 활동에 관한 국가적 계획(PNACRA) 마련을 통괄한다. 대표는 이 계획을 실현하며, 또한 유럽·국제적 계획에 대한 외무부장관이 추진하는 활동에 협력한다.

■ Décret n° 2012-513 du 18 avril 2012 relatif à la communication d'informations à l'Etat et aux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sur les infrastructures et réseaux établis sur leur territoire

- 지역단체 관할에 설치된 전자통신 시설 및 통신망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역단체간의 정보전달에 관한 2012년 4월 18일 제2012-513호 데크레

본 데크레는 지역단체, 지역단체연합, 관련 국가서비스국, 전자통신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자통신 시설 및 통신망에 관한 정보, 통신업자가 전달하는 정보형태, 제3자에 대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국가, 지역단체 및 그 단체연합은 전자통신업자 및 전자통신 시설 관리업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지역정비에 협력하는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방법을 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통신업자가 정보의 크기 및 구조를 존중하여야 하는 요구를 확정하고 있다.

식품 / 보건 / 복지

- LOI n° 2012-157 du 1er février 2012 relative à l'exercice des professions de médecin, chirurgien-dentiste, pharmacien et sage-femme pour les professionnels titulaires d'un diplôme obtenu dans un Etat non membre de l'Union européenne

- 유럽연합 비회원국에서 취득한 학위소지자의 전문직에 대한 의사·치과의·약사·조산부의 직업 행위에 관한 2012년 2월 1일 제2012-157호 법률

본 법률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공공의료기관과 비유럽연합의 학위를 소지한 실무가(의사, 치과의, 조산부, 약사)가 일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기능 지속을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007년 사회보장재정에 관한 2006년 12월 21일 제2006-1640호 법률 제83조는 비유럽연합국의 학위소지자의 직업적 행위에 관한 허가에 있어서, 본 학위소지자가 관련 지식에 관한 검증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본 법률 대상이 되는 학위소지자는 프랑스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의 직업적 행위를 할 수 없는 날짜를 확정하고 있다(그 날짜는 2011년 12월 31일 이다). 이에 따라 본 법률은 새로운 관련 지식 검증시험(그 방법은 데크레에 의해 확정될 것임)이 도입되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본 법률의 대상이 되는 학위소지자들의 직업적 행위 허가에 관한 임시 규정들을 연장하고 있다.

- LOI n° 2012-300 du 5 mars 2012 relative aux recherches impliquant la personne humaine

- 인간이 관련된 연구에 관한 2012년 3월 5일 제2012-300호 법률

인간이 연류된 연구에 관한 본 법률은 프랑스의 인간에 대한 연구 분야를 재편성하고 있다. 즉, 프랑스는 현재 인간이 받게 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는 인류 관련 연구 분야를 하나의 영역으로 재편성하는 것이다. 본 법률 시행 이전에는 구 Huriet et S rusclat 법률(Loi Huriet-S rusclat de 1988 relative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dans la recherche biomédicale) 분야를 포함한 생물의학연구, 2004년 공중보건법률로 시행된 비중대 위험 및 제약 상태만을 포함하는 연구인 “치료 기록 평가 목적” 연구, 그리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관찰에 기초한 연구로 분류되어 있던 인류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본 법률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따른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인간이 연류된 연구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무공해 제품 총체에 대한 신고와 인간에게서 추출되는 자료에 대한 관련자 정보 등에 관한 보호위원회의 의견은 2004년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용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법률은 연구 관련 부처에 대한 신고 절차를 단순화하고, 인류보호위원회가 결부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다.

- LOI n° 2012-355 du 14 mars 2012 relative à la gouvernance de la sécurité sociale et à la mutualité
 - 사회보장 거버넌스와 의료보험공제(mutualité)에 관한 2012년 3월 14일 제2012-355호 법률

본 법률은 3 단계의 사회보장시스템의 거버넌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2008년부터 마련된 의료보험과 노후보험에 관한 2개의 지역금고의 합병의 결과인, Alsace-Moselle의 퇴직연금보험과 근로보건에 관한 지역금고(caisse régionale d'assurance retraite et de la santé au travail ; CARSAT)를 창설하는 것이다. 법률은 제도 합병에 관한 지역적 규정 역시 간소화하고 있다. 둘째, 자유직업종사자 의료보험(régime social des indépendants)의 국가 금고에 관한 행정위원회 구성을 정정하고, 행정위원의 위임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셋째, 상호공제조합과 공권력 간 대화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료보험공제 고등위원회를 현대화하고 상호공제조합 협력 지역위원회는 폐지된다.

- Décret n° 2012-128 du 30 janvier 2012 relatif à l'étiquetage des denrées alimentaires issues de filières qualifiées « sans organismes génétiquement modifiés »
 - “비변형 유전자 조직” 과정에 의한 식료품 분류에 관한 2012년 1월 30일 제2012-128호 테크레

본 테크레는 “비변형 유전자 조직” 과정에 의한 식료품의 라벨부착에 관한 임의적 규율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 내용으로, 본 테크레가 정하는 다음 3부류의 구성 성분은 “sans OGM (비변형 유전자 조직)” 형태 기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식물의 구성 성분(OGM 0.1% 이하를 포함하고 있음), 동물 구성 성분(동물이 OGM의 0.1% 이하 또는 OGM의 0.9%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에 제공됨에 따른 별도의 기재), 그리고 양봉 구성 성분(변형 유전자 경작지로부터 3k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한 꿀벌통에서 채취된 경우). 또한 본 테크레는 식품 구성 성분 목록에 나타내는 표시이외에도, 식료품의 95% 이상을 나타내는 식품의 모든 구성 성분에 대한 “sans OGM” 기재를 “정면(시선을 집중 시킬 수 있는 포장의 주요 영역)”에 부착 가능성 역시 규정하고 있다.

문화 / 예술 / 체육

■ Décret n° 2012-54 du 17 janvier 2012 relatif aux aides à la création artistique multimédia et numérique

- 멀티미디어 및 디지털 예술창작 원조에 관한 2012년 1월 17일 제2012-54호 데크레

본 데크레는 멀티미디어 및 디지털 예술의 창작에 대한 원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데크레의 주 내용은 2002년에 설립되고 국립영화센터(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가 관리하는 "DICR AM"의 멀티미디어 예술창작에 대한 원조정책을 확고히 하고 현대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조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저작물의 재정적 문제에 대하여 인정된다. 특히 저작물의 개발, 생산, 배급에 관한 원조를 중심으로 한다. 또한 예술 창작 계획에서의 재정 금액의 필요적 대상과 강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국립영화센터의 장(長)의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는 전문가 협회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 LOI n° 2012-158 du 1er février 2012 visant à renforcer l'éthique du sport et les droits des sportifs

- 스포츠 윤리와 스포츠 선수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2012년 2월 1일 제2012-158호 법률

스포츠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자칭 스포츠 대국이라 표명하는 프랑스는 빠르게 변화하는 스포츠 상황(전문화, 하이퍼 미디어화, 스포츠 위생의 중시, 경기 정책 등)에 적응하여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분석으로 스포츠 분야(아마추어 및 프로 스포츠 모두)에 수많은 입법적 채택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본 법률은 스포츠 활동에서의 절대적인 직업윤리에 더욱 강하게 호소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하원 및 상원의 토론 후 채택되었다. 본 법률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포츠 가치의 존중이라는 표제의 제1장과 스포츠 개발이라는 표제의 제2장의 내용은 승인된 연맹의 활동은 스포츠 윤리와 지속적 발전에 관한 원칙을 존중하여 행사할 것을 강요하고(특히 본 연맹들은 도덕적 행동과 공정성 존중을 기반으로 구성된 규칙의 공표 및 경기 참여 요건을 정함), 스포츠 프로 리그와 관리감독기구의 권한 강화를 인정하며, 이해관계 대립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포츠 분야에서 겸직금지(스포츠 클럽의 소유와 다른 클럽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제3편은 스포츠 선수의 교육 및 권리라는 표제로서, 스포츠법 제L.211-4조와 제211-5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센터 승인 장치가 스포츠와 프로라는 이중 계획의 존중을 보장하고 있음을 규정한다. 이 이중 계획은 교육연수계약의 수혜자인 스포츠 청소년의 경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히 학교 교육과 운동연습을 위하여 양립할 수 있는 시간의 조정 등을 필요적으로 정하고 있다. 제4편은 스포츠 선수의 건강 보호와 약물복용방지이다. 그 내용은 스포츠 건강과 스포츠법을 세계약물복용방지법 원칙과의 일치시키고, 현 상황에 가장 적절한 약물복용방지에 관한 규정들의 채택, 그리고 수많은 분쟁의 대상인 약물 분야에서의 처벌 절차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프랑스 약물복용방지국의 구조에 관한 중요한 재정비를 규정하고 있다. 제5편은 기타규정이다.

■ LOI n° 2012-287 du 1er mars 2012 relative à l'exploitation numérique des livres indisponibles du xxe siècle

• 20세기 절판된 서적의 디지털화에 관한 2012년 3월 1일 제2012-287호 법률

본 법률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어 있고, 대중들의 접근이 어려운 20세기에 출판된 서적을 디지털화하여 상품화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화는 현 지적소유권법에 따라 저작자에 의하여 재탄생될 수 있는 영역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화는 디지털화권의 소지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 프랑스 지적소유권법으로는 불가능하였다. 즉, 편집자(출판사)의 디지털화에 관련된 규정들은 출판계약상으로 20세기 말에서부터 관련되고, 상대적으로 오래된 서적에 대한 디지털화권은 저작자뿐만 아니라 편집자에게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절판된 서적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법적·경제적 해결을 찾기 위하여, 프랑스는 저작권의 기본적인 메카니즘을 대체하기 위하여, 지적소유권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내용은 저작권 소유의 문제인 저작자와 편집자(출판사)를 조정하고 합의에 대한 방법으로, 저작권료징수단체(une société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SPRD))에 의한 절판된 서적의 디지털화권에 관한 집단관리제도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디지털서적에 대한 풍부한 합법적 배급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작물의 중시와 이용에 있어서 저작자와 편집자에게 정당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司法 / 경찰

■ LOI n° 2012-304 du 6 mars 2012 relative à l'établissement d'un contrôle des armes moderne, simplifié et préventif

• 현대화·단순화·예방적 무기 감독 기관에 관한 2012년 3월 6일 제2012-304호 법률

프랑스 국토에서 총기의 취득과 소지 관련 규정에 관한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본 법률은 이러한 필요성에 답하기 위한 것이다. 즉, 무기 관리·감독에 관한 사법 분야는 1939년 4월 18일 데크레-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었으며, 이 법률은 계속되는 부분적 개정으로 외관을 제외하고 다소 미완성적인 부분으로 실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법률은 총기에 관한 관리·감독 제도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은 첫째, 총기 관련 법률 분야를 단순화하고, 둘째, 총기의 실질적 위험성을 고려한 총기 취득 및 소지 요건을 마련, 셋째, 무기 추적에 관한 시스템 마련, 넷째 총기소지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 마지막으로, 총기를 취득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일시적이거나 확정적으로 배제시킬 목적의 억제 및 예방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 LOI n° 2012-346 du 12 mars 2012 relative aux mesures conservatoires en matière de procédures de sauvegarde, de redressement judiciaire ou de liquidation judiciaire et aux biens qui en font l'objet
 - 구제(sauvegarde)절차, 법정관리(redressement judiciaire), 법정청산(liquidation judiciaire) 분야에서의 보존조치와 이와 관련 物에 관한 2012년 3월 12일 제2012-346호 법률

본 법률은 최근 현실(Petroplus 기업의 어려움 또는 Sodim dical 사건)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무능한 회사의 자산을 유용하는 다국적 기업의 부당한 태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상법을 개정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상법 제651-4조에 규정된 특별보존조치를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절차의 확대와 불법행위소권으로의 이전을 규정한다. 둘째, 부족한 자산에 대한 책임소권이 법정청산선고 이후에 개입되는 경우, 법정관리 중 보존조치의 유지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보존조치의 대상이 되는 재산(物)의 두 목록에 관한 법정양도를 인정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본 법률 공포날로부터 구제절차, 법정관리절차, 법정청산절차가 실행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LOI n° 2012-409 du 27 mars 2012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exécution des peines
 - 형 집행에 관한 2012년 3월 27일 제2012-409호 프로그램 법률

본 법률은 2013-2017년 형집행 정책의 목적을 정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그 목적의 내용은 집행 대기 중인 수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형집행 유효성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유죄선고를 받은 자의 프로필을 잘 평가하기 위한 장치, 범죄인 관리에 관한 혁신적 실무의 개발, 사회편입 및 보호관찰에 관한 형무 업무의 재편성 및 강화로 인한 재범에 대한 예방 대책을 강화 등을 규정한다. 또한 법원이 선고한 조치의 이행 기간을 5일 이내로 경감하여, 범죄 청소년 책임을 개선시키고자 하고 있다. 본 법률은 제1장 형집행 분야의 프로그램 규정, 제2장 형집행 개선에 관한 규정, 제3장 몰수형 집행에 관한 규정 마지막으로 제4장 기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수산축업

■ Décret n° 2012-49 du 16 janvier 2012 relatif aux conditions de reconnaissance, d'évaluation et d'indemnisation des calamités agricoles

- 농업재해의 인식, 평가, 보상 조건에 관한 2012년 1월 16일 제2012-49호 데크레

본 데크레의 목적은 농업재해의 인식, 평가, 보상 조건을 정하는 것이다. 농업에서의 위기관리에 관한 국가기금은 농부의 활동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재해현상의 직접적 결과인(특히 중요한 것임에도 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물질적 손해 분야에 귀속되어 있다. 농업 재해의 특징의 인식은 국가농업위기관리 위원회의 의견 이후 농산부 장관의 권한에 속한다. 농업 재해에 의한 손해는 생산량 기준과 생산 전체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 도(道)의 기준표 수준에서 평가된다. 이에 대한 기금의 원조는 생산 손해가 최대 30%의 물질적 손해를 및 경작의 총생산 가치의 13%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율에 달하는 경우에만 부여될 수 있다. 또한 재해절차는 농업재해에 관한 인식을 위하여, 꼬된 내에 설치된 농업 경작(공공단체의 경작을 제외하고)에 대하여 재해 절차가 개시된다.

■ Décret n° 2012-81 du 23 janvier 2012 fixant les conditions d'intervention de la première section du Fonds national de gestion des risques en agriculture

- 농업 위기관리 국가기금의 제 1 부문 개입 조건을 정하는 2012년 1월 23일 제2012-81호 데크레

본 데크레는 농업 위기관리 국가 기금의 제 1 부문 개입 방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농산부 장관이 승인한 위생·환경적 위험에 대한 상호부조 기금을 고려하여, 농업 위기 관리 국가 기금의 제1 부문의 개입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상호부조기금은 기관의 행정경비 일부 및 위생 또는 환경 사건을 원인으로 농부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일부를 부담한다. 본 데크레는 상호부조기금 지급 신청 형식과 내용을 정하고, 농업 위기관리국가위원회의 의견 이후, 농산부 장관이 정하는 개입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호부조기금의 공공 재정 기여는 국채 및 유럽 채권을 유동화시킬 수 있으며, 본 데크레는 유럽규칙의 요구에 따른, 기금의 보다 더 유용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감독기구를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 Décret n° 2012-215 du 14 février 2012 relatif à la mise en œuvre du régime d'aides spécifiques pour le secteur des fruits et légumes dans le cadre de la politique agricole commune

- 꼬핀(市)의 농업 정책 중 과일·채소 분야를 위한 특별원조제도의 시행에 관한 2012년 2월 14일 제2012-215호 데크레

본 데크레는 과일·채소 생산자, 과일·채소 생산자 단체, 과일·채소 생산자 단체 연합을 대상으로 하고, 과일·채소 및 변형 과일·채소 분야 관련된 위원회의 참사원의 규칙 제1234/2007호의 실행 방법에 관한 2011년 6월 7일 위원회의 규칙실행 제543/2011호의 공표 이후 농업·해양어업법의 구체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데크레는 과일·채소 분야 참사원 규칙 제2200/96, 제2201/96, 제1182/2007호 규칙의 시행방법을 정하는 2007년 12월 21일 위원회의 규칙 제1580/2007호에 준거한 생산자 단체에 관한 농업·해양법의 규정들을 실행한다(이 규칙(제1580/2007)은 과일·채소 및 변형 과일·채소 분야에 관련된 참사원 규칙 제1234/2007호 실행 방법을 정한 2011년 6월 7일 위원회의 규칙실행 543/2011호로 대체되었다). 본 데크레는 생산자 단체 연합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실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 단체가 늦어도 8월 1일에 종료되는 첫 준거기간을 준수하면서 유통되는 상품 가치 계산을 고려하여야 하는 준거기간을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자 단체의 회원이 다른 도(道)에서 경작하는 경우, 정책방향프로그램에 관한 도시사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 규정은 FranceAgriMer(농·수산물에 관한 국가기관 ; tablissement national des produits de l'agriculture et de la mer)의 이사장에게 이미 전달된 정책프로그램 전체에 관한 지령을 무효화하고 있다.

■ Décret n° 2012-512 du 19 avril 2012 relatif à l'organisation économique dans le secteur du lait de vache

- (소)우유 분야의 경제기구에 관한 2012년 4월 19일 제2012-512호 데크레

본 데크레는 관할당국이 우유생산업자단체 및 그 단체연합을 승인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즉, 우유생산업자단체 및 그 단체연합이 프랑스 법규(신청 상품의 적응, 수수조건 명세서의 존중, 관련 산업 상대방과의 계약 관계 수립, 매매계약 등 거래의 투명성, 제품의 제조이력, 친환경 생산방법의 증진 등) 및 유럽 법규가 규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수단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유 및 유제품 분야 계약관계와 관련된 지침 1234/2007호 규칙(유럽공동체)을 개정한 2012년 3월 14일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261/2012호 규칙(유럽연합)에 의해 개정된 농업분야 시장의 공동기구에 관한 2007년 10월 22일 지침 제1234/2007호 규칙(유럽공동체) 제126조의 4에 따라, 생산업자단체 회원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단체는 2012년 10월 3일부터 우유 매수인과 함께 계약 요소들을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 / 에너지

■ Décret n° 2012-13 du 4 janvier 2012 relatif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ménagers issus de produits chimiques pouvant présenter un risque significatif pour la santé et l'environnement

- 건강과 환경에 대하여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화학제품으로부터 야기되는 가정용폐기물의 예방 조치와 관리에 관한 2012년 1월 4일 제2012-13호 데크레

본 데크레는 환경그르넬의 250 권고의 시행으로, 건강과 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화학제품에서 발생하는 가정용 폐기물(흔히 DDS(d chets diffus sp cifiques)라 한다)의 예방 조치와 관리를 위하여 생산자의 확대된 책임의 수행 절차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본 데크레는 생산자의 확대된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특별 가정 폐기물의 관리는 이제부터 이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화학제품을 관련 시장에 놓는 자(생산자 및 판매자)에 의해 보장될 것을 밝히고 있다. 이 관리는 이러한 폐기물의 수집, 수거 및 처리를 하는 것이다. 그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러한 상품 시장에서의 생산자 및 판매자는 장관의 령에 의해 승인된 개별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승인된 공동기관에 대하여 폐기물 관련 관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실무 절차에서, 이러한 상품 시장에서의 대다수 생산자 및 판매자는 국가가 승인한 환경기구(co-organismes)라 불리는 하나 또는 다수의 공동기관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환경기구의 승인에 부합되는 계약 조건 명세서에 규정될 보조 기준표에 따라 이 환경기구가 제시하는 요금 지급에 따른 방법으로, 위 폐기물 수거는 시(市)의 폐기물 하차장 수준으로 시행된다. 자발적 협조라는 점에서 수거에 관한 보충적인 장치는 프랑스 영토 내에서 적어도 6개월의 빈도수에 따라, 성실한 수거 작용을 포함한 승인된 환경기구에 의한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중합폐기물” 처리 절차 범위는 환경법에서의 위험한 가정용 폐기물을 포함하지만, 또한 자연 환경(물, 공기, 토양의 오염, 또는 동물 또는 식물에 심각한 침해)에 현저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비위험 가정용 폐기물 역시 포함하고 있다.

■ Décret n° 2012-21 du 6 janvier 2012 relatif à certaines dérogations aux mesures de protection de la faune et de la flore

- 동물상 및 식물상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에 관한 2012년 1월 6일 제2012-21호 데크레

본 데크레는 동물 및 식물 보호에 적용되는 규칙들의 개정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비애완동물종 및 비재배 식물종은 자연 또는 생물학적 자산 또는 과학적 이익의 보호를 보장하는 목적의 보호조치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 데크레는 한편으로는 보호 조치에 대하여 부여된 특례 규칙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 환경에 이러한 중을 도입시키는 권한에 관한 제도를 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화 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감독 또는 감시 하에 있거나 10개 이상의 도(道)에서 활동하는 법인이 오직 과학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에 관한 특례 분야에서 정부부처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기관의 진행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보통법 및 국립공원에 실행되는 특별 규칙들의 요청에 의한 권한들을 오직 하나의 행정당국으로 통합하기 위해, 국립공원 중심 내에서 행해지는 활동에 관련된 환경법의 규정들을 개정한다.

■ Décret n° 2012-22 du 6 janvier 2012 relatif à la gestion des déchets d'éléments d'ameublement

- 가구 부품 폐기물 관리에 관한 2012년 1월 6일 제2012-22호 데크레

본 데크레의 목적은 가구 부품 폐기물의 예방, 수거, 처리를 위한 가구 생산자의 확대된 책임 제도의 이행이다. 생산자의 확대된 책임 원칙에 따라, 가구 부품 폐기물 관리는 가구 부품을 시장에 놓는 자(생산자 및 판매자)에 의해 보장된다. 본 데크레는 가구 부품의 개념, 가구 부품 폐기물, 시장에 놓는 자 및 배급자를 정의함으로써, 이러한 생산자의 확대된 책임 시행 영역을 확정하고 있다. 또한 데크레는 이러한 폐기물의 수거, 회수, 처리에 관한 요건 및 2015년 말까지 재활용률을 가정용 가구 부품 폐기물의 45%와 직업용 가구 부품 폐기물의 75%으로 확정된 재활용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될 기관의 요건을 확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품을 시장에 놓는 자들은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령에 의해 인정된 개별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승인된 공동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본 데크레는 특히 국가의 폐기물 커버율, 수거 장치의 구성 방법, 요금 수준 및 방법, 재활용 분야의 대상, 경제개념에 관한 연구 실행, 통신에 관한 지역 및 국가적 활동과 환경부 및 환경-에너지 제어국에 대해 전달되는 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Décret n° 2012-23 du 6 janvier 2012 relatif aux contrôles et aux sanctions applicables dans le cadre du dispositif des certificats d'économies d'énergie

- 에너지 절약 증명서의 처리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감독 및 징벌에 관한 2012년 1월 6일 제2012-23호 데크레

본 데크레는 에너지 절약 증명서 처리의 감독 방법과 법규 의무 위반 사실이 확정된 경우 시행될 수 있는 행정벌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 내용은 에너지 경제 활동 계획 영역에서 에너지 절약 증명서 교부 이후에 따르는 감독 방법 및 법규에서 정한 사실의 위반이 확인된 경우, 관련 장관은 제한된 기간 내에 의무를 다하도록 최고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행정벌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에너지 담당 장관은 에너지 경제 활동 정책 승인의 중지 및 철회 또는 금전적 벌을 선고할 수 있다.

■ Décret n° 2012-41 du 12 janvier 2012 relatif aux installations de production d'électricité à partir de sources d'énergie renouvelable

-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의 전기생산시설에 관한 2012년 1월 12일 제2012-41호 데크레

본 데크레의 목적은 해양 시설물의 성질 및 설치를 고려한 도시법에 의한 모든 형식과 풍력 개발 지역 이외에서의 풍력 발전기 건축 승인 신청 방침에 관한 모든 방법이 제공된 시설의 성질을 확정하는 것이다. 본 데크레는 해양 공공분야에서, 간조시의 해수면 정도에 설치된 특정 시설 또는 건축물의 성질과 설치에 대한 도시계획법의 모든 형식이 부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전기에 관한 공공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설치 작업을 포함하여,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 분야에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 Décret n° 2012-530 du 19 avril 2012 relatif à la mise sur le marché et au contrôle des substances et mélanges

• 화학물질 및 혼합물질의 시장에서의 유통 및 감독에 관한 2012년 4월 19일 제2012-530호 데크레

본 데크레는 화학제품 제조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그리고 화학제품을 이용하는 고용주, 노동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목적은 화학제품(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거래 및 감독에 관하여, 유럽법의 적응과 제재에 관한 제도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특히, 화학제품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과 관련하여 유럽연합법에 대한 프랑스 노동법, 공중보건법 및 환경법을 적용 시키기 위한 2011년 12월 22일 제2011-1922호 오로도낭스에 의해 입법수준에서 그 적응이 연장된 화학물질 및 화학혼합물의 분류 및 포장에 관한 2008년 12월 16일 제1272/2008호 규칙(유럽공동체) 작용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본 데크레는 위에서 언급된 공동체 규칙 중 분류 방법에 관한 새로운 규칙에 특정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화학제품 위험 예방분야의 노동법전 규정들을 적용시키고 있다. 그리고 특히 화학물질 및 혼합물질의 분류 및 포장 분야에서 언급된 규칙이 규정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특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환경법에 도입하고 있다.

■ Décret n° 2012-533 du 20 avril 2012 relatif aux schémas régionaux de raccordement au réseau des énergies renouvelables, prévus par l'article L. 321-7 du code de l'énergie

• 에너지법 제L.32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지역도식에 관한 2012년 4월 20일 제2012-533호 데크레

본 데크레는 전기의 이동에 관한 공공망 관리 회사와 전기배급에 관한 공공망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지역도식의 설정방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환경을 위한 국가의 약속에 관한 2010년 7월 12일 제2010-288호 법률에 따라 설정된 재생 가능 에너지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지역도식은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의 기후, 공기, 에너지에 관하여 지역도식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거나 강화하는 공사를 정하고 있다.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의 근원으로부터 생산되는 전기배송을 위하여 건조되는 전기공사 비용에 관한 생산업자간 상호부조구역을 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의 이동에 관한 공공망 관리자는 기후, 공기, 에너지에 관한 지역도식이 정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목적에 따라, 관련 전기배급 공공망 관리자와 협의하여 이와 같은 지역도식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데크레는 이러한 지역도식의 구성, 지역도식의 승인 방법과 예측 수용능력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 Décret n° 2012-602 du 30 avril 2012 relatif à la procédure de sortie du statut de déchet

• 폐기물 상태의 배출 절차에 관한 2012-602호 데크레

본 데크레는 폐기물 상태의 배출 절차를 정하고, 폐기물 상태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업자, 도지사 및 지역개발환경·주택국을 관련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에 관한 2008년 11월 19일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2008/98/CE 지침 제6조는 특정 폐기물이 재활용 또는 재처리 대상이 되거나 특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특별기준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유럽의회·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폐기물 상태(폐기물 분류에 따른)의 배출 절차를 본 데크레를 통하여 마련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환경보호를 위한 특정시설업자(ICPE)와 이러한 시설, 작업, 공사, 활동 규제에 관한 시설업자(IOTA)는 폐기물 상태의 배출 신청서를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유럽의회·위원회의 지침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 기준’을 정할 권한이 있는 관할당국으로서, 폐기물 분류에 관한 신청서의 경우 환경부장관, 그리고 일정한 시설에서 재활용되는 특별 폐기물에 관련된 신청의 경우 도지사임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신청서에 규정에 따르는 절차는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임명한 폐기물 상태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도지사는 ICPE(환경을 위한 특정시설업자)에 적용될 수 있는 규칙 및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 데크레는 폐기물 규약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능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

■ Décret n° 2012-617 du 2 mai 2012 relatif à la gestion des déchets de piles et accumulateurs et d'équipements électriques et électroniques

• 전기전자기기 폐기물 관리에 관한 2012년 5월 2일제2012-617호 데크레

본 데크레는 전기·전자기기 폐기물(DEEE ; déchets de piles et accumulateurs et d'équipements électriques et électroniques)과 전지·축전지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칙을 환경을 위한 국가적 약속에 관한 2010년 7월 12일 제2010-788호 법률, 권리의 질의 간소화·향상에 관한 2011년 5월 17일 제2011-525호 법률, 유럽연합법(전기·전자기기 폐기물(DEEE)에 관한 2003년 1월 27일 유럽의회·위원회의 2002/96/CE 지침과 전지·축전지에 관한 2006년 9월 6일 유럽의회·위원회 2006/66/CE 지침)과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DEEE관리와 전지·축전지 폐기물 관리에 관한 환경법 규정들을 유럽연합법과 조화시키고 있다. 환경을 위한 국가적 약속에 관한 2010년 7월 12일 제2010-788호 법률 제191조의 시행으로, 본 데크레는 환경법에 승인된 환경기관과 체결한 계약 또는 가정용 DEEE처리경로에 관하여 승인된 개별 시스템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폐기물 처리를 다하지 않은 유통업자의 무상회수 및 일반 폐기물에서 나온 가정용 DEEE처리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시설 감독관은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도지사의를 대리하여 제재를 통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권리의 질의 간소화·향상에 관한 2011년 5월 17일 제2011-525호 법률 제183조의 시행으로, 모든 새로운 가정용 전기·전자기기 판매 청구서에는 가정용 DEEE 관리 내역을 위한 비용을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전기·전자기기 판매가격 이외에 별도로 공인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지속 기간을 환경법에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

■ Décret n° 2012-184 du 7 février 2012 instituant une aide à l'embauche de jeunes de moins de vingt-six ans pour les très petites entreprises

- 극소기업을 위하여 26세 미만의 청년 고용 보조를 규정하는 2012년 2월 7일 제2012-184호 데크레

본 데크레는 10명 이하의 근로자로 구성된 기업과 26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주 작은 소규모 기업이 불확정 기간 또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의 확정 기간의 고용 계약으로 26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기 위한 국가의 보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조기금은 SMIC(최저임금;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수준에서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최대 195유로에 달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임금에 대해서는 이 원조금액은 차츰 차감된다. 또한 이 원조는 SMIC의 1.6배 이상의 근로자 채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Décret n° 2012-183 du 7 février 2012 relatif à la formation et à l'indemnisation des salariés pendant les périodes d'activité partielle de longue durée

- 오래 지속되는 부분적 활동 기간 동안 근로자의 교육연수와 보상금에 관한 2012년 2월 7일 제2012-183호 데크레

본 데크레는 오래 지속되는 부분적 활동 계약 내에서 부분적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이러한 근로자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며, 오래 지속되는 부분적 실업 기간 동안 근로자의 교육연수와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장되는 방식의 부분적 실업 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법 제L.5122-2조 제2호는 근로자에게 특별 수당 지급을 인정하는 오래 지속되는 부분 직업활동 계약 체결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데크레는 직업 연수교육 계획의 실행에 관한 요건 내에서 필요한 경우 실업 시간 동안, 이러한 계약 내에서 교육 연수 활동, 능력의 평가 또는 경력 취득의 법적 유효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교육 연수 기간 동안 지급되는 오래 지속되는 부분 직업 활동의 시간당 보조금을 근로자의 순봉급 100%에 이르게 규정하고 있다.

국제 / 외교

- Décret n° 2012-456 du 5 avril 2012 relatif à l'échange d'informations entre les services d'enquête français et ceux des Etats membres de l'Union européenne
 - 프랑스 정보조사국과 유럽연합 가입국의 정보조사국간의 정보교환에 관한 2012년 4월 5일 제2012-456호 데크레

본 데크레는 프랑스 정보조사국과 유럽연합 가입국 또는 관련 유럽연합 비가입국의 정보조사국간의 정보교환 및 등록 방법을 목적으로 하며, 데크레 관련 대상자는 프랑스 경찰 및 국가 헌병대의 정보 조사국 또는 정보조사팀과 유럽연합 가입국의 정보조사국이다. 본 데크레의 내용은 첫째, 프랑스 정보조사국이 쉥겐조약(Schengen) 기득권의 시행, 적용 및 확대에 가입한 유럽연합 가입국 또는 유럽연합 비가입국의 정보조사국에게 보낸 정보신청에 적용되는 규칙들을 정하고 있다. 둘째, 프랑스 정보조사국이 받게 되는 정보신청과 관련하여, 본 데크레는 회답기간·적정 기간 내에 회답 불가능성에 관한 증명 절차,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국이 신청에 대한 답변 거부할 수 있는 요건 또는 정보의 재전달 및 정보의 새로운 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기 타

- LOI n° 2012-325 du 7 mars 2012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cynégétique
 - 사냥 영역에서의 다양한 규정에 관한 2012년 3월 7일 제2012-325호 법률

본 법률은 사냥인들에게 관할구역 보호에 대한 중요 협력을 인식시켜 더 좋은 조건에서 사냥인들의 열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 다양한 조치들이 마련되었다. 첫째, 생물다양성 관리에 관한 효과적인 장치로서 사냥의 역할을 인정시키기. 둘째, 야생동물상과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발에 대한 정보와 교육에 대한 사냥인들의 도협회 역할의 인정. 셋째, 사냥 및 야생 동물상 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도지사의 발의 권한. 그리고 사냥할 수 있는 권리 소지자 또는 사냥인들의 도협회나 도상호공동협회의 배타적 권한의 발의 권한. 넷째, 도협회나 도상호공동협회의 제안에 따라, 사냥감의 피해로 인한 사냥금지구역에서 동물에 관하여 정해진 수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를 부가시킬 수 있는 도지사의 권한. 다섯째, 현재 보행자와 낚시인을 위하여 명백하게 유보된 하천 공공분야에의 "발판(marchepied)" 지역권 이익을 사냥인에게도 확장하기. 마지막으로, 국립공원 또는 자연보호지역 내에서의 사냥범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제재를 Guyane도에의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독일 —

경제 / 산업 / 통상

- Gesetz zur Änderung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zum besseren Schutz der Verbraucherinnen und Verbraucher vor Kostenfallen im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 und zur Änderung des Wohnungseigentumsgesetzes

- 인터넷 거래에서 인터넷사기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법전과 주거소유권법 개정을 위한 법률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서 인터넷사기(특히, 비용지불의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정기구독계약체결 혹은 매매계약체결 등) 사례는 이미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예컨대 소비자가 인터넷상에서 간단한 요리 레시피를 보기 위하여 해당 웹사이트에 가입하였을 뿐인데, 차후 2년 동안의 요리 관련 잡지의 정기구독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관한 지불명세서를 받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비록 이와 같은 정기구독계약체결이 재판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많은 경우 소비자가 승소하지만, 소송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는 소비자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본 법률은 인터넷상에서 왜곡된 정기구독계약체결 등과 같은 인터넷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더욱 강력히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률에서는 소비자를 보호를 위한 제도로 고지버튼 제도(Button-Lsung)“를 도입한다.” 고지버튼“은 인터넷 거래 시 소비자에게 해당 행위가 유료의 계약체결에 대한 구속적인 청약행위이며 이러한 청약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지불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위하여 판매자는 판매를 위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소비자가 지불의무에 대한 명확하게 인식한 후에야 해당 주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된 규정은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모든 인터넷 판매자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가 본 법률 규정에 맞도록 구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 Zweites Gesetz zur Änderung des Stabilisierungsmechanismusgesetzes

- 유럽재정안정화매카니즘법 개정을 위한 두 번째 법률

2012년 2월 28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예산심의위원회 9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유럽재정안정화매카니즘법에서 명기된 심의기관이 국채매입의 경우에 독일의회 본회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 유럽재정안정화매카니즘 부문에서 보증의 인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럽재정안정화매카니즘법률은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여 개정된다.

■ Gesetz zur Neufassung des Erdölbevorratungsgesetzes, zur Änderung des Mineralöldatengesetzes und zur Änderung des Energiewirtschaftsgesetzes

• 석유저장에 관한 법의 전면개정, 광유정보에 관한 법 및 에너지경제법 개정을 위한 법률

본 법률을 통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의 석유 및 석유부산물 최소저장의무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2009/119/EG(2009.09.14)이 독일법에 수용된다. 이 지침은 석유 및 석유부산물 저장에 관한 공동규율을 국제에너지기구 시스템과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금까지는 저장량을 특정 원유부산물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책정 하였으나, 이제 90일 동안의 석유 및 석유부산물의 순 유입량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또한 석유 공급 장애 사태에 적절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특별저장에 관한 요건이 규율된다. 마지막으로 이 지침은 석유저장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통하여 석유저장과 관련된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표로 한다. 이 지침을 독일법에 적용하기 위하여 석유저장에 관한 법률, 광유정보에 관한 법률 그리고 에너지경제법이 개정된다.

■ Zweites Gesetz zur Umsetzung eines Maßnahmenpakets zur Stabilisierung des Finanzmarktes (Zweites Finanzmarktstabilisierungsgesetz – 2. FMStG)

•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실행을 위한 두 번째 법률

금융시장안정화법(2008.10), 금융시장안정화보충법(2009.04.07)에 따른 안정화 조치의 확대 그리고 금융시장의 지속적 안정화를 위한 법(2009.07.17)은 2008년과 2009년의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러나 최근 여러나라의 국가채무로부터 발생한 금융부문에 대한 부담은 재차 유동성과 지불능력과 관련하여 시장참여자 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채용자의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채무로 야기된 문제의 기업에 대한 영향, 특히 외국 은행의 연쇄파급효과는 더욱더 예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비정상적 시장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유럽시스템위험위원회(ESRB)는 2011년 9월 21일에 과도하게 증가된 연쇄파급위험에 대하여 지적하고 금융시장안정화에 대한 국가은행들의 명확한 인식을 요구하였다. 또한 유럽시스템위험위원회(ESRB)의 위원장(Jean-Claude Trichet, 전 유럽중앙은행 회장)은 이러한 위험성을 2011년 10월 10일 유럽의회에서 강조하였고 상존하는 구조적 문제점과 전 세계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시장참여자들과 시민의 은행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이는 이미 2011년 9월 23일의 G20 회의에서 각 재정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에 의하여 천명 되었다.

특히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협요소에 예방적으로 대처하고 잠재적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은행의 자산건전화를 위한 사적 부문에서의 조치가 실패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도적 시장위험을 보다 조속히 간파하기 위하여 금융감독기관에 보다 큰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

2010년 12월 31일에 발효된 구조조정기금법을 통하여 위기에 처한 은행은 금융시장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조조정되거나 혹은 청산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관이 은행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을 다른 사적 은행이나 국가 금융기관으로 임시적 이전을 명령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안정을 위협하고 다른 방법을 통하여 제거될 수 없는 현실적인 위험이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조치는 개별 은행의 구체적 위험에 대하여 조속히 대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금융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적합하지 않다.

연방이 금융시장의 구조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률은 금융안정화기금법에 따른 조치가 재차 허용될 수 있는 한시적인 가능성을 열어준다. 게다가 연방금융감독청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은행에 증액된 자산금액을 책정할 수 있으며 그 자산충족을 위한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 법률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율한다.

1. 추가적 조치를 위한 금융시장안정화기금의 확대편성

본 법을 통하여 금융시장안정화기금법에 따른 조치가 추가적으로 신청될 수 있다. 이 경우 2010년까지 이미 내려진 대책들은 변함없이 이행될 수 있다. 먼저 은행의 대출보증범위는 4천억 유로로, 은행자본보장은 8백억 유로로 증액된다. 따라서 기존 기금의 금액이 전체적으로 증액된다. 이를 통하여 시장에 금융시장안정화를 위한 연방의 강한 의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보증은 장래에 원칙적으로 5년의 기간동안, 커버드본드(CB)와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7년까지 가능하다.

2. 은행감독상의 조치들의 강화

금융시장에 대한 특별한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 혹은 직면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경우나, 특히 유럽시스템위험위원회의 권고나 유럽의회의 결의 혹은 권고가 있는 경우 연방금융감독청은 은행의 존속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확충을 명령할 수 있다. 연방금융감독청은 은행에 증액될 자기자본 확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자기자본확충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된 계획에 대하여 연방금융감독청과 연방금융안정화기금의 조정위원회는 공동으로 평가한다.

은행이 제출한 계획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방감독청은 계획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에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개선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다면, 안정화기금 신청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한 계획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혹은 제출된 계획에서의 개선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방금융감독청은 계획의 수립과 계획의 시행을 특별수임인에 위임할 수 있다. 목표된 자기자본이 정해진 기간동안 확충되지 않는다면 연방금융감독청은 필요한 경우 그 외에 사용가능한 조치를 이용할 수 있다.

■ Gesetz zur Änderung des Gesetzes über die elektromagnetische Verträglichkeit von Betriebsmitteln, des Gesetzes über Funkanlagen und Telekommunikationsendeinrichtungen sowie des Luftverkehrsgesetzes

- 기계설비의 전자기적 신뢰성에 관한 법률, 무선통신기기와 통신단말기에 관한 법률 및 항공운항법률 개정을 위한 법률

기계설비의 전자기적 신뢰성에 관한 법률, 무선통신기기와 통신단말기에 관한 법률 및 항공운항법률은 각 법률에서의 비용기준의 명확성과 관련하여 통일적 규율 필요성이 있다. 연방정부는 이에 관한 연방회계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비용징수의 근거를 연방경제기술부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한다.

■ Gesetz zur Änderung telekommunikationsrechtlicher Regelungen

• 통신법상 규율 변경을 위한 법률

유럽연합의 개정지침 “규율 개선(2009/140/EG)”에 따라 통신법상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기반시설 투자 및 혁신을 위한 향상된 법 규정체계가 수용된다. 본 법률을 통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문별 상이한 규율을 예정하고 있는 법 규정체계가 구체화된다. 이를 통하여 투자위험과 통신망 확충에 있어서의 협력이 고려되고 동시에 경쟁을 촉진하며 시장 독점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투명성 확보와 통신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침 발령을 위한 관할 행정청의 권한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유럽연합 지침이 국내법으로 수용된다. 추가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문제점들이 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과도한 통화대기의 문제, 통신사업자의 변경 및 사업자변경에 있어서 전화번호의 계속적 사용에 관한 규율이 속한다.

정보보호 및 소비자의 법적지위 강화를 위하여 기존의 정보보호규정들이 새로운 정보보호지침 및 투명성 지침의 수용으로 인하여 최적화 된다.

공공정책 / 행정

■ Gesetz zur Umsetzung der Hochqualifizierten-Richtlinie der Europäischen Union

• 고도의 자격을 갖춘 직업활동을 위한 제3국적자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유럽연합지침 2009/50/EG(2009.03.25)의 국내법 적용을 위한 법률

인구변동에 관한 통계학적 지표에 비추어 보면 차후 점점 더 많은 고급 전문직 종사자나 많은 경험을 가진 노동 숙련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예측된다. 본 법률을 통하여 연방정부는 고등교육을 받은 외국인의 독일이주를 간편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체류허가인 블루카드 EU(Blaue Karte EU)“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법률을 통하여 독일 국내법을 유럽연합지침 2009/50/EG(2009.03.25)와 조화 시키며, 동시에 고급 전문직 인력의 독일 이민을 촉진하기 위함을 목표로 한다.

대학학력을 가진 자나 적어도 5년 이상의 직업상 경험을 가진 자 혹은 이와 유사한 조건을 증명하는 자는 장래에 블루카드 EU“를 통하여 체류허가를 얻을 수 있다. 새로운 체류허가에 대한 기타 조건으로 체류허가 신청자가 연간 44,000 유로(세금포함) - 기존 66,000유로- 이상의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특별한 수요가 있는 직종에 있어서 연간 수입증명은 완화된다. 자연과학자, 수학자, 기계기술자, 의사 그리고 IT 산업 직업군 종사자는 연가 33,000유로의 근로수입을 증명하면 족하다.

"블루카드 EU"를 소지한 자의 배우자는 곧바로 제한없이 모든 직종에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이주자의 배우자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문직종 종사자의 장기간의 독일 체류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블루카드 EU"는 최초 교부 시 최고 4년의 체류기간을 가지고 교부되며 혹은 체류신청자의 근로계약기간에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가지고 수여될 수 있다.

나아가 독일정부는 독일대학을 졸업하는 외국인들에게 졸업 후 독일에서의 직업활동을 장려한다. 따라서 독일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들에게 모든 직종에 대하여 1년간 취업준비기간이 보장되며, 체류허가증 교부에 있어서 연방노동청의 동의요건이 폐지된다. 독일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시에 대학전공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2년 후에 정주를 위한 허가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에 체류허가 신청자는 24개월간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체류허가 교부의 간소화 및 졸업 후 직업활동의 장려를 통하여 국제 교육시장에서의 독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 기대된다.

■ Gesetz zur Änderung des Gemeindefinanzreformgesetzes und von steuerlichen Vorschriften

• 자치단체재정개혁법과 조세법상 규정 개정을 위한 법률

각 주는 소득세, 근로소득세 및 투자소득세의 세수에 대한 일정 부분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할 의무가 있다. 이때 세수 분배에 대한 기준은 기본법 제106조 제5항에 따라 연방법에 정해져 있다. 이는 징수될 소득세를 근거로 산출된다. 2007년의 근로소득세 및 소득세 징수 통계에 비추어 분할 세수의 한도금액이 개인 납세의무자에 있어서 30,000유로에서 35,000유로로, 배우자와 통합된 부부납세자에 있어서 60,000유로에서 70,000유로로 상향 조정된다.

■ Zwanzig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undeswahlgesetzes

• 연방선거법 개정을 위한 스무 번째 법률

각 주 및 개별 선거구에서의 인구변동으로 인하여 연방선거법 별첨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독일연방의회 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이 연방선거법 제3조 제1항 제1문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 원칙과 조화되지 못한다. 또한 여러 주에서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종전의 선거구 획정 표기가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법률 별첨 제2조 제2항을 수정을 통하여 선거구를 새로이 개편하고 표기한다.

■ Gesetz zur Unterstützung der Fachkräftegewinnung im Bund und zur Änderung weiterer dienstrechtlicher Vorschriften

• 연방에서의 전문인력획득 지원 및 기타 직무법상 규정 개정을 위한 법률

연방에서 다양하고 많은 수고를 요하는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히 숙련되고 전문화된 인적자원은 필수적이다. 특별한 조건을 요하는 직무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의 획득은 전체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노동시장의 상황에 달려있다. 인구학적 요소 또한 이러한 노동시장 상황에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올해 이러한 인구학적 변수가 노동시장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민주당, 기독교사회당 그리고 자유민주당은 2009년 10월 26일의 연정합의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다른 직무분야 및 경제분야와의 전문인력획득 경쟁에서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본 법률은 이러한 합의의 실행을 위한 것이며 개정된 공무원직무법(2009년 5월)을 통한 연방의 직무법상 규정 개선을 보충하는 것이다. 기독교민주당, 기독교사회당과 자유민주당이 합의하였던 연금생활자로의 유연한 편입에 관한 부분은 공무원 직무부분에서 고령 직무자를 위한 노동시간의 유연화에 관한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통하여 보충되어진다.

본 법률은 원칙적으로 공무원보수법의 다음과 같은 개정을 예정하고 있다.

- 인력채용특별수당의 도입
- 연방근무로의 이직시 발생하는 보수감소의 보상
- 육아 및 가사시간의 인정을 통한 취업조건 개선
- 고도의 숙련 직종에서의 IT 전문인력의 취업조건 개선
- 연방 군병원에서 의료업무와 대기업무 보수의 개선

본 법률은 나아가 판례와 현실적인 요구 및 연방회계감사원의 권고부터 인지된 개선여지를 파악하고 특히 다음과 같은 개정을 예정하고 있다.

- 가족수당에 대한 규율의 간소화
- 특수개별사건에서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찰사무에 대한 수당의 도입
- 연방군 영역에서 직위수당의 확대
- 연방재정행정에서 경찰수당에 대한 새로운 규율
- 연방경찰공무원법에서 심화교육비용 보상을 규정
- 교육시간에 대한 제한된 고려에 관한 부양법상 규정의 폐지

■ Gesetz zur Änderung des Rechts der Verbraucherinformation

• 소비자정보청구권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법

소비자정보청구권에 관한 새로운 규율을 위한 법(2007.11.05)은 2008년 5월 1일을 기해 시행되었다. 독일연방의회는 연방정부에 법 발효 후 2년 이내에 법률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연방정부는 2010년 5월에 연방의회의 요구에 대하여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연방정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였고, 일련의 개선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제기 하였다. 본 법률은 연방정부의 평가를 통하여 확인 되었고 공개된 협의를 통하여 확인된 소비자정보청구권 개선을 위한 가능성을 개정을 통하여 법제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본 법률은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사료제품에서의 다이옥신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사료물질유통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정한다.

■ Gesetz zur Änderung des EG-Verbraucherschutzdurchsetzungsgesetzes und zur Änderung des Unterlassungsklagengesetzes

• 유럽연합 소비자보호이행법 및 금지소송청구법 개정을 위한 법률

본 법률을 통하여 유럽연합시행규칙 2006/2004호에 의하여 편입된 법 위반에 관한 관할권이 연방 소비자보호 및 생필품청으로 이전된다. 또한 연방금융감독청과 주 행정기관 사이의 관할권이 새로이 확정된다.

■ Zweite Verordnung zur Änderung der Integrationskursverordnung

• 사회통합과정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시행규칙

강제결혼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과 기타 체류법 및 망명법상 규정 개정을 위한 법률(2011.06.23)을 통하여 사회통합과정 참여자와 관련된 정보처리의 형식적인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또한 통합과정 참가의무자가 정해진 통합과정을 성공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체류허가의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사회통합과정에 관한 시행규칙 상의 정보처리규정과 참여의무자를 위한 통합과정 반복수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다. 현재 사회통합과정 시행에 다수의 기관 및 통합과정 제공시설들이 관련되어 있으나, 각 기관 상호간 혹은 기관과 통합과정 시행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처리에 있어서 비효율적 절차로 인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며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고 있다. 특히 국가적 사회통합정책을 위한 “언어-통합과정” 포럼의 보고서에서 발표된 다음과 같은 목적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수용된다.

- 디지털 매체를 통한 사회통합과정의 질적 개선
- 전문 교육인력을 위한 내용적 조직적 개선
- 통합과정의 질적 향상 및 접근성 향상 아래에서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의 설립 및 제공
- 사회통합과정에서의 시험절차의 질적 향상
- 특별과정의 신설

그 동안의 통합과정의 시행을 담당한 행정청의 경험과 장래의 통합과정의 수요에 비추어 볼 때 과정제공기관의 허가절차,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 및 통합과정 참가와 함께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의 새로운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사회통합과정의 기초과정에서 독일의 법질서, 문화 그리고 역사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45시간의 수강시간에서는 “민주주의에서의 정치”, “역사와 책임” 및 “사람과 사회” 등과 같은 주제와 관련된 심화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과정의 성공적인 이수가 차후 시민권 부여절차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귀화 신청자는 국적법 제10조 제5항 제1문에 따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주제에 관하여 재차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본 시행규칙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체류법 제8조 제3항 제6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총 300시간의 수강을 반복할 것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과정참여 의무자가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 제재를 위하여 전자적 정보공유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는 현대적 정보공유처리 체계가 도입된다.
- 위의 포럼 보고서에서 보고된 원칙적인 목표들이 각 관련 연방기관 행정실무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 통합과정 시행기관의 허가와 관련하여 엄격한 요건이 규정된다.
- 기초과정의 수강시간이 45시간에서 60시간으로 상향조정된다.

■ Gesetz zur Durchführung der Verordnung (EU) Nr. 211/2011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6. Februar 2011 über die Bürgerinitiative

• 시민입법청원제도에 관한 유럽연합규칙 211/2011(2001.02.16)호의 시행을 위한 법률

2012년 4월 1일부터 유럽연합의 시민은 시민입법청원제도를 통하여 유럽연합의 입법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구성국가들은 시민입법청원제도의 시행을 정치적 결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리사본 조약의 비준을 통하여 찬성 하였다. 유럽연합의 구성국가들은 조약의 내용에 따라 시민입법청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내법을 제정하고, 독일 연방공화국은 본 법률을 통하여 유럽시민입법청원에 관한 유럽연합의 결정을 독일법에 수용한다.

입법청원은 청원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시민위원회는 유럽연합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구성국가(현재 7개국)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청원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시민위원회는 청원을 지지하는 서명을 일 년의 기간 동안 모집하여야 한다. 총 100만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서명의 제출 후 3개월 내에 집행위원회는 청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입법청원을 기각할 때에는 이에 관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반대로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 통상의 입법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본 제도를 통하여 유럽연합의 운영에 있어서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초국경적 정책토론 및 직접적 참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

■ Gesetz zur Neuordnung des Pflanzenschutzrechtes

• 식물보호법의 새로운 규율을 위한 법률

새로운 유럽연합의 규율은 절차상의 개선을 예정하고 있으며, 인간, 동물 및 환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동시에 지속적이며 경제적인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건강한 식물만이 안전한 식품을 담보할 수 있으며, 식물보호는 유해생물과 다른 손상으로부터 식물과 식물생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식물생산과 소비자보호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올바른 식물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향후 유럽연합의 새로운 규율이 도입되는 모든 유럽연합 구성국가에서 소비자, 경작자 및 식물보호제품 생산자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일정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개정된 법은 이미 식물보호제품의 허가 및 사용에 적용되던 엄격한 보호수준을 더 많은 부문으로 확대하며 개선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 동물 그리고 자연의 보호가 절대적 우선가치를 갖는다.

식물보호제품에 사용되는 작용물질 허가에 대한 요건은 이미 유럽연합차원에서 강화되었으며, 장래에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분류된 특정한 성분은 허가된 식물보호제품에 더 이상 포함되어질 수 없다. 이 법은 또한 금지물질 선정 절차에 관한 독일의 참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식물보호물질의 사용은 고도의 전문가적 지식과 엄격한 규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직업상 사용자에게 대하여 전문적인 증명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유해생물 감염 방지 및 유해생물에 대한 자연메카니즘적 대처를 촉진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가 개선되어진다. 식물보호물질의 허가, 식물보호장비 및 식물보호물질 사용에 대한 유럽연합의 통일적이고 엄격한 기준은 또한 과거 유럽연합 내에서의 불공정거래를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식물보호물질의 허가에 있어서 효율적이며 신뢰적인 구조와 절차를 통하여 독일의 기준이 준수되고 강화될 것이다.

본 법률은 지금과 같이 독일 소비자보호 및 생필품 안정청을 국내적 허가기관으로 예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허가절차에 참여한 기관들 - 연방위험평가기관(BfR), 연방재배식물연구기관(Julius Kühn-Institut, JKI) 및 연방환경청(UBA)-은 여전히 평가기관으로서 참여한다.

■ Gesetz zur Neuordnung des Kreislaufwirtschafts- und Abfallrechts

• 자원순환관리 및 폐기물관리법의 새로운 규율을 위한 법률

새로운 자원순환관리법을 통하여 유럽연합의 폐기물지침이 독일법에 수용되며, 그 결과 독일 폐기물법상 규정들이 광범위하게 개정된다. 새로운 법은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기후보호 및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자원순환법의 핵심은 5단계의 폐기물분류법이다. 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폐기물감소, 재사용, 재활용 그리고 특히 폐기물의 에너지로서 사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최선의 옵션은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진다. 이때 생태학적 효과 뿐 아니라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결과들이 고려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자원순환 관리는 결과적으로 폐기물감소와 재활용에 중점이 놓인다고 할 수 있다.

본 법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율한다.

- 폐기물, 사용, 재활용, 처리, 생산 그리고 소유와 같은 모든 근본적 개념들의 유럽연합에서의 통일적 개념정의 (§§ 3 bis 5)
- 2015년부터 적용되는 생물폐기물 (§ 11 Abs. 1), 종이, 금속, 화학물질 그리고 유리제품의 분리수거를 위한 의무의 규정 (§ 14 Abs. 1)
- 생물폐기물 및 슬러지 재활용을 위한 민간부문에서 조직된 품질보증시스템의 법적 보장 (§ 12)
- 2020년까지 충족되어야 할 주거생활폐기물 (§ 14 Abs. 2)에 대한 65%의 재활용 정도와 건축 및 철거폐기물에 대한 70%의 재사용 정도 규정; 연방정부는 2016년 말까지 건축 및 철거폐기물에 대한 목표수치의 상향 조정을 심사한다 (§ 14 Abs. 3).
- 자치단체를 통한 주거폐기물 수거의 강화; 시장가치 있는 폐기물의 상업적 수거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규정 (§§ 17 und 18)
- 포장재료폐기물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 위한 법적근거
- 2013년까지 연방과 각 주의 폐기물감소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
- 폐기물의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한 수거자, 거래인 그리고 중개인 등에 대한 규율

■ Verordnung zur Änderung der Bioabfallverordnung, der Tierische Nebenprodukte-Beseitigungsverordnung und der Düngemittelverordnung

- 바이오폐기물에 관한 시행규칙, 가축 부산물 처리에 관한 시행규칙 및 비료물질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시행규칙

1987년에 제정된 바이오폐기물시행규칙은 가축 부산물 처리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의 개정, 비료법상의 개정, 실무상의 경험 그리고 바이오폐기물의 위생학상 새로운 연구 결과로 인하여 본 시행규칙을 통하여 개정된다. 또한 제67차 환경장관회의(2006.10.26)와 농업장관회의(2006.09.29)의 결정이 시행규칙 개정에서 고려되었다. 본 시행규칙을 통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규율된다.

- 별첨 1에서 토양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바이오폐기물의 목록이 새롭게 작성된다. 유럽연합지침 1069/2009호와 비료물질에 관한 시행규칙의 물질목록과 조화를 위하여 기타 물질목록이 변경된다.
- 별첨 2에서 전문가 집단의 개정제안서에 근거한 전염위생학과 식물위생학상 검토된 물질들이 새로이 규정된다. 이때에 특히 발효시설 및 바이오가스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결과 및 실무상 경험이 고려된다. 이를 통하여 발효시설 운영이 용이해진다.
- 통일적인 운반증명서가 도입된다.
- 환경장관회의와 농업장관회의에서의 의결 내용이 본 시행규칙에 수용된다. 특히 특정 바이오폐기물의 배출에 관한 관할 관청의 허가요건이나 문서작성의무 및 증명 의무에 관하여 규율한다.

■ Verordnung zur Änderung der immissionsschutzrechtlichen Verordnungen zur Begrenzung von Kohlenwasserstoffemissionen bei der Betankung von Kraftfahrzeugen (21. BImSchV) und zur Begrenzung der Emissionen flüchtiger organischer Verbindungen beim Umfüllen und Lagern von Ottokraftstoffen (20. BImSchV)

- 자동차 연료 급유 시 탄화수소오염 방지 및 가솔린 연료의 운반·저장 시 휘발성유기화합에 의한 오염 방지에 관한 오염방지법상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시행규칙

2009년 10월 21일 발효된 유럽연합지침 2009/126/EG의 본질적인 목적은 주유소에서 자동차 연료 급유 시 발생하는 휘발유 증기를 증기회수장치를 통하여 억제하는 것이다. 지침 2009/126/EG의 휘발성 증기 억제를 위한 증기회수장치 설비에 관한 지침은 자동차 연료 급유 시 탄화수소오염 방지에 관한 시행규칙(21. BImSchV)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독일의 대다수의 주유소에 구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지침에서는 21. BImSchV에서 규율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연간판매량 100 - 1000 입방미터에 해당하는 소규모 주유소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본 개정을 통하여 소규모 주유소도 본 시행규칙의 규율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또한 기존 규율 대상 연료로 휘발유 증기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본 개정을 통하여 휘발유 증기 뿐 아니라 바이오 연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도 규율대상에 포함된다.

식품 / 보건 / 복지

■ Gesetz zur Einrichtung und zum Betrieb eines bundesweiten Hilfe-telefons „Gewalt gegen Frauen“ (Hilfetelefongesetz – HilfetelefonG)

• 전 연방적 “여성폭력” 상담전화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본 법률을 통하여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방지 및 대처에 관한 유럽의회의 결정(2011.05.11) 제24조와 2009년 11월 11일의 정부여당의 연정합의서에 합의된 폭력에 직면한 여성을 위한 전 연방적 24시간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가 실시된다.

본 법률의 목적은 폭력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여성에게 폭력 없는 생활이라는 기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를 통하여 개인적 안전과 여성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양성 평등의 근본적 요건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화상담 서비스는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적이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초상담과 사후 지속적 도움 프로그램의 중개로 이루어진다. 전화상담을 통하여 모든 폭력적 상황에 있는 여성에게 적절한 상담소나 지원시설이 안내되어진다. 전화상담은 또한 언어적 저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국적 언어로 제공된다.

전화상담 서비스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폭력을 당한 여성
- 직업상 또는 비직업적 활동에 있어서 여성폭력의 위험의 직면하여 상담, 지원 및 중재가 필요한 자

법률에 규정된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활동 즉, “최초상담”, “정보제공” 그리고 “사후조치”는 상담비밀의 준수 및 정보보호 원칙과 익명성의 원칙 하에 자격 있는 전문 여성인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여성폭력” 중앙 상담전화는 연방가족청에 설치되며, 주무관청은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이다.

상담전화의 운영을 위하여 2012년에 삼백십만 유로의 예산소요가 예측되며, 2013년 이후 매년 육백만 유로의 예산소요가 예상된다.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직접적 비용은 부담되지 않는다.

■ Gesetz zur Änderung des Düngegesetzes, des Saatgutverkehrsgesetzes und des Lebensmittel- und Futtermittelgesetzbuches

• 비료법, 종자법, 식품법 및 사료제품법 개정을 위한 법률

비료법(2009.01.09)은 2009년 2월 6일 발효되었다. 비료법에 따르면 비료물질, 토양개질물질, 식물보호물질과 생육재 배물질들은 유럽연합의 비료물질규칙(EG Nr. 2003/2003, 2003.10.13)에서 허가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비료물질 등에 관한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유럽집행위원회의 법적 견해에 따르면 상호승인의 원칙이 비료제품유통에도 적용된다. 유럽연합의 구성국가, 터키 혹은 유럽자유무역지역에 관한 협약과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약의 대상국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적법하게 유통되는 비료물질은 따라서 원칙적으로 독일에서도 유통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된다. 본 법률을 통하여 위와 같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비료 등의 물질의 유통가능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진다.

■ Gesetz zur Neuordnung der Organisation der landwirtschaftlichen Sozialversicherung (LSV-Neuordnungsgesetz – LSV-NOG)

• 농업직종 사회보험 조직개편을 위한 법률

본 법률은 농업직종(농업, 산림업, 조경업 포함) 사회보험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농업종사자 및 그 가족을 위한 농업직종 사회보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직종에서의 지속적인 산업구조변화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수가 최근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변화가 분산 편재된 현재의 사회보험사업자체계에서 고려되고 있지 못함이 사실이다. 따라서 통일적인 농업직종 사회보험 체계 수립을 통하여 산업구조변화를 주시하고 고려하여야만 한다. 본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전 연방적인 보험사업자 체계를 통하여 상해보험 및 건강보험 부문에서 각 지역별로 상이한 보험료로 야기되는 불공정경쟁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조직개편을 통하여 요금산정에 있어서의 각 지역별 차이를 극복하고, 조직구조 혁신을 통하여 사회보험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건설 / 교통

■ Vierzehntes Gesetz zur Änderung des Luftverkehrsgesetzes

• 항공운항법 개정을 위한 열네 번째 법률

본 법을 통하여 법 규정에서의 개념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된다. 또한 환경감시나 교통감시와 같은 민간목적 운용이 늘어가는 무인항공기 운용체계에 관한 규정이 추가된다.

나아가 본 개정을 통하여 공항사용료에 독일 국내법상 규정이 이와 관련하여 규율된 유럽연합지침 2009/12/EG(2009.03.11)와 조화를 이룬다. 이에 따라 연간 이용인원 5백만명 이상의 공항에 대한 공항사용료가 법으로 규정된다. 이와 관련된 협의절차와 그 진행에 관한 형식적인 기준과 함께 실제적 법적 규율이 규정된다.

유럽연합규정 Nr. 1008/2008(2008.09.24)에 의하여 규율된 항공료에 관한 공정성 기준, 소비자보호규정과 국적 또는 주거지에 따른 항공료 차별금지규정 위반과 관련된 벌금규정이 도입된다.

국제 / 외교

■ Gesetz zur Änderung des Eurojust-Gesetzes

- 유럽연합사법공동협력체(유로저스트)법 개정을 위한 법률

본 법률은 관련 독일 국내법을 유럽연합사법공동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결정(2009/426/JI, 2008.12.16)과 강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사법공동체 출범에 관한 결정(2002/187/JI, "Eurojust-Beschluss")에 조화시킨다.

유로저스트는 법인격을 갖는 유럽연합 소속 기관으로서 2002년 강력범죄 및 조직범죄에 대한 강력대응을 위한 구성국가간 사법적 공조 위하여 창설되었다. 유로저스트는 유럽연합 내 사법공조체계를 강화시키고 그 효율성을 증대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특히 유로저스트에서의 지속적협력근무체계(제5a조)가 도입되며, 각 개별 구성국가의 권한이 자세히 규정되며(제9조 이하), 구성국가와 유로저스트 간의 협력체계를 규정하며(제12조), 개별국가의 해당 파견기관(구성국가에서 유로저스트로 파견되는 기관, 통상 판사나 검사)에 대한 유럽연합 구성국가의 보고의무가 규율된다(제13조). 또한 유로저스트 결정은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새로운 규정, 특히 한시적으로 취급된 사건처리정보, 자료의 색인 및 구성국가 정보 접근성을 규율한다(제16조). 아울러 파견기관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력이 임명될 수 있으며(제2조), 마지막으로 유로저스트의 관할권을 유로폴(Europol) 창설을 위한 유럽연합결정(2009/371/JI)에서 확정한 관할권에 일치시킨다(제4조).

위의 유로저스트 결정의 독일 국내법으로 수용에서 독일 파견기관에 대한 규율이 유로저스트 협약의 새로운 임무를 위하여 조정된다. 독일 파견기관은 최소한 4년을 임기로 하여 임명된다(유로저스트 법 제1조 제2항). 독일 파견기관의 권한은 이제 유로저스트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명시된다. 나아가 파견기관에 의한 업무기록 및 정보 관리(유로저스트 법 제4a조)와 유로저스트 협력기관의 정보 접근(유로저스트법 제4b에서 제4d조)에 관하여 규율된다. 유로저스트법 제6조에서 강화된 정보보고의무가 규정된다.

농수산축업

■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Kontrollstellen nach dem Öko-Landbaugesetz (ÖLG-Kontrollstellen-Zulassungsverordnung -- ÖLGKontrollStZulV)

- 유기농작물재배 감독기관 허가에 관한 시행규칙

독일에서 유기농작물 재배에 대한 감독은 유기농작물법의 규정에 따라 독일연방영양청(BLE)에 의하여 허가가 주어지고 각 주에 의해 감독되어지는 민간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최근 독일에서의 유기농작물 시장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한 강력한 소비자보호 및 각 민간 감독기관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기농작물재배감독 활동을 법 규정을 통해 통일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본 시행규칙을 통하여 이제까지 연방농업영양청(BLE)과 각 주의 해당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로 이루어진 민간감독기관 허가절차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연방법을 통하여 전 연방에 통일적인 자세한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하여 유기농작물재배에서 사무처리와 관련된 유럽연합지침 2006/123/EG(2006.12.12)이 독일법에 적용되며,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약의 기타 유럽연합 구성국가 및 협약체결국에서의 전문감독인의 자격과 관련된 유럽연합지침 2005/36/EG의 기준들이 적용된다.

— 일본 —

재 해

- 東日本大震災に対処するための平成二十三年度分の地方交付税の総額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동일본 대지진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2011년도분 지방교부세의 총액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東日本大震災に対処するための平成二十三年度分の地方交付税の総額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동일본 대지진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2011년도분 지방교부세의 총액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개요>

동법의 개정은 총무성의 총무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2011년도(일본의 경우,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이므로 2012년 3월 현재는 2011년도에 해당한다.)의 제2차 및 제4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액된 동년도분의 지방교부세액의 일부를 동년도내에 교부하지 않고 2012년도분으로 교부하여야 할 지방교부세의 총액에 가산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함이 개정취지이다.

<구체적인 개정사항>

동 개정안의 구체적인 골자는 다음과 같다.

2011년도분의 지방교부세 중, 제2차 및 제4차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증가한 금액의 일부(4,608억엔)를 2012년도분으로 가산하고자 함인데, 구체적으로는

- (1) 제4차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증가한 금액 3,608억엔 전액을 2012년도분의 지방교부세에 가산하도록 한다.
- (2)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증가한 금액 5,455억엔 중, 1,000억엔을 2012년도분의 지방교부세에 가산하도록 한다.

상기와 같은 조치는 2011년도의 지방교부세에 증액에 의한 사업의 진행도를 감안하여 차년도의사업진행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 東日本大震災の被災者に対する援助のための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の業務の特例に関する法律
 - 동일본 대지진 재해 피해자 원조를 위한 일본 사법지원 센터의 업무 특례에 관한 법률

<개요>

동법은 동일본 대지진 재해 피해자가 재판이나 그 외의 법률에 따라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 및 변호사 선임 등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본 사법 센터가 종합법률 지원법이 규정하는 업무 중, 동일본 대지진 재해 피해자에 대하여 그 경제적인 여력과 기타 상황에 관계없이 소송대리, 서류작성, 법률상담 등과 관련된 원조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자 제정되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각 방면의 구조와 원조 활동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임시 주택 제공과 가옥 수리비용 등의 직접적인 급부와 더불어 사법적인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원조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치된 것이다.

<구체적 조치사항>

1. 취지

이 법률은 동일본 대지진 재해 피해자가 재판이나 그 외의 법률에 따른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 및 변호사 선임 등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본 대지진 재해 피해자에 대한 원조가 가능하도록 일본 사법지원 센터 업무의 특례를 규정함에 있다.

2. 일본 사법지원 센터 업무의 특례

(1) 구체적인 조치로서는, 일본 사법지원 센터는 종합법률 지원법이 규정하는 업무 이외에 동일본 대지진 재해 피해자에 대하여 그 경제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민사재판 등의 절차와 그 외 절차의 준비와 관련된 소송대리 및 그 서류작성과 법률상담 등에 관한 원조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2) 일본 사법지원 센터가 상기 업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관련된 민사재판 등의 절차와 그 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는 경비의 상환 및 지불을 유예하여야 한다.

3. 장기 차입금

일본 사법지원 센터는 종합법률 지원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2)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무대신의 인가를 받아 장기 차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4. 시행일 등

동법은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초과한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행정조직 / 공무원

- 国家公務員の給与の改定及び臨時特例に関する法律
 - 국가공무원의 급여개정 및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国会議員の秘書の給与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국회의원 비서의 급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裁判官の報酬等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판사의 보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検察官の俸給等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검찰관의 봉급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国家公務員の給与の改定及び臨時特例に関する法律
 - 국가공무원의 급여개정 및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개요>

동법은 인사원의 국회 및 내각에 대한 2011년 9월 30일부의 직원의 급여 개정에 관한 권고에 따라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내려진 조치이다. 즉 일반직 직원과 내각총리대신 등의 특별직 직원 및 방위성 직원의 급여를 개정함과 동시에 일본이 국면하고 있는 재정상황 및 동일본 대지진 재해에 대처할 필요 등으로 인하여 세출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국가공무원의 인건비를 삭감하기 위하여 2014년 3월 31일까지의 국가공무원에 대한 급여지급을 감액지급하기 위한 임시특례이다. 즉 악화 되어 가는 국가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세입을 늘이고자 하는 조치에 앞서 우선 세출을 줄여 보고자 함이 동법이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또한 이 개정의 배경에는 일본의 국가공무원의 임금수준이 민간의 임금수준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바, 이에 대한 시정과 더불어 상기의 재정악화를 완화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구체적인 내용>

1. 인사원 권고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급여 개정

- (1) 일반직 직원의 봉급월액에 관하여 의료직 봉급표(1) 및 약년층을 제외하고 평균 0.23% 봉급표를 인하한다.
- (2) 일반직 비상근 위원, 고문, 참여 등에 지급하는 수당은 그 한도액을 인하한다.
- (3) 일반직 급여법 2005년 개정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액의 지급기간을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4) 내각총리대신 등의 특별직 봉급월액은 일반직 직원의 급여개정에 준하여 인하한다.
- (5) 특별직 상근 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일당의 한도액을 인하한다.
- (6) 방위성 직원의 자위관 봉급표 등의 봉급월액을 일반직 직원의 예에 준하여 인하한다.
- (7) 방위성 직원의 경과조치액의 지급기간을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시행일 등

- (1) 이 법률은 공포일의 익월 1일(공포일이 1일일 경우에는 그 날)부터 시행한다. 단, 국가공무원 급여의 임시특례 및 자위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 등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2012년 6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의 금액은 2011년 4월 1일부터 이 법률의 시행일의 전달까지의 봉급월액 등의 합계액의 0.37% 및 기말·근무수당의 합계액의 0.37%를 삭감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공무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및 이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공공단체가 자주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한다.

상기의 조치사항이 이 법률의 주된 골자에 해당하나, 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종래부터 문제시 되어 온 일본의 재정사정 악화가 그 원인인 한 기존에 경기침체와 재정악화와 더불어 2011년의 대지진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 편성 등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된 재정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이다. 또한 이 법률의 특징으로서는 국가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인건비 삭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자주적이고 적절하게 대응”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향후 각 지자체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 하다.

■ 国会議員の秘書の給与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국회의원 비서의 급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개요>

동법은 일련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의 급여 조정에 대한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비서의 급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의원 비서의 급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5년 법률 제50호. 이하 “2005년 개정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경과조치의 산정 기초액을 일반직 직원에 준하여 개정한다.
2. 2005년 개정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료의 지급기간을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3. 이 법률은 공포일의 익월 1일(공포일이 1일일 경우에는 그 날)부터 시행한다.
4. 이 법률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받는 기말수당 등에 대해서 특례를 둔다.

상기와 같은 개정사항은 앞서 2에서 기술한 국가공무원의 급여개정 및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의한 관련 법률의 개정 조치에 해당한다. 즉 일본의 재정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제정된 국가공무원의 급여개정 및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국회의원 비서의 급여 또한 국가공무원의 일반직 직원의 삭감 비율에 준하여 삭감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裁判官の報酬等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판사의 보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개요>

동법의 개정 역시 상기 2의 국가공무원의 급여개정 및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판사의 보수월액을 개정, 즉 삭감하고자 하는 개정이며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수월액 개정
일반직 정부직원의 급여개정(민간의 임금수준에 맞춘 급여월액의 인하)에 따라 판사의 보수월액을 인하한다.
2. 시행일
공포일의 익월 1일(공포일이 1일일 경우에는 그 날)부터 시행한다.

■ 検察官の俸給等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검찰관의 봉급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개요>

동법의 개정은 상기 2의 국가공무원의 급여개정 및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즉 일반 정부직원의 급여개정에 따라 검찰관의 봉급월액을 인하하고자 하는 개정이며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봉급월액 개정

일반 정부직원의 월급개정(민간의 임금수준에 맞춘 급여월액의 인하)에 따라 검찰관의 봉급월액을 인하한다.

2. 시행일

공포일의 익월 1일(공포일이 1일일 경우에는 그 날)부터 시행한다.

■ 国会議員の歳費及び期末手当の臨時特例に関する法律

- 국회의원의 세비(歳費) 및 기말수당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개요>

동법 개정의 취지는 현재 일본의 격심한 재정악화 상황과 동일본 대지진 재해 대처 등의 상황을 고려한 결과, 현재 세출의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내려진 조치이다. 즉 국회의원의 세비(월급에 해당한다.), 여비 및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두고자 하는 개정이다. 이는 소수에 해당하기는 하나, 일본의 몇몇 지자체가 재정악화와 주민의 근로악화에 대한 균형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당해 지자체 장과 시의원 등의 급여삭감을 실행하고 지금도 몇몇 지자체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 바, 이로 인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보인다. 또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을 비롯한 공무원 등의 감봉 조치도 앞서 이루어진 바 있다.

<구체적 조치사항>

1. 동법 시행일부부터 2014년 4월 40일까지(이하 ‘특례기간’이라고 한다.)의 기간 동안, 각 의원의 의장, 부의장 및 의원이 수령하는 세비에 대해서, 세비 월액에 12.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비에서 감봉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였다.

2. 특례기간 동안은 각 위원의 의장, 부의장 및 의원이 수령하는 기말수당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에 12.88%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봉하도록 하였다.

3 시행일

동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

■ 郵政民営化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等の法律

• 우정 민영화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

<개요>

동법 개정안은 우정 민영화에 있어서 내외 사회경제정세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우편국 주식회사 및 우편사업 주식회사의 재편성, 우정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역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둠과 동시에 이들 주식회사가 합리적인 우정사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고자 마련된 개정안이다.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 조치사항>

1. 우정 민영화의 목적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즉, 목적규정을 주식회사에 적합하도록 우정사업 경영을 수행시키기 위한 개혁임을 밝히고 있다.
2. 경영형태에 대하여 현행 5사 체제를 4사 체제로 축소하였다. 즉, 우편국 주식회사를 존속회사로 하여 우편사업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그 상호를 “일본 우편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3. 일본 우정 주식회사 및 일본 우편 주식회사에 우편사업 및 저금·보험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우편국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①일본 우편 주식회사에 의한 우편국을 널리 전국적으로 설치할 의무 및 은행·보험 창구 업무계약 내용을 총무대신에게 신고할 의무, ②우편국 네트워크의 활용, 그 외 우정사업 실시에 있어서의 공익성 및 지역성의 충분한 발휘, ③정부가 우정사업과 관련된 기본적 역무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4. 일본 우정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우편저금 은행 및 우편 보험회사(이하 ‘금융 2사’라고 한다.)의 주식은, 그 전부를 처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양사의 경영상황, 우정사업과 관련된 기본적 역무확보에의 영향 등을 감안하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처분하도록 결정하였다.
5. 금융 2사에 대한 신규 업무규제에 관해서는 계속하여 내각총리대신 및 총무대신에 의한 인가제를 기본으로 하되, 양사 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한 후에는 신고제로 하여 타 금융기관과의 적정한 경쟁관계 배려, 우정 민영화 위원회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 하고 감독 상의 명령규정의 대상으로 하도록 개정하였다.
6. 합병에 따라 새로이 발족하는 일본 우편 주식회사에 대한 임의업무 규제에 대해서는 총무대신에의 신고제로 하고 금융 2사의 경우와 같이 동업 타사에 대한 배려의무, 우정 민영화 위원회에의 통지 등을 의무화 하였다.
7. 위 조치에 따라 ‘우편사업 주식회사법’ 및 ‘일본 우정 주식회사, 우편 저금은행 및 우편 보험 회사의 주식처분의 정지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된다. 또한 ‘우편창구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법률’을 ‘간이 우편국법’으로 개명하는 등, 29개에 달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소정의 경과조치를 취한다.
8. 동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단 우정 민영화법의 목적 변경, 일본 우정 주식회사 등의 주식처분의 동결해제 등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 / 노동

- 現下の厳しい雇用情勢に対応して労働者の生活及び雇用の安定を図るための雇用保険法及び特別会計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심각한 현재의 고용정세에 대응하여 노동자의 생활 및 고용안정을 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개요>

동법의 개정은 현재 일본의 심각한 고용정세에 대처하여 노동자의 생활 및 고용안정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 즉 고용보험의 기본 수당의 급부일수를 연장 하는 등의 잠정조치 및 노동보험 특별회계 고용감정(勘定)의 적립금의 특례 등을 연장하고자 함이 주된 취지이다.

동법이 말하는 고용보험의 기본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실직을 한 경우에 그 실직 중에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급하는 실업수당에 해당한다. 참고로 2011년 8월에는 동법의 개정에 따라 5년 만에 지급금액이 인상되었으나 개선되지 않는 일본 경제 불황 속에서 악화되어 가는 고용정세를 감안하여 잠정조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구체적 조치사항>

1. 고용보험법의 일부 개정

급부일수의 연장에 관한 잠정조치법의 기한을 2년간(2014년 3월 31일) 연장하였다.

2.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고용감정 적립금의 특례에 관한 잠정조치 기간을 2년간(2012년도 및 2013년도) 연장하였다.

■ 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就業条件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인력(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확보 및 파견 근로자의 취업조건 정비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개요>

동법의 개정은 최근 인력 파견사업을 둘러싼 상황을 고려하여 파견 근로자의 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보다 충실히 하고자 함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

<구체적 조치사항>

1. 단기 노동자의 파견금지

파견 사업주는 일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적정한 고용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무로서 정령이 규정하는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또는 고용기회 확보가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의 고용지속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기타 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을 금지함으로써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근로에 있어서의 근로안정을 꾀하고자 하고 있다.

2. 균형을 고려한 대우 확보 및 파견사업 업무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제공 의무 창설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임금 등에 있어서 파견 근로자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 근로자와의 균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근로자 파견에 관한 요금의 평균금액과 파견 근로자의 임금 평균 금액의 차액이 근로자 파견 요금의 평균 금액이 점하는 비율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3. 파견처가 무허가 파견 사업주 등으로부터 근로자 파견 등의 역무를 제공 받는 등의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그 시점에서 파견처로부터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계약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4. 검토 조치

정부는 이 법률 시행 후, 시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시 고용하는 노동자가 아닌 자에 대한 노동자 파견의 실태, 제조업 무로의 노동자 파견 실태 및 특정 노동자 파견 사업의 실태에 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고용실태와 악화일로에 있는 근로상황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도록 검토조치를 새로이 규정하였다.

5. 시행일

동법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3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3년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

- 不正アクセス行為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부정 접속 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개요>

동법 개정의 목적은 최근 부정 접속행위가 빈번하고 그 수법 또한 다양해 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써 그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함에 있다.

<구체적 조치사항>

1. 식별부호의 부정유통 방지

- (1) 부정 접속행위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취득하는 행위 및 부정으로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를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함과 동시에 그 위반자를 처벌한다.
- (2) 부정 접속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금지되어 있는 타인의 식별부호 제공행위의 범위를, 어떤 특정전자계산기의 특정이용과 관련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식별부호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그 위반자를 처벌한다.

2.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 의한 계발 및 지식보급

부정 접속행위로부터의 방어에 관한 계발 및 지식보급에 필요한 인력을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 추가한다.

3. 접속 관리자에 의한 방어조치를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원조

국가공안위원회, 총무대신 및 경제산업대신은, 접속 관리자에 의한 접속 제어기능의 고도화 등의 조치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자 당해 지원을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정보제공 및 기타 원조를 하도록 노력규정을 신설하였다.

4. 부정 접속행위 등에 관한 처벌 강화

상기 1의 조치와 더불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정 접속행위를 한 자 및 상대방에게 부정 접속행위용으로 제공할 목적이 있음을 알고도 타인의 식별부호를 제공한 자에 대한 법정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기업 / 소비자

- 株式会社企業再生支援機構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주식회사 기업재생 지원기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개요>

동법의 개정 배경은 최근 일본의 경제금융정세 및 금융기관이 금융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추세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금융기관들의 금융원활화 대책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임시 조치에 관한 법률의 유효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과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사업자의 사업재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기업재생 지원기구(이하에서는 '기구'라고 한다.)가 지원결정 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구체적 조치사항>

1. 지원결정 기한 연장

기구가 지원결정을 실시할 수 있는 기한(기구의 성립일, 2009년부터 2년간)을 2013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2. 대상사업자에 대한 재생지원 완료기한 연장

기구가 사전에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결정을 시행한 경우에 당해 지원결정과 관련된 모든 재생 지원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한(기구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을 2016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상기 조치는 경기부양책,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대책과 더불어 일본 국내 기업들의 부실화를 막고 재건을 위한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일본의 경제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건 / 복지

■ 児童手当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아동수당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개요>

동법의 개정은 부모와 그 외 보호자가 육아에 대한 일의적 책임을 가진다는 기본적인 인식 하에 가정 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차세대를 이끌어 갈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 함이라 밝히고 있다.

<구체적 조치사항>

1. 아동수당은 중학교 수료 전의 아동으로서 일본국내에 주소를 가지는 자 등을 감호하거나 이와 생계를 같이 하는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는 부모 등 또는 중학교 수료 전의 아동이 입소해 있는 아동복지시설 등의 설치자 등에게 지급한다. 또한 부모 등이 별거 중이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과 동거하고 있는 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육아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이다.
2. 아동수당의 금액은 1개월에 3세 미만 아동에게는 1만 5천엔, 3세 이상 초등학교 수료 전의 제1자 및 제2자에게는 1만 엔, 3세 이상 초등학교 수료 전의 제3자 이후의 아동에게는 1만 5천엔, 초등학교 수료 후 중학교 수료 전의 아동에게는 1만엔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다.
3. 소득제한, 특례급부 및 지급요건에 관한 잠정조치
 - (1)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의 소득이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2) 당분간 (1)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1개월에 중학교 수료 전의 아동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천엔을 지급하도록 한다.
 - (3) 2012년 4월분 및 동년 5월분의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기 3의 조치는 중의원에서 수정결의 된 조치이다. 이는 아동수당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제 92대 아소 총리의 정책선언, 즉 소득제한 없이 아동 1인에 대하여 2만 6천엔을 지급함으로써 저출산에 대한 대처와 서민생활 안정을 꾀하고자 했던 것에 대한 수정책이라 할 수 있다. 즉 소득제한 없이 고소득자에 대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비판과 2만 6천엔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재정능력이 없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4. 아동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상기 3을 제외한 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그 15분의 7을 사업주의 거출금으로 충당하고 그 외의 비용은 그 3분의 2를 국고가 부담하며 그 6분의 1을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다. 단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액을 소속관청이 부담한다.
5. 수급자격자의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을 학교급식비 등의 지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보육원의 보육료에 대해서는 시정촌장이 아동수당을 지불할 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현금지급에 대한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즉 부모 등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반드시 육아를 위한 경비지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우려에서 직접적인 육아비용의 충당의 한 방편으로 급식비나 보육료로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 国民健康保険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개요>

동법 개정안은 일본의 국민건강 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함을 그 취지로 두고 있다. 즉 종래부터 논의 되어 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기반강화 등을 항구적으로 함과 동시에 재정운영의 도도부현 단위화 추진, 도도부현 조정교부금 비율의 인상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 것이다. 즉, 구체적인 개정안을 검토해 보면 최근의 기초 지자체의 재정악화 현황을 감안하여 기초 자치단체의 부담률을 경감하고자 하는데 중점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 조치사항>

1. 일본의 자치단체에 있어서 가장 기초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정촌이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부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도도부현 조정교부금의 비율을 100분의 7에서 100분의 9로 인상함과 동시에 이에 따라 당해 비용에 대한 국고부담을 인한다.
2. 소득이 적은 자의 수에 대응하여 국가 및 도도부현이 시정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하에서는 ‘보험자 지원제도’라고 한다.)를 2014년까지 지속하고 2015년도부터는 항구화한다.
3. 의료에 필요한 비용을 시정촌이 공동으로 부담하기 위한 교부금 사업(이하에서는 ‘도도부현 단위의 공동사업’이라고 한다.)을 2014년까지 지속하고 2015년도부터는 항구화 함과 동시에 이와 더불어 재정운영의 도도부현 단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을 모든 의료비로 확대한다.
4.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4와 5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요>

동법률안은 최근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 온 신형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을 조직화 하고 국가 등의 의무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안이다. 즉 일본 후생노동성이 밝힌 동법의 취지로서는, 신형 인플루엔자 등의 발생 시에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 또한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실시에 관한 계획, 신형 인플루엔자 등의 발생 시의 조치, 신형 인플루엔자 등 긴급사태 조치, 그 외 신형 인플루엔자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특별조치를 강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 조치사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신형 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는 국가 전체로서 만전태세를 정비할 의무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을 적절하고 신속히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사업주 및 국민은 신형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 및 대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신형 인플루엔자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중앙정부, 지자체를 비롯하여 국민과 사업주에 걸친 각각의 주체에 대한 의무를 명문화 한 것이다.

2. 기본적 인권의 존중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제한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둬으로써 질병 발병과 관련된 긴급 상황에 있어서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3.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실시에 관한 계획 등

정부는 신형 인플루엔자 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정부 행동계획을 책정하고, 도도부현 지사는 도도부현 행동계획을, 시정촌장은 시정촌 행동계획을, 지정공공기관 등은 업무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지정행정기관의 장 등은 필요한 물자 등을 비축, 정비, 점검하고 필요한 관리에 속하는 시설 등을 정비, 점검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4. 신형 인플루엔자 등의 발생 시의 조치

- (1) 신형 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한 경우, 내각총리대신을 장으로 하는 정부대책 본부를 설치한다. 정부대책 본부는 기본적인 대처방침을 책정하고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한다. 정부대책 본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즉시 도도부현 지사를 장으로 하는 도도부현 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한다.
- (2) 정부대책 본부장은 긴급한 필요가 있을 시에는 의료 관계자 등에게 임시 예방접종(특정 접종)을 하도록 후생노동 대신에게 지시할 수 있다.
- (3) 후생노동대신은 외국에서 신형 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 검역항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정부대책 본부장은 긴급한 필요가 있을 시에는 특정 선박 등을 운항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특정 선박 등의 내항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 (4) 후생노동대신 및 도도부현 지사는 필요 시, 의료 관계자에 대하여 환자 등에 대한 의료 또는 특정 접종 실시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5. 신형 인플루엔자 등 긴급사태 조치

- (1) 정부대책 본부장은 발생한 신형 인플루엔자 등이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신형 인플루엔자 등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그 취지 및 긴급사태의 개요 등을 국회에 보고한다. ‘신형 인플루엔자 등 긴급사태’가 선포된 경우에 시정촌장은 즉시 시정촌장을 장으로 하는 시정촌 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특정 도도부현 지사는 신형 인플루엔자 등 긴급사태에 있어서 주민에 대하여 외출을 자제할 것과 그 외 신형 인플루엔자 등의 감염 방지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하고 학교, 각종 시설 등의 시설관리자 등에 대하여 시설사용 및 행사 개최에 대한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3) 정부대책 본부는 신형 인플루엔자 등 긴급사태에 있어서 긴급한 필요한 있을 시에는, 임시 예방접종 대상자 및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4) 지정공공기관 등은 신형 인플루엔자 등 긴급사태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5) 지정행정기관의 장 등은 신형 인플루엔자 등 긴급사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인 지정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긴급물자 운송을 요청할 수 있다.
- (6) 특정도도부현 지사 등은 신형 인플루엔자 등 긴급사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요청’을 할 수 있고 또한 긴급한 경우에는 당해 특정물자의 생산자 등에 대하여 ‘특정물자의 보관’을 명할 수 있다.
- (7) 지정행정기관의 장 등은 신형 인플루엔자 등 긴급사태에 있어서, 생활관련 물자 등의 물가안정 등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 / 해양 / 건설 / 교통

- 都市再生特別措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도시재생 특별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개요>

동법 개정안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경우, 도시재생 긴급정비 지역 내의 체재자 등의 안전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긴급정비 협의회에 의한 도시재생 안전확보 계획의 작성, 도시재생 안전확보 시설에 관한 협정제도 창설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자 발의된 것이다. 이는 지난 2011년 3월의 동북지역 대지진 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재해복구 조치의 일환으로 계획적인 절차의 충실, 피해자 안전확보의 실효성 확보와 더불어 전무가와 행정관청 및 소유권 관계자 등과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 조치사항>

1. 동법의 개정안에는 동법 법률의 목적 규정도 개정되었는데 즉, 그 목적을 도시재생을 도모하고 이와 더불어 도시방재에 관한 기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2. 도시재생 기본방침은 도시재생을 실현하고 이와 더불어 도시방재에 관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 지역정비 방침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경우, 당해 지역 내의 체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4. 국가의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이 협의하여 도시재생 긴급정비 협의회(이하에서는 '협의회'라고 한다.)에 참가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있어서, 도시재생 긴급정비 지역 내의 건축물 소유자 등 또는 철도사업자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기존 법률에서는 실질적인 재산권의 손해를 입은 자 등의 계획책정예의 의견반영이 차단되어 있었던 바 이를 시정하고자 한 것이 당해 조치에 해당한다.
5. 협의회가 지역정비 방침에 근거하여 도시재생 긴급정비 지역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경우, 체재자 등의 안전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피경로, 대피시설, 비축창고 등(도시재생 안전확보 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계획(도시재생 안전확보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6. 협의회는 도시재생 안전확보 계획에 인정 등을 요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또는 건축물의 내진 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당해 건축주사 등 또는 소관 행정청에 협의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동의를 받은 당해 도시재생 안전확보 계획이 공포된 때에는 공포일에 사업 실시주체에 대한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다.
7. 도시재생 안전확보 시설인 비축창고 등과 관련하여 용적률의 특례를 둠과 동시에 협의회가 도시재생 안전확보 계획에 특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시에는 사전에 특정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를 받은 사항이 기재된 도시재생 안전확보 계획이 공포되었을 시에는 공포일에 특례와 관련된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조치하였다.

8. 협의회가 도시재생 안전확보 계획에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도시재생 안전확보 시설 정비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공원관리자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도시재생 안전확보 계획이 공포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도시재생 안전확보 시설에 대하여 당해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는 이를 허가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9. 토지소유자 등은 그 전원의 합의에 따라 도시재생 안전확보 계획에 기재된 사항과 관련된 대피경로의 정비 혹은 관리에 관한 협정(대피시설 협정)을 시정촌장의 인가를 받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가 공포 후에 토지소유자 등이 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하였다.
10. 지방공공단체는 도시재생 안전확보 계획에 기재된 사항과 관련된 비축창고를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소유자 등과 관리협정을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관리협정의 공포 후에 소유자 등으로 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
11. 동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중국 —

사법

■ 办理法律援助案件程序规定(司法部)

• 법률지원사건의 처리절차규정(사법부)

법률지원사건의 처리를 규제하고 법률지원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법률지원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에 의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다. 법률지원기구· 변호사사무소· 기층법률지원센터 및 기타 사회조직과 법률지원자가 법률지원사건을 처리할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신청자가 “법률지원조례”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법률지원을 신청한 경우, 의무기관소재지· 의무자주소지 또는 피신청인주소지의 법률지원기구에서 접수한다. “법률지원조례” 제11조에 따라 경제상황이 어려움을 원인으로 형사법률지원을 신청한 경우, 사건을 담당할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소재지의 법률지원기구에서 접수한다. 신청인이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법률지원기구에 신청을 한 경우, 제일 먼저 신청을 접수한 법률지원기구에서 접수한다. 법률지원기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7개 사업일 내에 심사를 해야 하고 법률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법률지원을 신청한 경우의 구체적인 조치와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조직의 의무와 책임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절차적인 면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조치를 취하였다.

본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修正案(全国人民代表大会)

•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개정안(전국인민대표대회)

본 개정안에서는 형사소송법에 관해 무려 110여 곳이나 개정하였고 개정된 조항이 전반 형사소송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개정 후 총 조항수가 290조에 달하며 새로운 편, 장, 절이 증가하였다.

본 개정안의 주요취지는 중국의 기본국정에 입각하여 중국 형사소송제도의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범죄에 대한 징벌과 인권보장의 관계를 조화롭게 처리하고 범죄에 대한 징벌과 사법공정을 추구하는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형사소송법의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장을 형사소송법 총칙에 규정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제도에서도 본 원칙을 구현한 것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중국 헌법의 중요한 원칙이지만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로 인하여 인권이 침해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조는 소송권리와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중국 법률제도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구체

적인 소송제도와 절차, 규정에서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장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1. 증거제도

증거제도 관련 내용 중, 강제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히 금지하였고, 불법증거배제제도를 확인하였다. 제도적으로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 및 기타 불법 증거수집행위를 차단하고 사법공정을 유지하고 형사소송참여자들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에 불법증거배제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강제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고 또 불법증거배제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고문에 의하여 불법 취득한 범죄용의자, 피고인 진술, 폭력 공갈 등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증언, 피해자 진술은 모두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 증인의 출정범위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었다. 즉, 공소인, 당사자 또는 변호인, 소송대리인이 증인증언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증인증언이 사건의 정죄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증인은 법원에 출정해야 한다.

2. 강제조치

구속조건과 관련하여 “사회 위험성이 발생하여 구속할 필요”가 있는 규정에 대해 상세히 세분화하여 규정하였다. 즉 (1)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경우, (2) 국가안전, 공공안전 혹은 사회질서의 유지에 현실적인 위험이 있을 경우, (3) 증거를 훼손·위조·은닉하거나 증인을 방해 또는 증인과 공동으로 증언을 위조할 경우, (4) 피해자, 신고인에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5) 자살 또는 도주를 시도한 경우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이 외에 범죄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존재하고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징역 이상의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전에 고의 범죄를 범하였거나 신분이 불확실한 범죄용의자, 피고인에 대해서는 체포해야 한다.

검찰원이 구속영장에 대한 인허가권을 정확히 시행하고 구속착오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원에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심사인허가 경우, 범죄용의자에 대한 심문절차, 변호를 맡은 변호사의 의견에 대한 청취절차 및 구속 후 수감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절차 등을 추가하였다.

거주감시에 대하여 보석조치와는 다른 적용조건을 규정하였다. 즉 거주지를 지정하여 거주감시를 집행하는 방식을 증가하였고 그 집행과 감독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강제조치를 취한 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는 예외상황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였는바 체포 및 거주지를 지정하여 거주감시를 취할 경우, 통지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24시간 내에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국가안전을 해치는 범죄와 테러활동범죄에 한하여 구속 후 수사를 방해함을 원인으로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3. 변호제도

변호제도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용의자와 피고인의 변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개정안은 변호인의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법률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법률지원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1) 변호사가 수사단계에 변호인의 명의로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다. 범죄혐의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위임할 수 있게 되었다. (2) 변호사가 구속 중인 범죄용의자에 대한 회견권리를 보장하였다. 국가안전을 위해한 범죄, 테러활동범죄, 그리고 특별히 중대한 횡령 범죄 사건을 제외하고 수사기간 내에서 변호사가 구속 중인 범죄용의자를 회견할 경우,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변호를 담당한 변호사는 변호사자격증, 변호사사무소증명서류와 위임서 혹은 법률지원공문을 소지하고 구속 중인 범죄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 구치소에서는 반드시 즉시에 회견을 안배하여야 한다. (3) 변호를 담당한 변호사가 범죄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때 감청하지 못한다. (4) 변호사의 사건서류 열람권을 보장하였다. 변호사는 기소 및 재판단계에서 모두 본

사건의 사건서류를 열람, 적록, 복사할 수 있다.

이외, 제34조를 개정하여 법률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1) 무기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으나 변호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반드시 법률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2) 범죄용의자가 법률에 규정한 법률 지원의 각 항 적용상황에 부합될 경우, 수사단계로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3) 공안기관,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은 변호사를 파견하여 법률지원대상자에게 변호를 제공할 것을 모든 법률지원기관에 통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4. 수사조치

이번 형사소송법의 수정은 범죄용의자 심문절차와 필요한 수사절차를 보완하였고 동시에 수사조치에 대한 규범과 감독을 강화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수사의 실체수요에 따라 구두로 범죄용의자를 소환하는 절차를 추가하였고, 특별히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중 소환, 강제소환의 시간을 적당히 연장하였으며 증인 신문 장소에 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 외에 인신검사절차를 보완하였고 조회, 동결하는 재산의 범위에 채권·주식·기금배당액 등 재산을 추가하였다.

5. 재판절차

간이절차의 적용범위를 조정하고 제1심 절차를 보완하였다. 간이절차재판의 사건범위에 대하여 기층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중에서 유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받거나 피고인이 자기가 실시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승인한 사건을 간이절차재판의 범위로 수정하였다. 또한 제1심 보통절차 중 사건서류의 송치제도, 개정 전의 준비절차, 양형과 관련된 절차, 심리중지절차 등 절차에 대해 보완하여 규정하였다.

제2심 절차에서 반드시 개정하여 심리하여야 하는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1) 상소인이 제1심 절차에서 인정한 사건사실,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출하면 정죄양형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건,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 등은 제2심 인민법원에서 반드시 개정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2) 사건이 반복적으로 환송 재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심 인민법원에서 원심 인민법원에 환송한 사건에 관해 원심 인민법원에서 재차 판결 후 피고인이 상소 또는 검찰원이 항소한 경우 제2심 인민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판결 또는 판정해야 한다. (3) 제2심 인민법원에서 환송한 사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범죄사실이 있어 인민검찰원에서 보충기소를 제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 인민법원에서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 처벌해서는 아니 된다.

부대민사소송(附帶民事訴訟)절차에 관해서 (1) 피해자가 사망 또는 행위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법정대리인, 근친속은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2) 부대민사소송의 원고인 또는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인민법원에서 부대민사소송사건을 심리할 경우 조정을 하거나 또는 물질적 손해를 입은 상황에 따라 판결할 수 있다.

사형사건 심리절차에 관해서 최고인민법원에서 사형사건을 재심리할 경우 반드시 사형을 비준하거나 비준 하지 않은 판정을 내려야 한다. 사형을 비준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최고인민법원은 환송 재심하거나 혹은 판결을 직접 정정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에서 사형사건을 재심리할 경우, 반드시 피고인을 신문하여야 하고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사형 재심리 과정 중 최고 인민검찰원에서는 최고인민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에서는 반드시 사형재심리결과를 최고인민검찰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판감독절차에 대해서도 보완하였다. 재판감독절차를 통하여 착오가 있는 판결과 판정을 시정하는 것이 재판감독절차의 취지이다. 본 개정안에서는 주요하게 제소사건의 결정에 대한 재심조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또 재심사건의 강제 조치결정절차, 원판결·판정의 집행중지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6. 집행절차

본 개정안에서는 잠정 감옥 외 집행규정을 보완하였고 인민검찰원의 감형·가석방·잠정 감옥외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

개정안에서는 잠정 감옥외 집행에 관한 결정, 비준과 적시수감 절차에 대해 규범화하였다. 범인이 이 제도를 악용하여 형벌을 도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잠정 감옥 외 집행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자가 불법수단으로 감옥외 집행을 한 경우, 감옥 외 집행기간을 복역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감옥외 집행기간에 도주한 경우, 그 도주기간은 복역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감옥·구치소에서 감형·가석방을 건의하였거나 또는 잠정 감옥외 집행에 관한 서면의견을 제기한 경우, 인민검찰원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 또는 비준기관에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7. 기타 특별규정

본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의 형사사건, 특정범위의 공소사건의 화해절차, 정신병환자의 강제의료절차 및 범죄용의자, 피고인이 도주, 사망한 사건의 불법소득 몰수절차 등 특정사건에 관한 절차규정을 추가하였다.

■ 拘留所条例(国务院)

• 구류소조례(국무원)

구류소의 설치와 관리를 규범화하고 구류자를 교육하고 구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구류소에 구류되는 자는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에서 행정처벌로 구류에 처한 자와 인민법원의 구류결정에 따라 구류에 처한 자이다.

국무원 공안부서가 전국의 구류소 관리사업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에서 본 행정구역의 구류소 관리사업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에서는 수요에 따라 구류소를 설치한다. 구류소의 설치와 취소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한다. 구류소의 경비는 본급 인민정부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구류소에서 피구류자에게 관련 권리와 의무를 고지해야 하며 구류소에 구류된 후 구류기관은 신속히 구류자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구류소에서 구류자가 잘못 구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구류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구류결정기관은 24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히 구류된 경우, 구류소에서는 구류를 해제하고 구류결정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구류자가 정신질환이 있거나 또는 전염병에 걸려 격리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및 병세가 급하여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에는 구류결정기관에 구류정지결정을 내릴 것을 건의해야 한다. 구류자는 구류기간 내에 통신권과 회견권이 있다. 구류자가 신고, 고발 또는 행정재심을 제기하여 행정소송 또는 구류유예를 요구할 경우, 구류소는 24시간 내에 서류를 관련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구류자의 구류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구류를 해제해야 하고 구류해제증명서를 발급하며 보관하였던 구류자의 물품을 반환한다. 본 조례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最高人民法院关于国家赔偿案件立案工作的规定(最高人民法院)

• 最高인민법원의 국가배상사건 입안업무에 관한 규정(최고인민법원)

본 규정은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리를 보장하고 법원의 적법한 판결을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본 규정에서 가리키는 국가배상사건은 국가배상법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38조에 규정된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에 관하여 배상청구자는 배상기관인 법원에 배상청구를 하거나 또는 국가배상법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배상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본 규정에 따라 입안해야 한다.

배상청구자의 배상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배상청구자가 법률에서 정한 적격자이고 또 신청을 접수한 법원이 배상의무기관이며 본 규정 제1조에 부합하는 경우에 입안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 외에도 배상청구자가 법원 배상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한 경우의 입안조건에 관해서도 규정하였다.

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입안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입안결정 후, 법원은 입안일로부터 5일 내에 배상청구자에게 사건수리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자는 법원의 사건기각결정에 불복할 경우, 국가배상법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배상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 본 규정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이와 동시에 “최고인민법원의 형사배상과 형사사법배상사건의 입안사업 잠정규정(시행)”은 폐지된다.

■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公安部关于加强对拒不支付劳动报酬案件查处工作的通知

• 最高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원 ·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 공안부의 근로보수 지급거절사건을 조사 · 처리할 것에 관한 통지

본 통지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개정안(8)”의 근로보수 지급거절죄에 관한 규정을 집행하고 근로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권익을 해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였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서는 사업장에서 근로보장관련 법률 · 법규와 규장 등의 적용상황을 감독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하여 사업장의 근로보수지급상황을 감독하며 근로보수 체불신고 등을 접수한다. 공안기관은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서에서 이송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근로보수 지급거절사건에 관하여 심사 후 입안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원은 근로보수 지급거절사건과 관련하여 입안감독 · 심사구속 · 심사기소 등을 진행해야 한다. 법원은 근로보수 체불사건을 접수해야 하며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서는 공안기관에 사건을 이송할 때 노동보수 지급거절 범죄에 관련된 여러 조사보고서, 범죄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서에서 이송한 사건을 수리해야 하며 본 기관의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수리 후 24시간 내에 관할권이 있는 부서에 이송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입안여부를 결정한 후 3일 내에 사건을 이송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서에 서면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경제 / 산업 / 통상

■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买卖合同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解释(最高人民法院)

• 매매계약분쟁사건의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해석(최고인민법원)

중국에서 근래에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절대적양도 매우 많았다. 특히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발생한 민사분쟁 중에서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제일 많았다. 중국 계약법(合同法) 제9장은 매매계약에 관하여 모두 46개의 조문을 규정하였으나 이 조문만으로는 복잡한 계약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날로 변화하고 있는 경제변화에도 대처하기 어려웠다. 특히 계약법시행이래 각급 인민법원에서는 계약법 제9장의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매매계약과 관련된 법조문에 대하여 다수의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에서는 본 사법해석을 제정하였다.

본 사법해석은 모두 8개 부분, 46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주요하게 매매계약의 성립 및 효력, 목적물의 교부와 소유권의 이전, 목적물의 훼손 멸실의 위험부담, 목적물의 점검, 채무불이행책임,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 특수한 매매계약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본 해석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예약, 예컨대 청약서, 주문서, 의향서, 승낙서, 비망록 등 예약의 법률효력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매도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현실 생활에서 많이 존재하는 위와 유사한 계약을 모두 무효로 할 경우 일으키는 파장을 감안하여 제정한 규정이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매매계약에 불공정한 약관을 규정하거나 또는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 “해석”에서는 공평원칙에 기하여 몇 가지 규정을 두었다. 즉 동산을 2중양도하여 여러 매수인이 모두 실제이행을 청구할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였다. 기적화물에 관하여 매도인이 계약체결 당시 이미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고의로 위험사실을 은닉한 경우,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한다. 목적물의 점검기간 또는 약정한 품질보증기간이 과도하게 짧아 매수인이 점검기간 내에 점검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점검기간은 매수인이 상품의 외관하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목적물에 대한 이의기간이 경과되어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 후, 반복하려고 하면 매도인이 자진해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나서는 이의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반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특약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였으나 매도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 있거나 또는 고의, 중대한 과실로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사실을 은닉한 사기행위로 간주하여 그 특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전자정보를 탑재한 유체물일 경우, 목적물의 인도는 일반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목적물이 실제 탑재물이 없는 전자정보인 경우, 계약당사자가 사실상 비록 전자정보를 탑재한 유체물을 교부하지 않았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전자정보제품을 교부하고 매수인이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전자정보제품의 매매에 관하여 전문적인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법 및 본 해석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실제로 탑재매체가 없는 전자정보제품의 교부에 관해서 본 해석에서는 매매 당사자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하고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보충협의를 할 수 있으며 보충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 또는 거래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의 방법으로도 여전히 목적물의 인도시기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 전자정보제품 또는 권리증서를 받은 때에 인도한 것으로 본다. 즉, 본 해석은 전자정보제품의 특수성에 따라 권리증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온라인상으로 정보제품을 받거나 또는 다운받는 2가지 인도방식을 확정하였다.

위험부담제도는 계약당사자사이에서 목적물이 훼손, 멸실될 경우 입게 되는 손해에 관하여 합리적인 배분을 하는 제도이며 매매계약의 핵심제도의 하나이다. 본 해석에서는 송부매매 중 “목적물을 운송해야 할” 경우의 운송인의 신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특정장소에서 목적물을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위험부담규칙을 제정하였다. 계약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목적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다고 규정한 경우, 매도인은 목적물을 지정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목적물의 훼손·멸실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였다. 기적화물매매 중 매도인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은닉한 경우의 위험부담에 관하여 보충규정을 제정하였다. 매도인은 계약이 성립될 때 목적물이 이미 훼손·멸실된 것을 알거나 알고 있으면서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목적물이 훼손·멸실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본 해석의 제30조는 과실상계, 제31조는 손익상계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계약법 제134조는 소유권유보부매매에 관한 규정이지만 너무 간결하여 활용도가 떨어진다. 본 해석에서는 제34조 내지 제37조에 걸쳐 소유권유보부매매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여 소유권유보부매매를 활성화하려고 했다.

■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因垄断行为引发的民事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最高人民法院)
 • 독점행위로 인한 민사분쟁 사건의 심리와 관련된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규정(최고인민법원)

독점행위로 인한 민사분쟁 사건의 심리와 관련된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독점법 사법해석”이라 칭함)은 독점행위로 인한 민사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독점법 사법해석” 제1조는 독점 민사분쟁 사건을 아래와 같은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하나는 독점행위로 인해 손해가 야기되어 발생하는 소송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소송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계약내용, 업종협회의 정관 등의 내용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소송이며 이러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계약분쟁과 관련된 소송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소송은 원고의 범위와 조건을 확정하였다. 독점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독점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있거나 또는 계약내용, 업종협회의 정관이 독점법을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증거만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여 독점행위를 한 자가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독점법 사법해석” 제2조는 원고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반독점 법률집행기관이 반독점행위에 대한 처리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였다. 환언하면 소를 제기함에 있어 법률이 규정한 사건의 수리조건에 부합되지만 하면 행정기관의 반독점행위에 대한 처리결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점법 해석” 제3조는 반독점 민사분쟁사건의 제1심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 및 중앙 직속 중점 개발도시의 중급인민법원 및 최고인민법원에서 지정한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의 기준을 거쳐 중급인민법원 이하의 기층법원에서도 제1심 반독점 민사분쟁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왜냐 하면 대다수의 반독점 민사분쟁사건은 전반 사회에 대한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인원이 충족한 중급이상의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점법 사법해석”은 사건의 관할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의 관할방식을 참조하였다.

본 사법해석에서 중요하게 다룬 한 가지는 증명책임에 관한 문제이다. 원고가 증거수집이 어렵고 독점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반독점 민사분쟁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독점행위의 피해자의 권익은 보호를 받기 어렵다. 본 사법해석은 반독점법,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 및 법률원칙에 근거하여 증명책임배분, 증명면제사실 및 전문가증거 등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그 중에서 증명책임의 배분에 관하여 “독점법 사법해석”에서는 독점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사자의 증명책임문제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예컨대, 엄중한 배타적 규정 또는 경쟁효과를 제한하는 특정 독점계약에 대해서는 피고가 그 계약이 배타적 규정 또는 경쟁제한 효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 증명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공익기업 및 독점경영자격을 가진 경영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건에서는 원고의 증명책임을 경감하였다.

이외에도 본 사법해석에서는 독점행위인의 민사책임부담, 소송시효 등 문제에 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두었다.

■ 关于期货公司变更注册资本或股权有关问题的规定(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 선물회사의 등록자본금 또는 지분 변경문제에 관한 규정(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선물회사의 행정허가 공개정도를 제고하고 선물회사의 등록자본금과 지분변경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허가법”, “회사법”, “선물거래관리조례”와 “선물회사관리방법” 등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본 규정에 따르면 출자주주는 그 지분구조를 최종이익보유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공개하고 다른 주주와의 특수 관계 또는 제휴행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단일 해외투자자가 선물회사 지분이익 또는 표결권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비율은 5%미만이어야 한다. 해외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분 참여한 중국 국내 법인이 선물회사 지분에 출자한 경우, 회사정관, 협정규정 등의 통제가능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하여 단일 해외투자자가 간접적으로 보유한 선물회사의 지분이익 또는 표결권 비율(양자 중 높은 쪽)은 5%미만이어야 하며 이에는 특수 관계도 합산한다.

본 규정 제7조 제2관에 의하면 해외투자자가 상장사 지분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선물회사의 지분이익 또는 표결권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해당 상장사의 지배주주, 최대주주, 실제 통제자가 중국 투자자인 경우와 해외투자자가 증권사 지분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선물회사의 지분이익 또는 표결권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해당 증권사가 증권중개, 증권자기경영, 증권자산관리 등 3가지 이상 업무자격을 확보한 경우에는 위의 비율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해외투자자가 중국 국내 선물사의 5%이상 지분이익 또는 표결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기간에는 해당 해외투자자는 물론 그 관련측도 더 이상 그 어떤 방식으로든 국내 기타 선물회사의 5%이상 지분이익 또는 표결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할 수 없다.

본 규정은 201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된다.

- 关于修改《证券发行与承销管理办法》的决定(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 “증권발행과 언더라이팅 관리방법”개정에 관한 결정(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본 결정에서는 IPO 언더라이팅, 정보공시, 관리감독, 산업자율 등 규정을 개정했으며 5개 영역에서 IPO 발행체제를 개혁했다. IPO 발행에서 가격결정은 가격문의단계를 건너뛰고 발행자와 주간사회사가 협상해 직접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본 개정 결정에 의하면 개정 후 제25조는 신규 상장사의 유통주 수량을 늘려 주식 공급부족을 효율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주식배정 비율을 높이며 원칙상 오프라인 배정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오프라인으로 발행한 주식의 매도 제한기한을 폐지하지만 가격문의대상과 발행자, 언더라이터는 오프라인 배정주식의 보유기한을 자율적으로 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개정 후 제14조는 가격문의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할 경우 발행자와 주간사는 초보적인 가격문의결과에 따라 직접 발행가격을 결정하거나 초보적인 가격문의를 통해 발행가격구간을 정한 다음 이 구간에서 누적입찰을 통해 발행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였다.

개정 후 제15조는 언더라이팅 과정에서의 정보공시 규범화 요구를 제기했으며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들이 정보를 확보하는 공정성을 강조했다. 발행자와 주간사는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제공하는 발행자 정보내용이 가격문의대상에게 제공한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정 후의 제53조는 IPO 신청서류를 접수해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법에 따라 발행자가 투자설명서를 언론에 발표하기 전까지 발행자와 발행 관련 당사자는 어떠한 공개방식이나 변칙적인 공개방식으로든 주식발행에 관한 홍보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이익관계자나 타인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관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그리고 발행자와 언더라이터가 발행과정에서 공시한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벽해야지 편파적으로 우위를 과장하고 리스크를 가볍게 언급하고 이미지를 미화해 투자자들을 오도해서는 안 되며 허위기록, 오도성 진술이나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도 안 된다. 성숙된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지정기한 내에 증권 발행에 대해 공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개정 후 제26조는 일부 오프라인 투자자들이 회사의 기본상황을 연구하지 않고 단순히 1, 2급 시장의 가격차를 목표로 오프라인 신주청약에 참여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기관투자자가 관리하는 증권투자상품은 투자설명서, 투자협의 등 서류상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1, 2급 시장의 가격차를 목적으로 신주 매수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주식투자계좌를 주식배정대상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정 후 제62조는 증권사가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허위적인 투자설명으로 투자자들을 오도하고 부당수단으로 타인이 가격을 제시하게 하거나 주식 매입을 신청하게 유도하며 자기자금으로 직접 또는 변칙적으로 오프라인 가격문의와 주식배정에 참여하거나 타인에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도록 종용 내지 낮은 가격 제시를 제한하는 등 심각한 규정위반행위를 범했을 경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회사의 증권 언더라이팅 업무를 최장 36개월간 중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본 결정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

■ 商务领域标准化管理办法（试行）（商务部）

• 상무 분야 표준화 관리 방법(시행)(상무부)

상무 분야의 표준화를 강화하고 상무 분야의 경영, 관리, 서비스 및 안전보장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상무 분야에서 표준화를 시행함에 있어서 통일적이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경쟁질서가 있는 현대화된 시장경제질서를 수립하고 대중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해야 하며 상업분야 산업의 발전에 유리해야 하며 국제표준과 국외 선진표준을 채택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성 업종표준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 방법에서는 상업분야에서 통일적이고 규범화된 기술요구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규범화된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특히 전국범위 내에서 상업분야에서 통일적인 기술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표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비록 국가표준이 없지만 전국의 상업분야에서 통일된 기술을 요구할 경우, 업종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국가표준 및 업종표준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기술표준이 완벽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급 상무주관부서에서 동급 행정주관부서에 상업분야 지방표준을 제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国家出资企业产权登记管理暂行办法（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 국가출자기업재산권의 등기관리 잠정방법(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

국가출자기업의 재산권 등기를 관리하고 기업재산권의 진실한 상황을 기재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업국유자산법”, “기업국유자산 감독관리 잠정시행조례” 등 법률과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하였다. 본 방법에서 국가출자기업재산권 등기는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관에서 본급 인민정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출자기업의 기업재산권 및 그 분포상황을 등기하여 관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 방법은 국가출자기업, 국가출자기업이 실제 지배권을 가진 역내 외 계열사 및 그 지분투자회사를 재산권 등록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국가출자기업 산하의 공공기관은 그 자회사로 간주되어 재산권을 등록해야 한다.

본 방법은 주요하게 재산권 등록업무와 등록범위, 각급 국유자산 관리감독기구와 국가출자기업의 업무기능, 재산권을 등록해야 하는 각종 경우와 국유자산이 점유한 재산권의 등록에 관한 주요내용·재산권 등록절차·재산권등록 감독검사·기록관리 및 책임제도 등을 규정하였다.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국유자산법”을 집행하고 출자자 책임을 이행하며 국유자산 기초관리업무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기업재산권 상황을 파악하고 기업재산권 분배를 최적화하며 국유경제 구조를 조정하고 국유자본의 합리적인 이동 메커니즘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기존에는 여러 유형의 출자자의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으나, 현재 경제상황에서 재산권 등록업무는 기존에 정부부처가 국유자산소유권의 귀속을 결정하였던 행위에서 국유자산 관리감독기구가 정부의 위탁으로 관리하는 국가출자기업의 재산권 및 그 분포상황을 등록 관리하는 행위로 변경되었다. 역내 외 기업의 재산권 등록관리는 일괄적으로 본 방법에 의해야 하며 그 등록범위는 국가출자기업이 실제로 지배하는 기업의 출자지분까지 확대되었다.

본 방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 机电产品国际招标机构资格管理办法 (商务部)

- 전기기계제품 국제입찰기관의 자격관리방법(상무부)

전기기계제품의 국제입찰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고 전기기계제품 국제입찰기구의 자격관리를 보강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시행조례” 등 법률과 법규 및 국무원 관련 부서의 입찰활동에 관한 행정감독 직책분담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본 방법은 중국 경내에서 전기기계제품의 국제입찰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구의 자격관리에 적용한다. 전기기계제품 국제입찰기구는 전기기계제품 국제입찰자격을 취득하고 국제입찰 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상무부는 전국의 국제입찰기구의 자격관리업무를 관할한다. 상무부 및 지방의 전기기계사업부서는 매 2년마다 국제입찰기구에 대한 자격심사를 시행한다. 국제입찰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격심사 신청일까지 2년 미만인 국제입찰기구는 그 자격심사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본 방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 关于扩大中央国有资本经营预算实施范围有关事项的通知 (财政部)

- 중앙 국유자금 경영예산시행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재정부)

2012년부터 공업정보부·체육총국 소속기업, 중앙문화기업 국유자산감독관리 지도소조사무실이 출자한 중앙문화기업, 위생부·국유자산위원회 소속의 부분 기업, 민항국 직속 수도공항그룹을 중앙 국유자본 경영예산 시행범위(구체적인 명단은 첨부파일로 공포하였음)에 귀속시켰다. 이번의 예산시행범위에 증가된 국유독자기업은 중앙 국유자본 수익수취정책 제3유형의 기업에 속하게 되며, 납부해야 할 이익은 세후 순이익의 5%이다. 예산시행범위에 포함된 소형·초소형 기업 기준에 부합되는 국유독자기업은 납부이익이 10만 위안을 넘지 못할 경우, 해당 연도에 이익납부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关于调整证券资格会计师事务所申请条件的通知 (财政部,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 증권자격공인회계사사무소의 신청조건 조절에 관한 통지(재정부,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본 통지에서는 공인회계사사무소가 증권·선물관련 업종에 종사함에 있어서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에 관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공인회계사사무소의 신청조건, 사무소의 공인회계사 인원수, 공인회계사 근무기간, 공인회계사사무소 순자산 등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고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 “회계사사무소가 증권선물업무에 종사하는 조건에 관한 통지”에 규정된 여러 사항을 개정하였다. 주로 위 통지의 제1조 내용을 개정하였다. 즉, 등록된 공인회계사의 인원수, 공인회계사의 연령, 회계사사무소 순자산에 관한 제한규정, 회계사사무소 직업보험관련 사항 등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제3조에는 제3관과 제4관을 증설하였다.

■ 关于转让自然资源使用权营业税政策的通知(财政部, 国家税务总局)

- 자연자원사용권양도에 관한 영업세정책에 관한 통지(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이미 공포한 “국가세무총국이 ‘영업세 세금목록주석’(시행)의 통지”[國稅發[1993]]149호] 제8조 “무형재산의 양도”의 세금목록주석에 “자연자원사용권의 양도”라는 小 목록을 증가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자연자원사용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해당 자연자원이 중국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명시하였다.

본 통지의 자연자원사용권의 양도는 권리가 자연자원의 탐사·채굴·사용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연자원사용권은 해역사용권·탐광권·취수권 및 기타 자연자원의 사용권을 가리키며 토지사용권은 제외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 정부 또는 자연자원 행정관리부서에서 자연자원사용권을 양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영업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 关于一般纳税人销售自己使用过的固定资产增值税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

- 일반 납세자가 본인이 기존에 사용했던 고정재산을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징수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가 자신이 사용하였던 고정자산을 판매할 경우, 고정재산이 납세자가 구매하였거나 직접 제조한 것일 때 소규모납세자에 해당하며, 일반납세자로 승인받은 후 그 고정자산을 판매한 경우 4%의 징수율로 반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본 공고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关于金融企业贷款损失准备金企业所得税税前扣除政策的通知(财政部, 国家税务总局)

- 금융기업이 대손충당금의 기업소득세 세전공제정책에 관한 통지(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정책성 은행·상업은행·재무회사·도시농촌신용사와 금융리스회사 등 금융기업이 대손충당금을 세전 공제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손충당금을 공제하는 대출재산의 범위, 대손충당금의 계산공식 및 수취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 세전공제를 허용하는 대출재산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금융기업이 당해 대손충당금 세전공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의 계산공식에 관해서도 규정하였다.

■ 关于进一步加强电信服务用户消费提醒工作的通知(工业和信息化部)

• 통신서비스고객소비 제시사업 강화에 관한 통지(공업과 정보화부)

통신서비스 제공업체가 현재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관련 내용을 명백히 고지하지 않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하는 현상에 입각하여 본 통지를 발하였다. 본 통지에서는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치중하여 그 동안 통신서비스제공자가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강제적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관련 요금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등 행위를 단속하고 소비자에게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수시로 고지하도록 하였다.

■ 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 촉진법(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본법은 청정생산을 목표로 하며, 자원의 이용효율을 제고하고 오염물의 생산을 감소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인체건강을 보장하며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 결정에서는 본법에 대하여 대폭적인 개정을 진행하였다.

본 개정결정에서는 제8조와 제9조를 합병하여 제8조로 하며 그 주요내용은 국무원의 청정생산종합협동부서가 국가 환경보호·공업·과학기술부서 및 기타 부서와 회동하여 국가 청정생산추진계획을 제정하고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공포한다고 규정하였다. 국가 청정생산추진계획은 청정생산의 목표·주요임무와 보장조치·자원이용효율·오염물배출정도 등에 따라 청정생산 중점영역과 중점항목을 결정한다.

제9조를 신설하여 청정생산에 필요한 예산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청정생산에 필요한 예산편성은 재정부와 청정생산 종합협동부서 및 국무원의 관련 기관에서 회동하여 결정한다.

제12조를 개정하여 국가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심한 제품에 대하여 퇴출제도를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는 퇴출된 생산기술·공예 및 설비 등에 관한 명부를 작성한다.

제33조는 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을 생산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제36조는 제17조 제2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에너지소비량 또는 중점 오염물 배출상황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제40조는 본 규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 개정을 하였다.

그리고 구법의 제27조와 제39조를 삭제하였고 제7조 제2관, 제13조, 제14조와 제15조 제2관의 “관련 행정주관부서”를 “관련부서”로, 제14조의 “과학기술행정주관부서”를 “과학기술부서”로, 제15조 제1관의 “교육행정주관부서”를 “교육부서”로, 제21조의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를 “공업부서”로, “표준화행정부서”를 “표준화부서”로, 제37조의 “품질기술감독행정주관부서”를 “품질기술주관부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进出口许可证证书管理规定(商务部)

• 수출입허가증증서관리규정(상무부)

개정된 “수출입허가증증서관리규정”은 2011년 12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 2011년 제58차 부서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고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원 “수출입허가증증서관리규정”은 폐지한다.

본 규정은 여러 가지 수출입허가증의 관리를 강화하고 규장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본 규정의 허가증은 상무부에서 제정하고 미 발급한 여러 가지 수출입허가성질의 증명·문서·원산지증서 등을 가리킨다.

증서발급기관에서는 매 분기에 허가증서를 확인해야 하며 허가증의 유형, 수량 등 출입고등기와 실제사용상황이 부합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출입고등기와 실제사용상황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시에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 关于修改《期货市场客户开户管理规定》的决定(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 “선물시장고객계좌개설관리규정”의 개정에 관한 결정(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본 결정에 따라 원 “선물시장고객계좌 개선키정” 제3조, 제8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3항을 개정하였다. 그 외에 제23조 제2관, 제42조를 삭제하였고 1개 조문을 신설하여 신 제42조로 하였으며 부칙을 삭제하였다.

제3조를 “중국선물보증금감독관리센터유한책임회사(이하 감독관리센터라고 칭함)는 고객의 계좌개설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선물회사가 고객을 위하여 여러 가지 선물거래소의 거래코드를 신청, 말소하고 거래코드와 관련된 고객의 자료를 변경할 경우, 통일적으로 감독관리센터를 통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개정하였다.

제10조 제2항은 “기업고객의 계좌개설대리인의 얼굴정면사진, 계좌개설대리인의 신분증 정반면 사본, 기업고객의 유효 신분증명서류 사본”으로 개정하였다.

제15조는 “선물회사는 기업고객을 위하여 거래코드를 신청할 경우,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센터에 기업고객의 유효한 신분증명서류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개정하였다.

■ 上市公司并购重组专家咨询委员会工作规则(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전문가 자문위원회업무규칙(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심사사업을 규범화하고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전문가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상장회사 인수합병 심사위원회 사업준칙(2011년 개정)”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하였다. 본 규칙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된다.

자문위원회의 전문가는 인수합병규칙의 제정,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중요한 문제 등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공한다. 또한 인수합병에 관련된 법률·회계·자산평가·산업정책 등에 관해서 의견을 제공하며, 상장회사의 파산, 재조정 등 사항에 관하여 평가심사의견을 제공한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소속 및 외부의 법률·회계·자산평가 등 영역의 전문가 또는 산업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전문가수는 3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법률·회계·자산평가 등 팀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각 팀에 팀장을 1명씩 둘 수 있다.

■ 关于修改《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第六十二条及第六十三条的决定(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 “상장회사인수관리방법”의 제62조와 제63조를 개정하는 것에 관한 결정(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본 결정에 따라 제62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인수인은 아래의 임의의 상황이 있는 경우에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에 청약방식으로 주식증가를 신청하는 것을 면제할 수 있다.

1. 인수인과 양도인이 해당 양도가 상장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의 변화를 초래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 상장회사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였고 인수인이 제출한 회사구제방법이 회사 주주총회의 허가를 받았으며 인수인이 소지한 당해 회사의 권익을 3년 내에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경우
3. 인수인이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비관련 주주의 허가를 받고 상장회사가 그에게 발행한 신주를 취득하여 그가 점한 당해 회사의 권익주식이 당해 회사 기발행주식의 30%를 초과하였고 인수인이 그에게 발행한 해당 신주를 3년 내에 양도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아울러 회사 주주총회가 그의 청약의 발송을 면제한 경우

4. 중국 증권감독위원회가 증권시장의 발전·변화에 수응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한 기타 경우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인수인이 제출한 면제신청서류가 규정에 부합하고 이미 규정에 따라 보고, 공시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를 접수한다.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보고,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면제신청을 접수한 후 20 사업일 내에 인수인이 신청한 사항에 관하여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면제를 취득한 경우, 인수인은 당해 주식증가행위를 완성할 수 있다. 인수인은 전관의 제3항에 규정한 해당 사항이 있으나, 그가 상장회사에서 발행한 신주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당해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신청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사가 인수인의 관련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규정에 부합되는 조사의견을 발표하고 아울러 상장회사에서 이를 공개한 후 인수인은 주식 발행 행정허가 결정과 증권등기결제기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후의 제6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임의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청약면제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에서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사업일 내에 별도의 이의가 없으면 관련 투자자는 증권거래소와 증권등기결제기관에 주식양도와 명의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에서 그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 투자자는 본 방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정부 또는 국유자산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고 국유자산의 무상이체·변경·합병으로 투자자가 한개 상장회사의 기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점하는 권리주를 소지하게 된 경우
 2.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정가로 특정 주주의 주식을 환매하여 자본이 감소되고 당사자가 보유한 당해 회사의 권리주가 당해 회사의 기발행 주식의 30%를 초과하게 된 경우
 3. 증권회사·은행 등 금융기구가 그 영업범위 내에서 합법적 대리판매, 대출 등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그가 한개 상장회사의 기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행위나 의도가 없고 합리한 기간 내에 관련 주식을 비관련 측에 양도할 방안을 내놓은 경우
 4. 중국 증권감독위원회가 증권시장의 발전, 변화에 수용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한 기타 경우
- 아래의 임의의 상황이 있는 경우, 관련 투자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면제신청을 면하고 직접 증권거래소와 증권등기결제기관에 주식 양도와 권리변경등기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1. 한개 상장회사에서 보유한 권리주가 당해 회사의 기발행 주식의 30% 또는 그 이상에 달하였고 상기 사실 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는 매 12개월 내에 당해 회사의 기발행주식의 2%미만이 증가하는 경우
2. 한개 상장회사에서의 보유권리주가 당해 회사의 기발행 주식의 50%에 달하거나 또는 초과한 경우, 계속 당해 회사에서의 권익을 증가하여도 당해 회사의 상장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3. 승계로 인해 보유하게 된 한개 상장회사의 권리주가 당해 회사의 기발행 주식의 30%를 초과하게 된 경우

관련 투자자는 전항에서 규정한 권익변동행위를 완료한 후 3일 내에 주식증가상황을 공고해야 하며, 변호사는 관련 투자자의 권익변동행위와 관련하여 규정에 부합하는 전문 조사자를 발표하고 상장회사는 이를 공시해야 한다. 관련 투자자가 전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집중 가격경쟁방식으로 주식을 증가함에 있어서 누계증가 주식비율이 당해 회사의 기발행 주식의 1%를 초과할 때마다 해당 사실이 발생한 당일에 상장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상장회사는 그다음 거래일에 관련 주주의 주식증가 상황을 공고해야 한다. 관련 투자자가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집중 가격경쟁방식으로 주식을 증가함에 있어서 누계증가 주식비율이 당해 회사의 기발행 주식의 2%를 초과할 때마다 사실 발생당일과 상장회사가 관련 주주의 회사 주식 증가 공고를 발표한 당일에는 주식을 증가하지 못한다. 전항 제1호에서 규정한 2%미만 증가 주식의 매각 제한기간은 주식 증가행위를 완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다.

■ 商业特许经营信息披露管理办法(商务部)

• 상업 프랜차이즈 정보공개관리방법(상무부)

본 방법은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지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업프랜차이즈 관리조례”(아래에서 “조례”라 칭함)에 근거하여 제정하였다. 중국 경내에서 상업 프랜차이즈 활동을 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본 방법에서 관련 측이란 프랜차이즈의 모회사나 그 자연인, 프랜차이즈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부 또는 대부분 주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동일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프랜차이즈와 기타 회사의 주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가리킨다.

프랜차이즈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업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체결하는 30일전에 프랜차이즈에게 본 방법 제5조에서 규정한 정보를 서면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즈가 기존의 프랜차이즈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프랜차이즈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프랜차이즈에게 비밀유지협의를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는 계약체결과정에서 알게 된 상업비밀은 그 프랜차이즈계약의 성립여부를 불문하고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프랜차이즈계약이 종료된 후, 프랜차이즈가 계약관계로 인해 알게 된 프랜차이즈의 상업비밀은 계약 만료 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프랜차이즈가 본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은닉하거나 허위정보를 공개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수 없게 된 경우,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 방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 专利标识标注办法(国家知识产权局)

• 특허표식표기방법(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 표식표기방법 제3조는 특허 표식, 표기 행위에 관한 관리 감독 권한이 각 지역 지적재산권국에 있다고 규정하였다. 특허등록 후 특허유효기간 동안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거쳐 특허표식권을 가진 피허가자는 제품의 포장 또는 설명서 등에 특허표식을 표기할 수 있다. 발명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을 중국어로 표시해야 하며 표시방식은 대중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특허권을 취득한 후 특허유효기간 내에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 특허표식표기권을 취득한 피허가자는 그의 특허제품,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취득한 제품, 그 제품의 포장 또는 그 제품의 사용설명서 등 자료에 특허표식을 표기할 수 있다. 특허표식을 한 경우 아래의 내용을 표명해야 한다. 중국어로 특허권의 유형을 표명해야 하며 국가지적재산권에서 수여한 특허권의 특허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특허출원중일 경우 해당 제품의 포장 또는 설명서에 중국어로 특허종류와 출원번호를 명시해야하고 「특허출원중」, 「특허 미취득」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본 방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 中央投资项目招标代理资格管理办法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 중앙에서 투자하는 프로젝트 입찰대리자격 관리방법(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정부의 투자 효율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에서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입찰대리기관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입찰대리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입찰 투찰법”, “중화인민공화국 입찰 투찰법 시행조례”, “국무원의 투자체제개혁에 관한 결정” 및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중국 경내에서 중앙투자항목 입찰 대리업무에 종사하는 입찰대리기관은 본 방법에 따라 자격인증과 관리를 해야 한다. 위임입찰방식을 취하는 중앙투자항목은 자질을 구비한 중앙 투자항목 입찰대리기관에 위탁하여 관련 입찰사항을 취급해야 한다. 본 방법의 중앙투자항목은 중앙예산 내의 투자, 특정건설기금, 국제금융조직 및 기타 외국정부의 대출금 및 중앙재정에서 투자한 고정자산투자항목을 가리킨다. 본 방법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中央企业境外投资监督管理暂行办法 (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 중앙기업 경외투자 감독관리 잠정 방법(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가 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중앙기업 경외투자 감독관리 잠정 방법”을 발표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국유자산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기업국유자산 감독관리 잠정조례” 등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제정하였다. 본 방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방법은 중앙 기업 경외투자의 위험관리, 평가 심사 등 관리제도는 국가 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중대한 투자프로젝트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을 경우, 또 투자액 혹은 투자대상주권구조가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을 경우 적시적으로 국가 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본 방법은 중앙기업 및 각급 독자기업이 국외 및 홍콩, 마카오, 대만에 대한 고정자산투자, 주권투자 등 투자행위는 모두 감독관리 범위에 속한다고 규정했으며 중앙기업은 원칙적으로 경외에서 주요사업 외 투자를 하지 못하며 특별 원인으로 투자가 확실히 필요할 경우 국가 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专利实施强制许可办法 (国家知识产权局)

• 특허실시 강제허가방법(국가지적재산권국)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시행하는 강제허가의 부여, 비용재결과 종료절차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및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은 강제허가 청구, 강제허가 사용료의 재결청구 및 강제허가 종료청구를 수리, 심사 및 결정한다. 강제허가 부여, 강제허가 사용료 재결 및 강제허가를 종료할 것을 신청할 때, 중국어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본 방법에 따라 제출하는 여러 가지 증서와 증명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증서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중국 경내에 거주지 또는 영업장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 기타 단체에서 강제허가를 신청할 경우, 특허대리기구에 의뢰하여야 한다. 특허대리기구에 의뢰하여 강제허가를 대행하게 한 경우, 의뢰서를 제출해야 하고 의뢰서에 위임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수인이며 또 특허대리기구에 의뢰하지 않은 경우, 특별성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제1당사자를 대표자로 한다.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 특허신청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이 특허를 행사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행사하지 않은 경우, 특허행사조건을 구비한 조직이나 개인은 특허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허가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독점행위로 인정된 경우, 그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허행사조건을 구비한 단체나 개인은 특허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허가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긴급 상태나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는 특허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적재산권국에 그가 지정한 특허실시조건을 구비한 단체에 강제허가를 부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청구자 또는 특허권자가 공청을 요구하는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은 공청회 개최 7일 전에 청구자, 특허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를 개최할 때, 청구자, 특허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자는 해명 또는 대질할 수 있다. 공청회에서는 공청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공청회의 참가자는 확인 후 오류가 없으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특허법 제49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허가의 부여를 건의하거나 또는 청구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강제허가를 부여하는 결정에서 규정한 강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강제허가의 부여대상인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가 종료되었거나 무효 선고를 받은 경우에 강제허가는 자동 종료된다. 본 방법은 2012년 5월1일부터 시행된다. 2003년 6월 13일에 공포된 “특허시행 강제허가방법”과 2005년 11월 29일에 공포된 “공공건강문제와 관련된 특허시행 강제허가방법”은 폐지된다.

- 中华人民共和国军人保险法(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 중화인민공화국 군인보험법(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군인의 사망보험, 퇴역양로보험, 퇴역의료보험과 종군 미취업배우자보험의 설정, 보험료납부와 보험이전 등에 관하여 본 법을 적용한다. 군인보험법은 총 9장 5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본 법은 총칙·군인사상보험·퇴역양로보험·퇴역의료보험·종군 미취업 군인배우자보험·군인보험기금·보험가입과 감독·법률책임과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본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법은 국가가 군인보험사업의 발전과 군인보험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군인이 전쟁·공무 등 원인으로 순직한 경우, 인정된 사망성질과 상응한 보험금 기준에 따라 군인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군인이 전쟁·공무·질병 등 원인으로 불구가 되어 장애판정을 받으면 장애등급과 상응한 보험금 기준에 따라 군인장애보험금을 지급한다. 전쟁과 공무 등 원인으로 불구가 되어 이미 장애판정을 받은 군인이 현역에서 퇴역한 후 상처가 재발된 경우, 상응한 장애대우를 받을 수 있다. 군인의 사상보험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개인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군인 현역기간 중의 기본양로보험료는 중앙재정에서 부담한다. 군대와 지방에서 군인보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군인이 퇴역 후 국가에서 규정한 양로보험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종군한 군인의 미취업 배우자를 위하여 양로보험, 의료보험 등에 가입하게 한다. 종군한 군인의 미취업배우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양로보험료와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국가에서 상응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교육

- 关于进一步落实从土地出让收益中计提教育资金相关政策的通知 (财政部)
 - 토지양도수익에서 교육자금을 적립하는 정책의 시행에 관한 통지(재정부)

이 통지의 목적은 2012년 국가재정에서 지출하는 교육비용이 국내생산총액의 4%를 도달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 교육자금은 규정에 따라 마련해야 한다. 각급 재정기관에서는 토지양도예산을 제정할 때 교육자금을 공제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단독으로 교육자금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자금계제방법, 비율을 정해야 한다. 토지양도금에서 계제한 교육자금은 농촌기초교육의 지원에 사용된다. 각급 재정부서에서는 동급 교육주관부서가 현지 교육사업의 필요에 따라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자금의 관리를 강화하여 교육자금을 정부수지에 단독으로 기입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농수산축업

■ 农业部关于推进节水农业发展的意见(农业部)

• 농업부의 절수농업의 추진에 관한 의견(농업부)

본 의견에서는 현재 중국 농업이 직면한 상황에 관하여 여러 데이터로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절수농업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현재 중국 농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부족한 문제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농업생산기술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양의 곡물을 재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농업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며 전국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맞는 실험기지를 세우고 각 지역에 적합한 농식물을 재배하고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 新饲料和新饲料添加剂管理办法(农业部)

• 신 사료와 신 사료첨가제 관리방법(농업부)

신 사료와 신 사료첨가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양식 동물제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료와 사료첨가제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본 방법에서 “신 사료”는 중국 경내에서 새로 연구개발하고 아직 사용인가를 받지 못한 단일 사료를 가리킨다. “신 사료첨가제”는 중국 경내에서 새로 연구개발하고 아직 사용인가를 받지 못한 사료첨가제를 가리킨다.

본 방법에 따르면 신 사료 및 신 사료첨가제에 관해서 농업부에서 심사한다. 전국 사료평가심의위원회는 신 사료 및 신 사료첨가제의 안전성, 유효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신 사료 및 신 사료첨가제를 생산하기 전에 연구자나 생산기업은 농업부에 신청하는 동시에 신 사료 또는 신 사료첨가제 신청 자료와 샘플을 제공해야 한다. 농업부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5개 사업일내에 신청 자료와 샘플을 평가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해야 한다.

생산기업은 신 사료나 신 사료첨가제를 생산하기 전에 농업부의 관련규정에 따라 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신 사료첨가제는 이외에도 관련 제품의 인가코드를 취득해야 한다. 신 사료나 신 사료첨가제의 검측기간은 5년이며 신 사료나 신 사료첨가제의 증서 발급일로부터 기산한다.

신청인이 관련 상황을 기만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신 사료나 신 사료첨가제 평가를 신청한 경우, 농업부에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인가하지 않는다. 해당 신청인은 1년 내에 신 사료나 신 사료첨가제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다. 본 방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농업부가 2000년 8월 17일에 공포한 “신 사료와 신 사료첨가제 관리방법”은 폐지된다.

■ 饲料和饲料添加剂生产许可管理办法(农业部)
 • 사료와 사료첨가제 생산허가 관리방법(농업부)

사료와 사료첨가제의 생산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사료와 사료첨가제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료와 사료첨가제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중국 경내에서 사료와 사료첨가제를 생산하는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사료첨가제와 첨가제 혼합사료의 생산허가증은 농업부에서 심사 발급한다. 단일사료, 농축사료, 배합사료 및 농후사료 보충제의 생산허가증은 성급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에서 심사 발급한다. 성급 사료관리부서는 하급 사료관리부서에 단일사료, 농축사료, 배합사료 및 농후사료 보충제의 생산허가 신청에 대한 수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농업부는 사료와 사료첨가제 생산허가증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료첨가제와 첨가제 혼합사료 생산허가에 대한 기술평가 업무를 처리하게 한다.

사료와 사료첨가제 생산기업의 설립을 신청한 경우, 성급 사료관리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개 사업일 내에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관련 자료와 심사, 심의의견을 농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농업부는 자료와 심사, 심의의견을 접수한 후, 사료와 사료첨가제 생산허가증 전문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10개 사업일 내에 생산허가증 발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성급 사료관리부서에 송부한다.

단일사료, 농축사료, 배합사료 및 농후사료 보충제 생산기업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성급 사료관리부서는 수리한 날로부터 10개 사업일 내에 서면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심사에 합격되면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동시에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10개 사업일 내에 생산허가증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본 방법에서는 이외에도 생산허가증의 변경과 보완발급 및 감독관리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본 방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 / 해양

■ 海洋观测预报管理条例（国务院）

• 해양관측예보관리조례(국무원)

중국은 해양관측예보관리를 강화하여 해양관측예보 활동을 규범화하고, 해양재해예방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제건설, 국방건설 및 사회발전을 목적으로 “해양관측예보 관리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동 조례는 2012년 6월 1일부로 시행한다.

본 조례는 해양관측예보관리를 강화하여 해양관측예보 활동을 규범화하고, 해양재해 예방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제건설, 국방건설 및 사회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기타 관할해역에서 해양관측예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해양관측예보사업은 기본적인 공익사업으로서, 국무원과 연안의 현급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해양관측예보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소요 경비는 각자의 재정예산에서 부담한다. 국무원 해양 주관부서는 전국 해양관측예보 업무를 주관하고 국무원 해양 주관부서 각 해역의 지소는 본 조례와 국무원 해양 주관부서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관할해역의 해양관측예보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연안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해양 주관부서는 각자 행정구역 인접해역의 해양관측예보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해양 주관부서는 전국 해양관측망 계획을 수립한다. 전국 해양관측망 계획을 제정하기 전 국무원 관련부서와 관련 군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원 또는 국무원 위임부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연안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해양 주관부서는 전국 해양관측망 계획과 각 행정구역 인접해역의 실제상황에 따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해양관측망 계획을 수립하고, 본급 인민정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본급 인민정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하고 동시에 국무원 해양 주관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양관측망 계획을 변경할 경우, 계획 수립절차에 준하여 승인기관에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관측망 계획을 작성할 때, 종합적, 합리적인 배정을 원칙으로 하여 중복건설을 피해야 한다. 해양관측망 계획을 제정할 때 연안도시와 인구 밀집지역, 공업단지, 해변 중점사업지역, 해양재해 발생지역 및 기타 해양 중요지역을 중점으로 작성해야 한다.

기관 또는 개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기구, 외국조직 및 개인에게 국가기밀에 속하는 해양관측자료 또는 성과를 제공할 경우, 관련 해양 주관부서는 그 불법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불법소득은 몰수하며 범죄행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관련 해양 주관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예보 및 해양재해경보 정보를 공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를 중지시키고 경고를 주며 2~10만 위안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치안관리법규를 위반한 경우, 치안관리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행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사법해석

■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内幕交易、泄露内幕信息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내부자거래와 내부정보유출에 관한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응용에 대한 일부 법률적 문제의 해석

현재 증권, 선물거래는 정보화 등의 특징이 있고 범죄자들이 보통 인터넷, 3G통신 등 선진적인 기술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부자거래와 내부정보유출에 관한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응용에 대한 일부 법률적 문제의 해석”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증권, 선물거래 범죄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첫 번째 사법해석으로서 현재 사법 진행과정에서 쟁의가 비교적 많고 많이 나타나는 법률적용문제를 해결하는데 취지를 두었다.

사법해석은 내부자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고 불법으로 내부정보를 취득한 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규정하였다. 내부자의 범위에는 절취, 사취 등 부정방법이나 도청, 유혹, 정탐 또는 암거래 등 불법수단으로 내부정보를 얻어낸 사람, 특수신분, 즉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의 친족 혹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타 사람, 내부정보에 대해 민감한 시기에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과 연락, 접촉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뒤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직접 주식에 투자했거나 또는 타인에게 그 행위를 하도록 명시, 암시했을 경우 또는 내부정보를 누설해 타인이 주식에 투자했거나 비밀정보와 관련된 증권, 선물거래를 했으며 이러한 거래행위가 정당한 이유와 정보 내원이 없을 경우, 내부정보 불법 취득자로 인정한다. 이처럼 특수한 신분이나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내부정보를 누설하거나 암시하여 해당 정보와 관련된 주식이나 선물을 거래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

이 규정은 또 내부자거래와 관련된 피고인에게 항변권을 보장해주고 규정이 지나치게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면책 대상의 범위도 명시했다.

보건복지

■ 抗菌药物临床应用管理办法(卫生部)

• 항균약물 임상응용관리방법(위생부)

의료기관의 항균약물 임상응용관리를 강화하고 항균약물임상응용행위를 규범화하며 항균약물 임상응용능력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임상응용과 의료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하였다. 본 방법에서 규정한 항균약물은 세균·마이코플라스마·클라미디아·리케차·스피로헤타·진균 등 병원미생물로 인한 감염성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을 가리킨다. 단 결핵병, 기생충병과 각종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성질환을 치료하는 약물 및 항균작용이 있는 중약제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생부에서 전국 의료기구의 항균약물임상응용에 대해 감독 관리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위생부서에서 본 행정구역 내의 의료기구의 항균약물임상응용을 감독 관리한다. 본 방법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항균약물 임상응용에 관한 등급관리제도이다. 향후 중국은 안전성·유효성·세균 내약 상황과 가격요인 등 4가지 원칙에 따라, 항균약물을 제한사용·비제한사용·특수사용으로 분류한다. 또한 의약사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합격해야만 부동한 등급의 항균약물 처방권과 조제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본 방법이 발표됨에 따라 중국에서 출공 주목을 받고 있던 항균약물 사용, 즉 항생제 사용이 법제화되고 제도화됐다.

본 방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 女职工劳动保护特别规定(国务院)

• 여성근로자 노동보호특별규정(국무원)

여성근로자의 신체적 특성, 직업특성 등을 고려하고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다. 중국 내의 국가기관·기업·사업조직·사회단체·개인경제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에게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각 사업장은 여성근로자의 임신이나 육아, 모유수유 등을 이유로 감봉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출산휴가는 98일로 정하고 출산 전에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난산인 경우 15일간의 휴가를 더 받게 되고 여러 쌍둥이인 경우 한 명당 15일의 출산휴가를 추가한다. 여성근로자가 임신 4개월 미만에 유산한 경우 15일의 출산휴가를 주며, 임신 만 4개월 이후에 유산한 경우에 42일의 출산휴가를 준다. 여성근로자 출산휴가 기간의 출산수당은 이미 생육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사용자의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임금에 따라 생육보험기금에서 지급하며, 생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 임금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다. 임신 7개월 이상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연장과 야간근로를 금지하고 임신한 근로자의 출산 전 병원 검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킨다. 이번 규정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 최고 30만 위안의 벌금을 물리고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사업장 폐쇄 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공공정책

■ 校车安全管理条例(国务院)

• 통학버스안전관리조례(국무원)

통학버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본 조례의 통학버스는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운행허가를 취득하고 의무교육단계의 학생통학에 사용되는 좌석 7석이상의 버스를 가리킨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에서는 본 지역의 상황에 근거하여 합리하게 통학버스의 수량과 노선을 정해야 하며 특히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통학버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본 조례에서는 학교통학버스의 통행우선권을 명확히 규정한 외에도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학생들의 교통사고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우선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본 조례에서는 정부 및 관련 기관의 통학버스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통학버스안전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지방 정부는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에 입학하거나 기숙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며 기숙학교 입학에 대하여 확실한 보장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을 취하여 통학버스서비스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급 이상 지방정부가 행정구역 내 학교통학버스 안전관리사업을 책임질 것을 명확히 했으며 학교통학버스에 안전관리원을 배치하고 관리원을 지명 파견해 학생들을 돌보도록 할 것을 규정하였다. 위법적으로 통학버스를 사용하거나 안전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등 경우에 법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조례는 2012년 4월 5일부터 시행된다.

■ 公共租赁住房管理办法 (住房和城乡建设部)
 • 공공임대주택관리방법(주택과 도농건설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평한 분배와 규범적인 운영과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공공임대주택의 배분, 운영, 사용, 퇴출과 관리에 관하여 본 방법을 적용한다. 본 방법의 공공임대주택은 건축기준과 임대료의 상한가를 설정하고 임대주택신청조건에 부합되는 도시와 진의 중하위소득계층에 포함되는 생계곤란가정, 신규 취업한 무주택직원과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외지의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가리킨다.

공공임대주택은 신축, 개축, 매입, 장기임대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달하고 정부에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사회단체에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국무원의 주택과 도농건설주관부서에서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의 주택과 도농건설주관부서에서 본 행정구역 내의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계약의 임대료는 시, 현급 인민정부에서 허가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자 및 그가 위탁한 운영단체는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보수정비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에서 투자한 공공임대주택의 보수정비비용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부대상업시설의 임대료로 해결하며 부족한 부분은 정부예산으로 충당한다. 사회단체에서 투자한 공공임대주택의 보수정비비용은 소유권자 및 그가 위탁한 운영단체에서 부담한다. 임차인이 누적하여 6개월간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퇴거하지 않을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소유권자의 위탁을 받고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단체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면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시, 현급 인민정부의 주택보장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본 방법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환경

-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许可管理办法(环境保护部)
 -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허가관리방법(환경보호부)

환경오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능력을 제고하고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의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보류가 필요한 행정심사비준 프로젝트의 행정허가 설정에 대한 결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하였다.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전문적으로 환경오염처리시설의 운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본 방법에서 환경오염처리시설운영이라 함은 전문적으로 오염물의 처리와 처분과 관련되는 사회화 영리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쌍방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환경오염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본 방법에 따르면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활동에 대하여 운영자격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사업에 종사하는 업체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증을 신청하고 자격증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처리시설운영을 신청하는 자는 기업법인자격 또는 사업단위법인자격이 있어야 하고 규정된 기술인원 및 현장인원의 수를 만족해야 하며 1년 이상 환경오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 등급분류 기준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본 방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

재정 / 조세

- “Taxation Laws Amendment Act 24 of 2011”
 - Date of commencement: 10 January 2012, unless otherwise indicated.
 - Amends ss. 1, 2, 3A, 5 and 9 of the Transfer Duty Act 40 of 1949;
 - Amends ss. 1, 5, 6, 6quat, 6quin, 7, 8, 8A, 8B, 8C, 8E, 9A, 9C, 9D, 10, 11, 11D, 12C, 12E, 12G, 12H, 12I, 12J, 13, 13quat, 14, 18, 18A, 22, 23, 23B, 23K, 24F, 24I, 24J, 24JA, 25BA, 30B, 35, 35A, 36, 37J, 37K, 37L, 41, 42, 44, 45, 46, 47, 64C, 64D, 64E, 64F, 64G, 64H, 64J, 64K, 68, 80T, 101 & 103, paras 2C, 4 & 6 of the Second Schedule, paras 1, 2, 9 & 18 of the Fourth Schedule, paras 3, 6, 8 & 10 of the Sixth Schedule, paras 1, 2, 7, 9 & 12A of the Seventh Schedule, paras 5, 12, 19, 20, 43, 51A, 55, 57, 64B, 74, 75, 76, 76A, 77 & 78 of the Eighth Schedule and para 8 of the Tenth Schedule, inserts ss. 6A, 6quin, 6sex, 8EA, 9H, 9I, 10B, 12O, 23K, 37JA, 37N, 64EA & 64FA, para 12C in the Seventh Schedule and para 76B in the Eighth Schedule, repeals s. 11C, Part IX of Chapter II and Part XIII of the Eighth Schedule and substitutes ss. 9, 22B, 31, 37M, 57 & 64I and para & 43A of the Eighth Schedule to the Income Tax Act 58 of 1962;
 - Amends s. 47B and Schedule 1 to the Customs and Excise Act 91 of 1964;
 - Amends ss. 1, 2, 8, 8A, 10, 11, 13, 14, 16, 18, 22, 23 & 58 and Schedule 1 and inserts s. 18B in the Value-Added Tax Act 89 of 1991;
 - Amends s. 4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s Act 4 of 2002; amends ss. 1, 4, 5 & 8
 - substitutes s. 8A of the Securities Transfer Tax Act 25 of 2007;
 - amends ss. 8A, 10 & 15 and Schedule 2 to the Mineral and Petroleum Resources Royalty Act 28 of 2008;
 - amends s. 4 and 14 of the Revenue Laws Amendment Act 60 of 2008;
 - repeals ss. 55 & 79 and amends s. 69 of the Taxation Laws Amendment Act 17 of 2009;
 - amends ss. 6, 18, 19, 46, 137, 138 & 145 and repeals ss. 41, 42 & 56 of the Taxation Laws Amendment Act 7 of 2010
- “세금법률 개정법, 201”
 - “소득세법”, “부동산 이전세법”, “관세 및 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실업 보험법”, “광물자원 및 석유자원 로열티 법”, “관세수입원법 개정법”, “세금 법률 개정법” 등의 일부 조항에 대해 개정, 대체 및 삽입.

주요 내용: 가장 많은 개정 부분은 법인과 관련된 세금 조항으로서, 같은 계열사내에서의 거래(intra-group transactions), 혼합 증권 과세, (hybrid equity instruments), 제3자 지원에 의해 구매된 주식에 관한 규정 (the regulation of third party backed shares), 대주주 보유주식의 무상제공 또는 저가양도에 대한 과세 (transfer pricing), 피지배 외국법인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한 개정이다.

또한 세법상 그동안 자본 재분배(capital distribution)라는 개념을 자본회수(return of capital)라는 개념으로 대체하였다. 배당금에 관하여 Secondary Tax on Companies라고 하던 개념을 배당금 세금(Dividends Tax)으로 대체하고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10%가 적용이 된다.

■ Additional Adjustments Appropriation Act (2011/12 Financial Year) 1 of 2012

- Date of commencement: 26 March 2012

• “특별 예산 조정법 (2011/12 재정연도)”

- 2012년 제1호 신규 법률.

- 제정 배경

동 법은 남아공 정치적 경제적 수도인 요하네스버그와 프리토리아 구간의 하우텡주 고속도로 확장 보수 공사 (Gauteng Freeway Improvement Project)에 소요된 금액에 대해 통행세 부과 여부 등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있었는데, 동 공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교통부의 재정적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추가 예산으로 R5.75 billion을 책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추가 예산은 남아공 국립도로 에이전시 (South African National Roads Agency Limited: SANRAL)로 이체되어 도로 확장 및 보수공사 대금으로 지급된다.

원래 이 공사는 주(Province) 도로 공사로 시작되었다가 다시 국도와 고속도로를 관장하는 SANRAL로 이전하였는데, 동 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보증 (guarantee)를 발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만약 SANRAL이 한달이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공사대금에 대한 모든 잔금을 정부가 일시불로 즉시 지불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대안으로 해당 구간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여 공사대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다.

- 주요 내용

① 동 법은 2개 조항으로 구성된 아주 간단한 법률로서 제1조는 추가예산액 승인에 관한 것이고, 제2조는 법의 이름에 관한 것이다.

② 제1조 (1)항은 교통부의 추가 예산으로 R5.75 billion이 국회 회계연도 2011/12년에 책정되어 국고에서 지불하도록 규정함.

제1조 (2)항은 해당 추가예산액은 SANRAL로 이전하여 공사대금과 관련된 채무를 정산하도록 규정함.

제1조 (3)항은 해당 금액이 2012년 3월 31일 이후 송금되거나 지출발생이 그 이후에 되었더라도 회계연도는 2011/12년으로 할 것을 규정함.

■ Finance Act 2 of 2012

- Date of commencement: 27 March 2012.

• “재정법, 2012”

- 2012년 제2호 신규 법률.

- 제정 배경

“공공 자금 관리법 (Public Finance Management Act of 1999)” 제34조 (1)항는 (1) 지출이 국회 예산안에 승인된 이상으로 초과지출이 된 경우, 이에 대해 국회 (지방 예산의 경우 지방 의회)가 추가 예산으로 초과 지출분에 대해 국고 지출로 승인한 경우, (2) 지출이 다른 이유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금액을 국회가 추가 예산으로 승인한 경우 국고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4조 (2)항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초과 지출분을 추가 예산으로 통과시키지 않는 경우 해당 초과지출분은 다음해 회계연도나 미래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회계연도에 포함되지 않는 초과지출분에 대해 국회 회계 상임위원회는 국회에 해당 초과분에 대해 추가예산으로 책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승인하지 않고 초과 지출분에 대한 즉시 조사를 권고하거나, 초과지출을 환수하는 동안 해당 정부 부처에서 지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초과 지출분에 대해 추가 예산으로 책정하도록 권고하는 기준은 (1) 승인되지 않는 초과 지출을 승인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 (2) 초과 지출이 해당 부처의 필할 수 없는 본질적인 서비스에 부합되게 사용되었는지, (3) 추후 미승인된 초과 지출 방지를 위해 회계 담당공무원이 교정적 방안을 채택했는지, (4) 초과 지출분이 국회 예산안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해당 부처의 목적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 (5) 초과 지출 승인에 있어서 부정 부패나 사기 등이 연루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 주요 내용

제2조 - (a) 항: 재정연도 2003/4년 ‘재향군인 및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ce and Military Veterans)’에서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평화 유지 작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충분한 예산안을 확보하지 않으므로 인해 R 40, 292, 419.92의 초과 지출분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초과지출액에 대해 추가 예산으로 확정되어 채택됨.

(b)항: 두번째 초과지출분은 ‘재향군인 및 국방부’의 재정연도 1998/99년에서부터 2003/04년 사이에 발생하였는데, 해당 금액은 군사 박물관과 관련된 자금으로서 군사 박물관과 관련된 사항은 그동안 ‘재향군인 및 국방부’ 관할이 아니었다가 국방법 (Defence Act 42 of 2002)에 의해 군사 박물관은 국방부에 편제하므로 초과 지출이 발생하였다. 또한 1998/99년에서 2000/01년도에 복사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초과 지출로서 해당 복사기들은 정부 주관하는 입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차되었다. 또한 1999/2000년 회계연도에 해당 부의 가구 수리에 소요된 초과 비용으로서 해당 건 또한 공공 입찰을 거치지 않고 지출되었다. 총 합산 초과 지출분은 R20, 625, 352.33으로서 해당 초과 지출분에 대해 해당 부에서 사용하지 않고 반환한 금액에서 추가예산안으로 재배정하도록 함.

(c)항: 교정부 (Department of Correctional Services)의 재정연도 2008/9년에 발생한 초과 지출로서 ‘공무원의 단체 교섭계약서’에 따라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휴가대신 초과 근무수당지급을 의무로 규정하므로 인해 R483, 821, 478.78의 초과 지출액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초과 지출액은 추가 예산으로 책정되지 않고, 동 초과분은 해당부의 차기 회계연도에 포함하되, 2015년 4월 1일 이전까지 하도록 하였다.

제3조는 해당 초과분을 추가 예산으로 승인하더라도 예산안을 벗어난 초과 지출을 승인한 전, 현직 공무원에 대해 환수에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제한하거나 그 권리를 격하시키지 않음을 규정함.

■ Division of Revenue Act 5 of 2012

- Date of commencement: 17 May 2012.

- Repeals the Division of Revenue Act 6 of 2011 with the exception of ss. 15 and 38(1).

• “국세 분배법, 2012”

- 신규 법률.

- 제15조와 제38(1)조를 제외한 ‘국세 분배법, 2011’ 폐지.

전년도에 거두어 들인 국세 및 지방세를 각 회계연도에 중앙정부, 주정부, 그리고 각 지방 정부에 형평성에 맞게 책정, 분배 및 분배된 금액의 집행에 따른 중앙 정부, 주 정부, 그리고 각 지방 정부의 의무 및 책임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동 법률은 매년 새로 제정이 되므로 기존의 ‘국세 분배법 2011’의 구조 및 내용이 같으며, 2012년 법률 제정시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확장된 공공 공사 계획(Expanded Public Works Programme: EPWP)”에 따라 고용 창출시 인센티브로 주, 지방 정부에 지급될 정부 보조금중에서 2011/12년 지급되는 않은 부분을 재산정하였다.
- ② 2012년 국세분배법은 제15조에 subsection을 추가하여 조건부로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의 구성에 개정이 있을 경우 이를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하고, 법사 위원회는 14일안에 해당 개정에 대해 코멘트한 이후에 해당 개정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였다 [제15조 3항 (b)].
- ③ 각 주의 인프라와 관련하여 조건부로 할당된 금액(conditional allocations)과 관련,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의무사항을 신설하였다 (제13조).
- ④ EPWP 보조금과 관련된 모든 조항은 삭제되었으나, 기수령한 EPWP 보조금은 수령당시 법규정에 규정한 조건을 따른다.
- ⑤ “국세분배법, 2011”에 있는 모든 요하네스버그에서 프리토리아를 잇는 고속열차인 ‘하우트레인(Gautrain)’과 관련된 조항은 보조금 지급 단계를 벗어 났으므로 일괄 삭제하였고, 2011년 지방선거 관련 비용 또한 삭제되었다.

경제 / 산업 / 통상

■ Second-hand Goods Act 6 of 2009

- Date of commencement of all sections of the Act which have not yet been put into operation: 30 April 2012

• “중고품 거래법”

- 시행되지 않은 모든 조항의 실행

- 법률 배경:

- ① 중고품 거래법은 2009년 9월 30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법률로서 그동안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어왔으나 이번에 전 조항이 시행되었다. 동 법률은 작물(도난품) 거래 방지를 위해 중고품 거래상이나 전당포 등의 사업 운영자에게 중고품 거래시 매매자 신원확인 및 도난품이 아니라는 증거자료 첨부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제정되었다.
- ② 남아공은 그동안 도난 및 강도 행각을 통해 절취한 물품이 중고 가게나 전당포 등지에 매매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고철 금속, 중고 자동차 거래, 구리 전선 절도, 절취된 휴대 전화가 무더기로 거래, 절취된 가전 제품의 거래 등으로 문제를 앓고 있었는데, 이를 규제하기 위해 동 법률을 제정하여 이러한 작물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 ③ 법이 규정한 물품의 중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상 (dealer)로 등록을 해야 하며, 동 신청은 경찰청에 하며 5년 유효의 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 ④ 또한 제한된 물품(controlled metal)을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재활용업자(recycler)로 등록하여야 광물, 금속 등의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다. 실형을 받았거나, 파산자, 미성년자, 임시비자로 거주하는 외국인 등은 재활용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 ⑤ 거래상은 반드시 거래 내용을 기록하고 구매자의 신상 파악 및 신분증 사본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거래를 하는 거래상의 경우 추가적으로 자동차 차체번호, 엔진 번호, 마일리지, 차량 색깔, 차량의 흡집 여부등을 추가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 ⑥ 휴대폰을 거래하는 거래상은 휴대기기의 고유 번호, 제조 회사, 모델명, 생산연도, 특이 사항등을 추가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 ⑦ 거래상은 거래 물품이 도난이나 절취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물품을 거래해서는 안된다.
- ⑧ 동 법은 경찰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작물 거래가 의심이 되는 경우 해당 상점, 점포, 창고 등을 수색, 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동 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부분적 법률 시행일자

- ⑥ 2011년 12월 10일자로 통제 물품(controlled metal)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모든 조항과 부칙 2가 시행되었다. 부칙2는 통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제 물품에는 구리, 알루미늄, 아연, 크롬, 납, 백색 합금(white metal), 니켈, 텅스텐, 주석, 페로 바나듐 (ferrovanadium), 페로 실리콘 (ferrosilicon), 페로 크롬 (ferrochrome), 놋쇠 (brass), 동, 코발트와 귀금속법 (Precious Metals Act 27 of 2005)에 규정된 귀금속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금속이 전부 또는 일부 포함된 모든 물품을 지칭한다.

⑦ 2012년 1월 16일자로 제22조 (1)항 (중고품/ 고물상 거래상에게 이름이나 주소가 위조되었다든지, 매물로 나온 물건이 도난품일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된 경우, 도난 물건임을 숨기기 위해 물건의 일부가 개조, 변조 된 경우 등 이를 경찰에 신고할 의무), 제25조 (4)항 (중고품/ 고물상 거래인은 재생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재생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부칙 2에 열거한 “controlled metal”를 재생할 수 있는 기구나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 등이 시행되었다.

교통 / 항공 / 선박

■ Civil Aviation Act 13 of 2009

- Date of commencement: 29 March 2012.

• “민간 항공법, 2009”

-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일부 조항 (117조-121조; 125-127조) 시행.

- 일부 조항 시행 배경

“민간 항공법, 2009”는 2010년 3월 31일자로 시행되었는데, 동 법률 제정으로 ‘항공법’ (Aviation Act 74 of 1962), ‘민간 항공 위반법(Civil Aviation Offences Act 10 of 1972)’, ‘남아공 민간 항공 관리청법(South African Civil Aviation Authority Act 40 of 1998)’등이 단일 법률로 통합함과 더불어 민간 항공 발전과 더불어 이를 효율적으로 규율하고자 제정되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동 법률 시행에서 제9조, 제12조-제14조, 제30조-제68조, 제117조-제121조, 제125조-제127조 등이 제외되어 시행되었는데, 이번에 제117조-제121조와 제125조-제127조가 시행되었다.

- 시행 조항의 주요 내용

- ① 민간항공기는 민간항공청에서 임명한 감독관(Inspector)의 감시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항공규정이 준수되지 않았을 시 항공기 운행정지, 면허 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② 제117조는 행정처분 (administration decision)은 ‘행정 정의 증진법 (Promotion of Administrative Justice Act: PAJA)’에 규정된 행정 처분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며, 따라서 민간항공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법이 규정한 보호 절차 등을 따르게 된다.
- ③ 감독관의 결정에 대해 항소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민간항공청 청장 (Director)에게 해야 하며, 청장은 3일 이내에 해당 행정처분을 수정, 철회 또는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 청장의 처분에 대해 불응한 경우는 5일 이내에 항소 위원회(Appeals Committee)에 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④ 제119조는 민간항공내의 의료 검증 (medical certificate)의 취소등과 관련된 행정행위인 경우 결성시 청장은 2명의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그 중 한명은 항공 의약에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항소에 불응한 경우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고등법원에 제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⑤ 제125조-제127조는 항소 위원회(Appeals Committee)의 결정 및 항소 위원회에 관련된 일반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 / 경찰 / 교정

■ Independent Police Investigative Directorate Act 1 of 2011

- Date of commencement: 1 April 2012.
- Amends ss 1 & 2 and repeals Chapter 10 (ss 50-54) of the South African Police Service Act 68 of 1995;
- Amends s 1 of the Witness Protection Act 112 of 1998;
- Amends s 18 of the Domestic Violence Act 116 of 1998, and
- Amends s 1 of the Regulation of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and Provision of Communication-related Information Act 70 of 2002.
- “독립 경찰 내사국법, 2011”
- 동법은 2010년 7월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하여 2011년 5월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으나 시행일을 미루어 오다가 2012년 4월 1일로 시행일을 공포함.
- 동법 제정으로 “남아공 경찰법” 제1조와 제2조 및 제10장 (제55조-제54조) 폐지; “증인 보호법” 제1조 개정; “가정폭력법” 제18조 개정; “통신 감청 규칙 및 통신관련 정보 개정법 규칙, 2002” 제1조 개정.

- 취지 및 주요 내용

- ① 동법은 헌법 제206(6)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헌법의 동조항은 경찰관에 의해 행해진 범죄나 부패 등과 관련된 진정서가 제기 되었을 경우 이를 수사할 수 있는 독립 경찰 내사국(Independent Police Investigative Directorate: IPID)을 입법 제정을 통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② 동법의 목적은 경찰 (South African Police Service:SAPS) 및 각 지방 정부 경찰 (Municipal police services)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감독 및 감시할 수 있는 독립 내사국을 설치하는 데 있다.
- ③ 동법의 제정에 따라 기존의 ‘독립 진정국(Independent Complaints Directorate: ICD)’를 대체하며, 기존의 ICD 보다 보다 광범위한 범위내에서 경찰내의 부정 부패 수사 및 경찰관에 의해 행해진 범죄를 수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④ 기존의 ICD 체제하에서는 경찰 비리 보고나 수사 요청을 하는 것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동법하에서 경찰서장이나 경찰관은 경찰관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알게 되었을 때 즉시 ID에 대해 IPID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9조).
- ⑤ 이러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 및 감옥형의 형벌을 받게 된다 (제33조).
- ⑥ 또한 기존의 수사를 통해 각 지방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해당 경찰관에 대해 처벌에 대해 권고(recommendations)를 통보하여도 해당 경찰청에서 이를 시행하는데 소극적이었는데,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 동 법에서는 IPID의 징계 권고사항(disciplinary recommendations)을 시행하도록 해당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30조).
- ⑦ IPID가 집중적으로 수사할 내용은 경찰서내에 수감 중 사망하거나 사망사건이 경찰과 관련된 경우, 경찰의 총기 사용과 관련된 사건 및 사고, 경찰서 수감중 발생한 강간 사건이나 경찰관에 의해 행해진 강간 사건, 경찰관의 직무 수행 중 또는 경찰서내에서 행해진 폭행이나 고문과 관련된 사건 등이다.
- ⑧ IPID는 경찰의 부정 부패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수사할 권한을 갖는다.

- ⑨ IPID는 ICD가 경찰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평이나 진정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것을 이러한 행정적 절차나 서비스에 관련하여서는 각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다루도록 하고, IPID는 위의 열거한 보다 심각한 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다루게 된다.
- ⑩ 따라서 동법은 독립 경찰 내사국 설립을 위한 규정 및 내사국 역할, 집행위원 및 자문 기관 설립, 수사 담당자의 임명 및 권한, 경찰 및 지방 경찰의 협력 및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Correctional Matters Amendment Act 5 of 2011

- Date of commencement: 1 March 2012 except s. 9 which only comes into operation with regard to ss. 46, 47, 49, 49A, 49B, 49C, 49D & 49F of the Correctional Services Act 111 of 1998.
- Amends the Table of Contents and ss 1, 3, 5, 10, 17, 38, 39, 42, 54, 70, 75, 90 & 134; and
- Substitutes ss 46, 47, 49, 73 & 79, adds ss 49A, 49B, 49C, 49D & 49F and inserts s 128A in the Correctional Services Act 111 of 1998.
- Repeals ss 48 & 49 and amends s 87 of the Correctional Services Amendment Act 25 of 2008.
- “교정시설관련 개정법, 2011”
- 2012년 3월 1일자로 동법 제9조를 제외하고 시행함.
- ‘남아공 교정서비스법’의 목차, 그리고 제1조,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54조, 제70조, 제75조, 제90조, 제134조 개정.
- ‘남아공 교정서비스법’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73조, 제79조 대체 및 제49A조, 제49B조, 제49C조, 제49D조, 제49F조 첨가 및 제128A조 삽입.
- ‘남아공 교정서비스 개정법, 2008’ 제48조와 제49조 폐지 및 제87조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 ① 동법 제9조는 재유치 구류자(remand detainee)에 대한 안전한 억류와 복지와 관련된 ‘남아공 교정서비스법’ 제 5장의 내용을 대체하는 것으로 동 조항의 시행은 제외가 되었다.
- ② 동법 제14조는 ‘남아공 교정서비스법’ 제79조를 대체하는 것으로 건강상의 이유로의 가석방(medical parole)의 내용을 개정하였다. 기존의 건강상의 이유로의 가석방은 가석방 위원회(parole board)에서 결정하였으나, 이를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진 가석방 위원회(medical parole board)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 ③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의 가석방은 기존에 수감자를 치료했던 의사만이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수감자 자신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수감자를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 ④ 건강상의 이유로의 가석방 신청 조건은 첫째, 병의 말기증상에 있거나 병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일할 수 없거나 또는 병으로 인해 수감생활을 감당할 수 없거나 일상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둘째 재범확률이 낮으며, 셋째 수감자를 감시, 보호, 치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채비가 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⑤ 건강상의 이유로의 가석방된 후 수감자가 병에서 회복된 경우 기존 법률하에서는 형무소로 복귀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개정하여 단순히 병에서 회복되었다고 반드시 복귀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하였다.

광물 / 자원 / 에너지

■ National Energy Act 34 of 2008

- Date of commencement of ss. 1, 2, 3, 4, 5, 20 & 21: 1 March 2012.

• “남아공 에너지법, 2008”

- 2012년 3월 1일자로 동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20조, 제21조 시행.

- “남아공 에너지법, 2008”은 광물에너지장관으로 하여금 에너지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법제로서 특히 매년 각 산업분야별 및 가정 용도로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을 산정하므로써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하는 종합적 ‘에너지 계획서 (Integrated Energy Plan)’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연구 및 에너지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에너지 관련 법제들 사이에 있는 틈새(gap)를 메우도록 하고 있다.

- ‘에너지 계획서’는 방법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 체계 분석의 골격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에너지 사용자와 에너지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에너지 사용량을 조달하기 위해 대체 에너지 또는 에너지 공급을 위해 대체 투자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 6조 1항은 장관은 일년에 한번씩 에너지 계획서를 발전, 재점검 등을 통해 이를 관보에 발간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 시행 조항들은 동법 내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개념을 정리한 제1조가 시행되었고, 제2조는 동법의 목적 (Objects of Act), 그리고 제2장 (제3조-제5조)에서 에너지 공급, 최대활용 및 사용과 관련하여 정보 수집 (제3조), 에너지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안전, 보건 및 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해 해당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였다 (제4조). 또한 제5조는 모든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affordable prices)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 채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동법 제20조는 관련 법제를 위반시 부과할 수 있는 벌금 및 구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최대 2백만 란드(2 million rand)의 벌금형이나 최대 5년의 감옥형이 단독 또는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군사 / 무기 / 총기류

■ Firearms Control Amendment Act 28 of 2006

- Date of commencement of s. 1 (c), (f), (h) & (l) and ss. 3, 6, 7, 12, 13, 14, 15, 19, 26, 27, 49, 50 & 51: 1 March 2012
- Amends s. 1 (inserts the definition of 'calibre'), (f) (amends the definition of 'firearm'), (h) (substitutes the definition of 'juristic person') and (l) (inserts the definition of 'professional hunter'), ss. 4, 7, 8, 18, 19, 91, 93, 148 & 150; inserts s. 16A and substitutes ss. 17, 30 & 149 of the Firearms Control Act 60 of 2000.
- Firearms Control [Amendment] Regulations, 2012 published and Firearms Control Regulations, 2004 amended with effect from 1 March 2012.
- “총기 통제 개정법”
 - 2012년 3월 1일자로 동법 제1조 (c), (f), (h) & (l)항, 제3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시행 (1조(b)항, 제2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52조 등은 2011년 1월 10일자로 기시행).
 - “총기 통제법, 2000”의 1조 개념(definition) 조항에 ‘calibre’, ‘professional hunter’라는 개념 삽입, ‘firearm’ 개념 수정, ‘juristic person’에 대해 새 개념으로 대체.
 - “총기 통제법, 2000”의 제4조, 제7조, 제8조, 제18조, 제19조, 제91조, 제93조, 제148조, 제150조 내용 수정 및 제16A조 신설 조항 삽입 및 기존의 제17조, 제30조, 제149조를 새 규정으로 대체.

- 주요 개정 내용

- ① 동법은 그동안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화기중에서 전장(前裝) 화기 또는 탄약을 총구로 재어 발사하는 총(Muzzle loading firearms)에 대해서도 총기로 분류하여 보유시 적법한 면허증을 발급받도록 개정하였다. 면허증과 관련된 조항은 작년 1월 10일 시행이 되었으므로 2012년 1월 9일까지 (1년간) 보유한 전장 화기에 대해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 ② 또한 총기류 매매와 관련하여 dealer로서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총기류 범위안에 전장 화기와 개인 소장을 목적으로 매매되는 총기 등도 포함을 하였다.
- ③ 만약 전장화기를 소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최고 15년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 ④ 전문 사냥꾼(professional hunters)으로 자격증을 소유한 경우 자동 화기가 아닌 경우 권총이나 라이플 등을 면허증을 취득한 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제12조). 그러나 전문 사냥꾼나 운동 선수(sportsperson)의 경우 해당 협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 ⑤ 개인 소장 목적으로 총기를 소유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소장 근거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역사적, 기술적, 교육적, 문화적, 투자 목적 등으로 총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제13조). 그러나 소장품으로 보유한 경우 총기는 반드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 ⑥ 면허증 취득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을 의무화하였고, 적법한 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면허증이 취소되기 최소 90일전 연장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 Military Veterans Act 18 of 2011

- Date of commencement: 1 April 2012.
- Repeals 'the Military Veterans' Affairs Act 17 of 1999'.
- “재향 군인회법, 2011”
- “재향 군인과 관련된 법, 1999” (Military Veterans' Affairs Act, 1999) 폐지

- 법률 제정 배경

재향군인회법은 이전 법률인 ‘재향군인과 관련된 법’이 재향군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명목상의 법률로 존재하였고,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 주는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신 제정법은 재향 군인의 복지 실행을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향군인의 복지와 관련하여 국고에서 많은 예산 지출이 예상되는 바 동 법률 실행에 있어서 인근 국가인 짐바브웨의 무가베 정권이 백인정부에 대하여 싸웠던 퇴역 군인들을 보상하기 위해 무력으로 토지를 수용하여 재 분배와 같은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난을 받아 작년 후반기에 법제정이 되었으나 시행일을 미루어오다가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률은 인종분리정권하에 백인정부를 대항하여 싸웠던 흑인 민주 투사를 재향군인(Veteran) 또는 퇴역군인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각종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제정 목적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6.25 전쟁 참전용사와 같은 백인 퇴역 군인회에 소속된 백인 멤버들은 동법의 수혜자에서 제외된다.

- 주요 내용

- ① 제3조1항에 의하면, 배상(Compensation)의 복지 후생(welfare benefit)보다는 과거 희생에 대한 보상(reparation)이라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거 민주화 투쟁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가운데 있는 퇴역 군인에 대해서는 특별 배려 차원에서 구제나 특혜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제3조1항(c)은 정규군출신이 아닌 민주 투사 출신으로 재향군인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력 테스트(means test)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민주화 투쟁에 참여했던 재향군인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된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다.
- ③ 제4조는 대통령을 모든 재향군인의 후원자로서 ‘가장 최고의 지원자(Patron-in-Chief)’로 규정하고 있다.
- ④ 제5조에 복지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전상사자에 대한 보상, 심리 치료, 직업 제공, 비즈니스 기회 제공 또는 비즈니스 보조, 주택, 의료, 교육, 연금, 교통비 보조, 장례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에 의하면, 퇴역군인들의 복지와 관련한 비용을 국방부를 통해 타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⑤ 제9조에 의하면, 재향 군인의 복지를 위해 상임 자문회의(Advisory Council on Military Veterans)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동 자문회의는 국방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⑥ 제11조에 의하면, 상임 자문 기관(Advisory Council on Military Veterans)은 10-15명으로 구성되며, 구성원의 50% 이상은 퇴역 군인(Veterans)이어야 하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⑦ 자문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제15조)

■ National Conventional Arms Control Amendment Act 73 of 2008

- Date of commencement: 16 April 2012.

- Inserts ss. 24A, 25A & 25B; substitutes ss. 13, 16, 17, 23 & 27; amends ss. 1, 3, 4, 5, 9, 12, 14, 15, 19(3), 22, 24 & the long title of the National Conventional Arms Control Act 41 of 2002.

• “국가 재래식 무기 통제 개정법, 2008”

- 삽입 조항: 제24A조, 제25A조, 제25B조; 대체 조항: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23조, 제27조; 개정 조항: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9(3)조, 제22조, 제24조, 법률의 긴 제목.

- 법률 개정 배경

국가 재래식 무기 통제법은 핵무기 이외의 전통방식 또는 재래식 형태의 모든 무기 생산 및 수출을 투명하게 통제하기 위해 관련 허가증 발급 절차 및 요건 등을 제시하고 무기 거래와 관련된 국제 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무기 거래에 대한 통제 및 감독 기관으로 ‘국가 재래식 무기 통제위원회(NCAC: National Conventional Arms Control Committee)’을 구성하도록 하고, NCACC는 동법의 권한이외에도 해외 군사파견 조력 규칙(Regulation of Foreign Military Assistance Act) (RFMA)과 용병활동 금지법(Prohibition of Mercenary Activities Act) 등을 규정의 준수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NCACC의 구성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내각 멤버중 7명의 장관과 3명의 차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현재 법무장관이 의장으로 있다 (제5조).

NCACC는 매달 정기적 모임을 통해 국방부에 접수된 무기 거래 허가 심의를 통해 승인 및 거절을 하며, 제23조 규정에 의해 매년 국회에 일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보고서 안에는 무기 수출입국명, 무기 형태 및 가격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허가신청의 종류에는 마케팅 허가증(marketing permit), 계약 허가증(Contracting permit), 수출 허가증(export permit), 수입 허가증(import permit), 운송 허가증(conveyance permit) 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NCACC의 기능을 강화를 통해 남아공내의 무기 거래를 통제하고, 현 무기 산업 상황과 맞도록 개정을 하였다.

- 주요 개정 내용

- ① 개념 조항에서 주요 개념 개정은 그동안 재래식 무기(conventional arms)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는데, 이를 통제 물품(controlled items)으로 바꾸고, 통제 물품은 관보에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통제 물품을 보면 무기(weapons), 군수품(munitions), 폭약(explosive), 폭탄(bombs), 군사 장비(armaments), 무기 탑재의 차량과 비행기, 선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② 또한 수출, 수입, 허가증, 재 수입, 무기 교환 거래 등의 용어 대한 개념이 수정되었다.
- ③ 그동안 사용되었던 군사 및 민간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이중 사용 가능한 물품(dual-use good)의 개념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이러한 이중 사용가능한 물품은 신고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상업목적의 수출입인 경우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 ④ 개정 3조는 기존 법률 4조의 NCACC 기능을 확대하여 용병 사용관련 규칙 및 분쟁지역이 있는 국가에서 일정한 행위를 규제하는 규칙등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 ⑤ 무기 사용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무기 수령국가는 남아공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경우 최종 사용자 확인증(end-user certificates) (제17조) 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러한 조항에 대한 선별적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입 물품이 수입국에 보관되어 있다가 더 큰 무기 시장으로 나아가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 ⑥ 대체된 제23조는 그동안 분기별 보고를 일년 단위 보고로 개정하였고, 또한 보고해야 할 내용과 보호받는 정보를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⑦ 새로 삽입된 제24조는 기존의 형벌에 추가적으로 허가 받지 않고 통제된 물품을 보유한 경우나 국내에서의 무허가 거래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이 정한 행정 절차나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상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⑧ 제25조는 남아공 경찰국과 국방부가 긴급 작전이나 긴급 파견시 허가 요건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 Military Ombud Act of 4 of 2012

- Date of commencement: 10 May 2012

• “군사 옴브즈만법, 2012”

- 신규 법률.

- 동 법률의 제정 배경은 군내부 또는 군관련 고충이나 불만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군 사기 향상과, 현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군 내부 문제를 다루는데 있다.

- 주요 내용

동 법률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법률이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다.

- ⑨ 군사 옴브즈만 제도의 목적은 군과 관련된 불만이나 고충에 대해 공정, 신속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사하여 해소하는데 있다 (제3조).
- ⑩ 고충이나 불만은 반드시 서면으로 옴브즈만에 접수해야 하고, 현역이나 전역군인은 업무조건과 관련하여, 민간인은 군 관련된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 (제4조).
- ⑪ 옴브즈만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이되며 최소한 군관련 업무 10년이상 종사한 사람중에서 임명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는 단임 7년으로 규정하고있다. 부 옴브즈만은 업무 경력 8년이상으로 대통령은 옴브즈만과 협의하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옴브즈만의 보수는 고등법원 판사보다 적지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조).
- ⑫ 대통령은 옴브즈만의 부적격, 자격 미달,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임할 수 있으며, 옴브즈만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개월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조 6항, 7항).
- ⑬ 옴브즈만의 주요 권한과 기능은 서면으로 접수된 고충과 불만에 대해 이를 등록하고 조사 해야 하며, 관련 당사자들에게 접수된 고충이나 불만을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진술서 제출이나 출두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군 당사자의 고충의 경우 중재, 화해,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충이나 불만을 조사한 후 고충이나 불만을 기각 또는 수용할 수 있으며, 장관에 고충이나 불만에 대한 대안책을 권고할 수 있다.
- ⑭ 옴브즈만은 군사법원 판사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이나, 군사법원이나 민간법원에 계류중인 사안이나 이미 군사법원이나 민간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다 (제7조 1항). 또한 고충이나 불만이 명령 체계를 무너뜨리거나 불복종에 해당하는 사안, 내부적 고충처리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등의 경우 신청서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7조 2항).
- ⑮ 법률은 옴브즈만의 독립성,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8조). 군 내부적으로 옴브즈만의 활동을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옴브즈만은 1년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장관은 이를 국회에 상정한다 (제11조).
- ⑯ 국회상정된 후 법률의 제목을 옴브즈만(ombudsman)에서 약어인 옴브(Ombud)로 대체하였다.

정보 / 통신 / 기술

■ Promotion of Access to Information Act 2 of 2000

- Exemption of certain private bodies from compiling a manual from 1 January 2012 to 31 December 2015 published.

• “정보 공개 증진법, 2000”

- “정보 공개 증진법, 2000”에 의거 공공 단체, 공기업 등 이외의 민간 업자에 대해서도 대중에게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의무조항의 적용을 2012년 1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므로, 적용 시한을 연장하였다.

- “정보 공개 증진법, 2000” (Promotion of Access to Information Act 2 of 2000) (이하 “PAIA”. 또는 “정보 공개법”라 칭함)은 2000년 2월 2일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얻어서, 2001년 3월 9일에 시행이 되었다. 그동안 공공 기관, 대기업에 적용되었던 것을 소규모의 개인 사업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

- 주요 취지: 제정 목적을 규정한 서문을 보면, 정보 공개법은 남아공 헌법 제32(1)(a)조에 규정된 국민의 알권리, 즉 “모든 국민은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 뿐만 아니라 기본권 보호나 행사에 필요한 경우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everyone has the right of access to any information held by the state and any information held by another person that is required for the exercise or protection of any rights)” 라고 규정한 헌법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따라서 중앙 정부 부처 및 지방 정부 부처 등 뿐만 아니라 공기업, 대기업 등 일반 대중이나 특정 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특정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권리증진을 위해 남아공 인권 위원회 (South African Human Right Commission)가 임명되어 증진에 필요한 조치 및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

- 정보 공개 매뉴얼 (PAIA Manual):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 공개법이 적용되는 각 기관들은 법 시행후 6개월 안에 정보 공개 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조항을 따서 제51조 매뉴얼 (Section 51 manual), 제14조 매뉴얼 (Section 14 manual) 또는 정보 공개 매뉴얼 (PAIA Manual)이라고 부른다. 이 매뉴얼안에는 각 기관의 연락처, 정보 담당자, 정보 요청 절차, 즉시공개가능 정보 및 시간을 요하는 정보 등 보유정보 분류 리스트, 요청시 납입하는 비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를 ‘남아공 인권 위원회’에 보내도록 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정보를 알기 위해 대중은 남아공 인권위원회에 연락하거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뉴얼에 따라 정보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의무 사항은 2002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 일반 사기업에 확대 적용: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 그리고 대기업에 적용되었던 정보 공개법이 이제 확대적용이 되었다. 고용인이 50명이 넘는 경우 그리고 일정한 연간 매출액의 금액이 법이 정한 금액을 넘는 경우, 정보 공개 매뉴얼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법의 적용이 한두명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확대적용이 된다. 공개 매뉴얼 제출의 기한이 작년 12월 31일이었던 것을 영세업자,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동 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연장하였다.

- 면제 대상: 이러한 일시 면제에 해당하는 사업분야를 몇가지 보면, 고용인이 50명을 넘지 않는 경우, 고용인이 50명을 넘지 않지만 연간 매출액이 다음을 초과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agriculture)에 종사하는 경우, 연간 매출액

이 R 2 million 란드 (한화 3억), 광산이나 채석인 경우는 R 7 million 란드 (한화 10억), 제조업인 경우는 R 10 million 란드 (한화 15억), 도매상인 경우는 R 25 million 란드 (한화 37억) 등이다.예외 규정: 각 기관의 정보 담당자는 다음의 경우 정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45조 (a)항은 불필요하거나 시시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귀찮게 하는 목적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등 정보 요청자의 의도가 정보 공개법을 남용한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거절할 수 있다. 제45조 (b)항은 공개되어야 할 정보가 근본적으로 그리고 아주 불합리하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거절할 수 있다 (the work involved in processing the request would substantially and unreasonably divert the resources of the public body).

- 정보 공개법과 관련된 판례들

정보 공개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판례들은 일반인이 특정 기관이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경우로서, 법원은 동 법 제 45조의 조항을 주로 다루고 있다. CCII Systems (Pty) Ltd v Fakie and others NNO (Open Democracy Advice Centre as Amicus Curiae) 2003 (3) SA 325 (T)의 경우, 정부에 무기 납품하던 업체가 입찰에서 실패한 후, 입찰과정의 정치권의 부정 부패가 개입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입찰 과정을 주도한 감사원 (Auditor General)에 입찰관련 일체 서류 열람을 요청하였다. 법원은 제45조의 해석에서 해당 자료가 타 목적으로 남용되거나 해당 기관을 유해할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감사원은 해당자료를 40일안에 원고에 제공하도록 판결하였다.

공공기관(public body)과 사기업(private body)의 구분에 대한 판결도 있는데, 우리나라 포스코에 해당하는 세계 제 2의 철 생산업체인 ISCOR에 대해 공공 기관으로 판결하고, 이 기관의 1965년 부터 1973년 사이에 행하여진 이사회 결의 내용 등을 원고에게 제공하도록 판결하였다. 동 건은 대학에서 석사과정에 재학중이 원고가 해당 기간에 행하여진 ISCOR 안의 흑인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에 관한 논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청이 거절되자 제소한 경우로 승소하여 해당자료를 얻게 되었다 (Hlatshwayo v ISCOR).

또한 사기업이 보유한 자료에 대해 승소한 경우도 있고, 근거없이 부당하게 정보 제공을 거절한 경우 법원이 피고에게 소송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판결도 있다. 최근의 판례중에서 정치권의 비리 질타를 목적으로 야당 의원에 의해, 정부 부처장의 여행 경비에 대해 상세 목록을 제공하도록 요청한 경우도 있다.

■ Skills Development Amendment Act 26 of 2011

- Date of commencement: to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Labour.
- Amends ss. 1, 2, 3, 5, 9, 9A, 10A, 20, 22, 26H, 32 & 36, Schedule 2A and the long title.
- Inserts ss. 9B, 11A, 11B, 11C, 13A and 13B.
- Substitutes ss. 11, 13 & 23 and the heading to Chapter 6; and repeals ss. 24, 25, 26, 26K, 26L, 26M and 26N and Schedule 4 to the Skills Development Act 97 of 1998.
- “기술 향상 개정법, 2011”

- 개정 배경

“기술 향상법, 1998”은 숙련된 노동자(skilled worker) 부족으로 인해 각 산업분야 발전에 큰 장애가 되어왔고, 더욱이 흑인정부가 설립되면서 불안을 느낀 백인 고급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므로 숙련된 노동자 양성에 대한 필요성에서 동법이 제정이 되었다. 기술 훈련, 습득 프로그램,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술향상을 이루기 위해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각 고용주에게 부담시키고, 기술향상 훈련을 실시하는 고용주에게 세금 환불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므로서 향상된 기술을 지닌 고용인들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고용주는 고용인의 임금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Skills development levy로 지불하는데, 그중의 80%는 Sector Education and Training Authorities (SETAs)으로, 나머지 20%는 Skills Development Fund로 가게 된다.

동 개정안은 기술향상을 위해 각종 훈련 및 교육을 제공, 관리 및 감독하는 SETAs의 업무능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 감독하며, 특히 SETAs의 구성과 자금 사용에 대해 투명한 회계 감사가 시행되도록 하는데 법률 개정 목적이 있다.

- 주요 내용

- ① 개정 법률은 기존 법률의 특정한 단어나 표현이 진부한 부분을 시대에 맞게 수정하였고 무엇보다 SETAs 구성요건, 통폐합 (현재 23개에서 21개로 축소) 및 폐지 등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였다.
- ② 제11조는 각 SETAs 산하의 각 교육기관의 표준 헌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표준 헌법에서 벗어난 다른 헌법을 갖을 수 있는 경우는 첫째, 교육장의 독특한 기능이나 운영상의 이유, 둘째로는 국립 기술 개발 전략 (National Skills Development Strategy)의 의거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 셋째로는 국립 기술청(National Skills Authority)에 의해 추천된 경우 등이다.
- ③ 신설조항으로 제11A조는 SETAs 회계감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데, 그중에 주목할 것이 SETAs에 고용된 경우 회계 감사가 될 수 없음을 규정함으로써 제3자의 객관적 회계 감사실시를 통해 자금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 ④ 제11B조는 회계 감사가 해임되거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서면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회계 감사를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⑤ 제11C조는 회계감사로 임명된 자가 SETAs와 어떤 형태로든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⑥ 제13A조는 회계감사 구성원이나 회계감사단에 고용된 고용인의 율니적, 업무적 행위지침을 규정하고 있고, 제13B조는 SETAs의 CEO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회계감사나 감사단에 고용된 고용인들은 SETA와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나 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미팅에서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South African Post Office SOC LTD Act 22 of 2011

- Date of commencement: 15 May 2012.
- Amends ss. 1, 4, 12V & 89; repeals s. 2; substitutes ss. 3, 99, 102, 105, 112, 115, 121 & 123, the long title, the heading to Chapter IA and the First Schedule; deletes ss. 7A, 90, 114, 119B & 120A and the heading to Chapter I of the Post Office Act 44 of 1958.
- Amends s. 1; deletes s. 29 and inserts ss. 32A & 32B in the Postal Services Act 124 of 1998.
- “남아공 체신 공사법, 2011”
- 2011년 신규 법률 시행.

- 법률 배경:

남아공 체신공사(우체국)는 우체국법(Post Office Act No 44 of 1958)에 의해 설립되어 우편 및 텔레커뮤니케이션을 관장하였으나, 1991년 우체국을 상업화 목적의 국영 기업으로 전환하였다. 우체국의 우편서비스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1998년 우편 서비스법(Postal Services Act No 124 of 1998)이 제정되었으나 우체국 조직 관할은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동 법률은 우체국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체신공사 및 자회사에 대한 기업 통제, 관할, 감독에 필요한 법률 체계를 제공하고자 제정되었다.

- 주요 내용

동 법은 총 32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회사 정관 구성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체신공사’라는 공기업의 운영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 ① 체신공사는 우체국법(Post Office Act)이 폐지되었지만 주식공모회사(Public company)로 그대로 존재한다 (제3조). 또한 정부 소유의 공기업으로 체신관련 업무를 주로 관장하고 그 권리와 의무는 장관에 의해 행사된다 (제3조).
- ② 체신공사는 회사법이 정한 회사가 갖는 모든 권한을 갖지만 자금 집행 등에 관련하여 공기업으로 공공자금운영법(Public Finance Management Act)과 동법의 제한을 받는다 (제5조).
- ③ 체신공사는 장관과 매년 업무 향상 계약서(performance agreement)를 체결해야 하고, 체신공사 또한 산하의 자회사들과 업무 향상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제6조).
- ④ 체신공사 일상업무 비용은 국회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재정 지원 요청 또한 장관을 통해 할 수 있다 (제6조). 금융 차관원은 것은 재정부 장관과 상의한 후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제7조).
- ⑤ 이사회 구성은 11명을 넘지 않는 비집행이사(우편은행 집행이사 포함)와 3명의 집행 이사(executive director)를 임명한다 (제8조). 이사회 의장과 부의장은 장관이 비집행이사(non-executive director) 중에서 임명한다. 이사회의 기능은 체신공사의 기업 계획이 실행되도록 하며, 기업 경영의 책임을 진다 (제9조).
- ⑥ 이사들은 가족이나 비즈니스 파트너 등에 이사회결정사항을 이야기해서는 안되며, 개인이익과 결부시켜서는 안되는 등 여러 신탁의무(fiduciary duties) 진다 (제13조).
- ⑦ 이사회는 임금 및 업무향상위원회, 인사 및 변화 위원회, 회계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이사회는 70%이상이 참석해야 회의가 진행된다 (제14조). 업무를 대리할 경우 이사회의 75%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CEO, CFO 또는 COO의 업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없다 (제15조).

노동

■ Skills Development Amendment Act 26 of 2011

- Date of commencement of ss. 1 (except s. 1 (c)), 3, 5-13, 20, 27, 29, 30 & 31: 11 May 2012.

“기술 향상 개정법, 2011”

- 개정 법률 일부 시행.

- 시행 조항의 주요 내용

- 제1조는 개념조항으로서, 제1(c)조는 노동 용역 서비스(employment service) 관련하여 노동법 개정이 진행중이므로 법조항 시행에서 제외되었다.

- 제3조는 South African Qualifications Authority Act를 폐지하고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Act, 2008로 대체에 따라 용어 변경하였다.

- 개정 법 제5조에서 제13조까지는 기술향상법의 제11조에서 제13조를 개정한 내용이다. 제11조는 SETAs 산하의 각 교육기관의 표준 헌법을 제공하는데, 규칙으로 모범(sample) 헌법을 공시하였다. 그러나 다른 헌법을 갖고자 할 경우 제13조 규정을 따른다.

- 또한 개정법은 신설조항으로 제11A조, 제11B조, 제11C조, 제13A조, 13B조 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SETAs 회계감사 자격 요건, 이해관계, 윤리적 업무적 행동 지침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

■ Further Education and Training Colleges Amendment Act 3 of 2012

- Date of commencement: 25 April 2012, except ss. 11-14, 28 (3) and 32 (b) to be determined.
 - Amends ss. 1, 3, 4, 5, 6, 7, 8, 10, 17, 21, 24, 25, 28, 31, 41B, 41D, 41G, 42, 45, 46, 49 & 50 and Schedule 1 of the Further Education and Training Colleges Act 16 of 20.
 - Substitutes ss. 14, 20, 22, 23, 26, 44 & 47 of the Further Education and Training Colleges Act 16 of 20.
 - Repeals ss. 19, 41E, 41H, 41I, 41J & 41K of the Further Education and Training Colleges Act 16 of 20.
- “고등 교육 및 기술훈련 전문대학 개정법, 2011”
- 신규 법률.

- 주요 개정 내용

- ⑦ 제1조-제10조 그리고 제14조-제33조의 조항들은 그동안 지방 정부에 위임되었던 역할을 다시 중앙 정부에 이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지방정부에서 ‘고등 교육 및 기술훈련 전문대학’ 교육을 지방정부의 MEC(Member of Executive Council)에서 관장하였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이를 중앙정부 장관에 이임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지방 정부 해당 부서장(Head of Department)의 기능을 차관보(Director-General)에 이임하도록 개정하였다. 따라서 중앙 정부에 신설된 ‘고등교육 및 기술전문대학’ 부서가 이를 관장하며, 이와 관련된 보조금 또한 중앙 정부인 교육부 예산에 포함된다.
- ⑧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34조항들은 고등교육기관이나 기술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고용인들의 법적인 지위를 다루고 있는데, 고용인들 중에서 교육부에서 지정한 자리에 임명된 자들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기관의 집행위원회(council)에서 임명된 자는 비공무원으로, 해당자리에 고용된 고용인의 보수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자리보다 더 적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조항 제12조).
- ⑨ 개정법률은 교육기관의 이사회나 교육기관의 소속된 직원들은 공공 교육과 관련된 비즈니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각은 자유롭게
연구는 창의적으로
세계적인 법제연구기관
최신외국법제정보

발행일 2012년 6월 29일 / 발행인 김유환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www.klri.re.kr)

주소 137-890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로 131(양재동 90-4) 비교법제연구실 / TEL (02) 3498-1771 / FAX (02) 579-0127